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創刊日：1957年3月23日 登録番号 제 24-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1980年12月1日 毎月 1回発行 通巻 第141号

1980 12



건축주는 시공비가 적게 들고 입주자는 수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시공비가 鐵製鋼管의 1/4,
50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고 물이 새지 않는 暖房配管材, 럭키온돌파이프 —
특수 가교화결합장치에 의해 만든 럭키온돌파이프는 이미 주택공사아파트, 한양주택 등에 시공되어 뛰어난 열효율과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럭키온돌파이프는 건축주에게는 시공비를 절감시켜 드리고, 입주자에게는 수리비의 부담을 없애 드리는 절약시대의 暖房配管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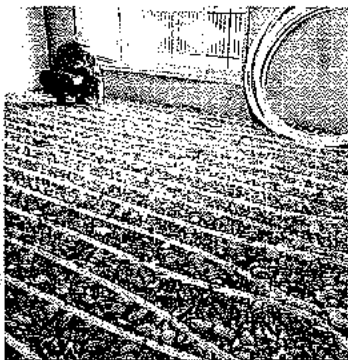


럭키 온돌파이프



**럭키온돌
파이프가
건축주들께
드리는 이익**

- 이음매 없이 그대로 굽혀서 배관할 수 있으므로 시공비와 시공 기간이 鐵製鋼管의 1/4입니다.
- 鐵製鋼管의 가장 큰 결점인 녹이나 스케일이 없어 수명이 50년 이상입니다.



**럭키온돌
파이프가
입주자들께
드리는 이익**

- 녹이나 스케일이 없어 막히거나 부식될 염려가 없으며, 2~3년마다 방바닥을 뜯어 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킨 후에도 오래도록 열기가 남습니다.

본사 및 각연락소

본 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대대표 771-32; (직) 22-7569)
춘천연락소 : 2-3733 마산연락소 : 2-8632-3-0636
경주연락소 : 2-3933-4103 부산시관과 : 22-2308-23-4364
전주연락소 : 2-2602 청주연락소 : 2-3821-3-2309
대전연락소 : 2-1567-4931 대구연락소 : 45-3811-3816
광주연락소 : 33-3177-6702 제주연락소 : 2-3514

럭키 온돌파이프

럭키 온돌파이프

럭키 온돌파이프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41호
구입년월일	1980. 12. 1
대한건축사협회 도시건축지부	

月刊 建築士

U.D.C. 69 / 72 (054 - 2) : 0612(519)

通卷 第141号

目次

1980. 12

아파트建築의 標準規格의 部品化 問題.....尹道根.....	10
韓國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金興坤.....	18
오피스 랜드스케이핑(完).....金炯宇.....	21
聯立住宅의 型式과 配置計劃.....卞鍾煥.....	30
고딕建築의 構造에 關하여.....金濟東.....	39
1980年度 協會賞受賞(第5回).....	43

會員作品..... 55

- 住宅...崔昌奎 (新進建築研究所)
- 호 텔...朴奎定 (中央綜合建築朴研究所)
- 住宅...朴東熙 (東南亞綜合技術公社)

海外作品..... 85

Multi-family House

☐ 協會記事..... 3	☐ 建築行政相談..... 62
☐ 會員動靜..... 9	☐ 月間建築情報..... 65

優秀建築資材 시리즈.....	70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	75
都市公園法施行規則.....	81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金奉勲
"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李璟會
"	李文輔
"	洪性穆
"	洪淳寅

- ☐ 発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 / 郵便番号 110
- 光化門郵通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3-9491~2, 73-4287, 74-1045
- ☐ 發行人兼編輯人 金斗燮 ☐ 登録番号 第4-1251 ☐ 登録 1967. 3. 23
- ☐ 發行 1980. 12. 1 ☐ 非売品 ☐ 印刷人 郭得龍 / 三文印刷所 / 265-4558

就 任 辭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

지난 10月 30日 本 協會 第15回 定期總會에서 不肖 이 사람이 會長의 重責을 맞게 되었습니다.

對內外的으로 가장 어려운 時期입니다만, 이 사람에게는 다시없는 機會라 생각하며 微力하나마 建築士의 權益伸張과 建築界의 發展을 爲하여 熱과 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

우리는 民主福祉國家建設을 指標로 한 第5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建築文化의 創造者로서 矜持와 使命感을 갖고 말은바 業務에 임하여야 하겠으며, 法과 秩序를 준수하며, 公益을 保護하고 말은바 職分을 充實히 하여 嶄新한 建築士像 具現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 !

協會가 發足한지도 15年이란 歲月이 흘렀습니다. 發足當時 422名의 會員이 오늘날에 와서는 무려 1894名이라는 幾何級數的인 膨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限定된 業務量과 世界的인 油類波動으로 因한 建築景氣의 沈滯는 우리들의 生業에 일대 威脅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建築設計가 致富할 수 있는 手段이나 方法은 아니라 할지라도 建設産業의 主体이고 많은 外貨를 벌어드리는 建築技術者의 母體인 設計 事務所의 運營은 마땅히 國家의 次元에서 保護育成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協會運營面에 있어서도 歲入不振으로 超緊縮運營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大幅的인 機構縮少 等 일대 改革이 切實히 要請되는 實情입니다.

그동안 많은 會員들로부터 不信의 代名詞처럼 되어버린 協會의 生態는 此際에 果敢히 手術하여 그야말로 協會는 協會 本來의 目的과 같이 會員을 爲하는 會員의 協會가 되어야 하며 任職員의 協會로 타락 되어서는 결코 안될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與件과 時代的 背景은 결코 過去의 非理와 不條理로 하여금 많은 會員의 빈축을 사는 때와는 달리 正常的인 協會運營이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不協和音의 源泉的인 問題는 特別銓衡 等 格別한 政府當局의 積極的인 協助로서 漸進的 解決을 보는 過程에 있습니다.

이제는 總和團結하여 우리의 오랜 宿願인 建築士의 참된 權益爭取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會員은 비록 자기 生理와 비위에 多少 거슬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協會를 白眼視하고 排他하는 風潮는 止揚되어야 하겠읍니다.

가장 어려운 時期에 즈음하여 累積된 여러가지 懸案問題와 關係法令의 改正補完 等 會員의 業務와 直結된 時急한 難題들이 山積되어 있는 狀況에서 苦心焦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會員의 權益과 直結되는 懸案의 問題들은 如何한 難關이 있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의 衆知를 모아서 最善의 方法으로 어려움을 克服하며 着實히 하나 하나 解決해 나갈 決心입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들의 倍前에 協助와 指導鞭撻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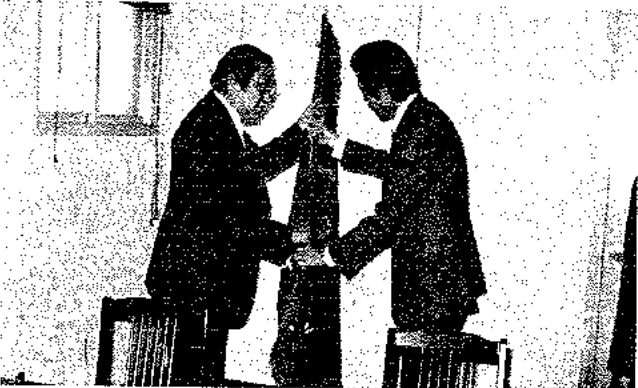
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就任人事에 代하는 바입니다.

1980. 11. 18

會長 具 珣 會



◎協會業務를 引授하는 具琬會 會長



◎協會旗를 引授하는 具琬會 會長

新任 任員 첫 理事会 開催

新任 具琬會 會長 繼任后 첫 理事會가 11月 18日 14時에 協會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理事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번 第 22回 理事會는 主要業務報告에 이어 各 市道支部의 總會開催 方針 決定의 件을 비롯하여 6個項 案件을 處理하고 自体淨化 推進委員會 委員長에 當然職으로 具琬會 會長, 倫理委員長에 安箕泰, 建築研究委員長에 閔榮基 理事를 各各 選任하였으며, 京畿道 支部所屬 利川分所 設置도 承認하였다.

本協會 81年度 事業計劃

*第15回 定期總會에서 決議된 1981年度 事業計劃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방향

- (1) 1981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침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므로 1981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력만으로 가능한 조사연구사업의 확대에 둔다.
- (2)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 추진사업을 1981년도의 중점추진사업으로 한다.

- (3) 현상 설계 제도의 진서확립과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 (4) 협회의 고정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강습회, 세미나, 학술토론회, 국제교류등의 지도사업과 출판사업, 홍보선전사업, 전시사업 및 각종 행사등은 질적면에 치중하여 충실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재개발 지구내에 있는 본회 회관의 이전을 위한 계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5)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업계에 정의로운 새 기풍을 확대 심화하고 효율적인 회원제도 활동을 전개하여 서정채신, 새마을 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비절약, 자연보호 운동등 범국민운동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전파시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사업계획

1. 회원복리 증진사업

- 1) 회원복지연금 지급제도의 지속적운영
 - 회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 회원복지연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기금증식의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시한다.
- 2) 공사감리기구의 설치운영
 - 지역별 공사감리 기구를 설치하여 감리업무 수행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감리비의 수입증대에 기여한다.

2. 조사연구사업

- 1) 건축관계 제도 연구 및 개선
 -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 건축사 해외용역 진출자해 요인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 3) 건축 현상 설계제도의 사회적 확충 방안연구
 - 건축 현상 설계제도의 사회적 확충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 각종 현상설계의 공모 및 심사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행한다.
- 4) 건축인력양성방안 연구
 - 회원사무소 보조원 수급의 원활과 국가의 기능 인력양성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기술 인력양성 방안을 연구한다.
- 5) 세계연구
 - 소독표준을 현실화 추진 완결
- 6) 회관 이전방안 연구
 - 재 개발지구내에 있는 본회 회관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3. 지도사업

- 1) 강습회 개최
 -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 및 구조계획 등의 새로운 지식을 강습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보급하며, 보조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한다.
- 2) 세미나 및 학술토론회
 - 국내외 선진기술의 보급확충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 3) 특별연수교육 실시
 - 81년도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에 대비하여 2급 건축사

회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4) 국제교류사업

- 1) 외국 건축관계 단체와 상호자료 교환 추진
- 2) 해외 선진기술 도입 확충과 국내 건축기술의 해외소개를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을 파견한다.

5)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회원의 업무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6) 서정채신 및 자율정화운동 적극 전개

-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서정채신 및 자율정화운동을 적극전개하여 업계에 정의로운 새 기풍을 확대심화하여 새시대의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한다.

4. 출판사업

1) 회지발간

- 본 협회 회지 "건축사"를 매월 3,200부 발행하여 회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 무료배부하여 업무에 활용케 한다.

2) 회원명부발간

- 회원명부 2,500부를 발행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료배부.

3) 건축관계법령집 추록발간

- 80년도에 발간된 건축관계법령집에 삽입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 변경되는 건축관계 개정법령을 분기별로 수한 인쇄하여 회원에게 무료 배부한다.

5. 홍보선전 및 전시사업

1) 민원상담운영

- 회원 및 건축주의 건축관계 민원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적극운영한다.

2) 매스컴을 통한 홍보 활동전개

- 신문 및 TV, 라디오를 통하여 건축 및 건축사의 임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의 건축수준향상과 건축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3) 작품전시회 개최

- 회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창작의욕의 증진과 설계기술의 개선향상에 기여한다.

4) 자재전시회 개최

- 우수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 건축자재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기여한다.

6. 행사 및 기타사업

1) 협회상 시상

- 건축의 창작의욕 진작과 본 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상하고 있는 협회상의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개량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 총화 단합대회 개최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역별로 회원총화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3) 건축사 크럼운영

- 회원들의 휴식처로 회관 1층에 건축사 크럼을 운영함으로써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한다.

4) 새마을 사업운동 전개

- 회원의 새마을 사업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계도한다.

5) 소비절약 및 불우이웃돕기운동 전개

-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소비절약 및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本協會 81年度 予算

*第15回 定期總會에서決議된 1981年度
予算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설명

1981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특별회계를 폐쇄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회계의 일원화 및 업무간소화를 기하는 회계의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파속적인 건축경기의 불황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팽창을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0년도 예산규모 637,000,000원에서 6% 가량인 39,000,000원만을 증액시킨 676,000,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 입

1. 총규모 676,000,000원으로서 39,0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 회비수입면에서는 월정회비 159,600,000원 입회비 42,000,000원 실적회비 461,000,000원 계 662,600,000원으로서 85,532,608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으로서 실적회비 징수율을 0.4%에서 0.5%로 조정하였습니다.
3. 사업수입에서는 2,400,000원으로서 9,800,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 잡수입에서도 500,000원으로 편성 2,513,795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 이월금 역시 10,500,000원으로 편성 34,218,813원을 감액편성함으로써,
6. 총 세입 증액금이 39,000,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 출

1. 세출역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676,000,000원으로서 39,0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 회회비는 34,357,720원으로서 8,053,400원을 증액시켰으며,
3. 인건비는 277,000,630원으로서 38,357,93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현행 직원 급여액의 15%를 인상하는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4. 사무비는 65,710,880원으로서 13,147,420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5. 관리비는 61,410,817원으로서 13,511,887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비예산 분소에 대한 분소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6. 사업비는 121,938,900원으로서 437,56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7. 설비사업비는 51,360,000원으로서 253,600원을 감액편성하고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특별회계에 있던 회원장예 보조금을 목적으로서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8. 판공비는 29,232,000원으로서 4,752,000원을 증액편성

9. 적립금은 17,581,140원으로서 18,418,86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이할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회관건립기금으로 기금조성해 오던것을 81년도 부터는 기금조성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기회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에 대하여는 1980년도 결산을 하여 직원퇴직적립금으로 목적변경을 결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10. 고정자산은 8,178,000원으로서 3,000,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1. 예비비는 9,229,913원으로서 21,156,447원이 감액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12.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한 결과 총 세출증액이 39,000,000원인 6%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 입 예 산 총 괄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항	목			증	감
회비수입	회 정 회 비	577,067,392	662,600,000	85,532,608	
	월 정 회 비	144,300,000	159,600,000	15,300,000	
	입 회 비	56,000,000	42,000,000		14,000,000
	살 격 회 비	370,800,000	461,000,000	90,200,000	
	자산조성금	2,220,000	0		2,220,000
사업수입	관 조 회 비	3,747,392	0		3,747,392
	광고료수입	12,200,000	2,400,000		9,800,000
잡 수 입	이 자 수 입	3,013,795	500,000		2,513,795
	기 타 수 입	2,513,795	400,000		2,113,795
이 월 금	기 타 수 입	500,000	100,000		400,000
	이 월 금	44,718,813	10,500,000		34,218,813
	미 수 회 비	3,537,720	2,000,000		1,537,720
합 계	이 월 금	41,181,093	8,500,000		32,681,093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3) 세 출 예 산 총 괄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항	목			증	감
회 의 비	총 회 비	26,304,320	34,357,720	8,053,400	
	이 사 회 의 비	12,740,240	18,660,280	5,920,040	
	지 부 장 회 의 비	3,914,800	4,495,680	580,880	
	위 원 회 의 비	3,985,200	4,577,760	592,600	
	간 사 회 의 비	1,344,000	1,344,000		
	간 사 회 의 비	4,320,000	5,280,000	960,000	
	인 건 비	238,624,700	277,000,630	38,375,930	
	급 료	131,106,540	159,828,860	28,722,320	
	수 당	87,062,240	109,180,280	22,118,040	
	복 리 후 생 비	6,554,500	7,991,490	1,436,990	
사 무 비	퇴 직 적 립 금	13,110,650	0		13,110,650
	보 상 금	1,500,000	0		1,500,000
	여 비	52,563,460	65,710,880	13,147,420	
	통 신 비	12,930,000	17,960,080	5,030,080	
	소 모 물 비	22,443,600	27,466,200	5,022,600	
	도 서 발 인 쇄 비	5,312,400	6,042,000	729,600	
	관 리 비	11,877,460	14,242,600	2,365,140	
	수도광열비	47,898,930	61,410,817	13,511,887	
	수선및수료	11,389,200	14,276,880	2,887,680	
	차 량 비	3,772,800	7,472,800	3,700,000	
관 리 비	차 량 비	6,296,320	6,061,071		235,249
	분 소 보 조 금	11,376,000	18,216,000	6,840,000	
	보 험 료	215,000	574,606	359,606	
	지 부 보 조 금	10,000,000	10,000,000		
	공 과 잡 비	4,849,510	4,809,450		40,060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항	목			증	감
사 업 비	지도사업비	122,377,460	121,938,900		437,560
	조사연구비	20,700,000	18,700,000		2,000,000
	출판사업비	22,331,460	20,152,000		2,179,460
	교육훈련비	53,196,000	55,748,000	2,552,000	
	홍보선전비	11,000,000	9,057,900		1,942,100
	행 사 비	1,590,000	2,385,000	795,000	
	심 의 사 업 비	13,560,000	15,896,000	2,336,000	
	심 의 비	51,613,600	51,360,000		253,600
	경 조 비	12,480,000	14,976,000	2,496,000	
	회원장려보조금	10,133,600	12,384,000	2,250,400	
관 공 비	세 마 을 사 업 비	15,000,000	10,000,000		5,000,000
	관 공 비	14,000,000	14,000,000		
적 립 금	관 공 비	24,480,000	29,232,000	4,752,000	
	관 공 비	24,480,000	29,232,000	4,752,000	
고 정 자 산	적 립 금	36,000,000	17,581,140		18,418,860
	보 상 금	0	15,982,860	15,982,860	
예 비 비	회 관 건 립 기 금	0	1,598,280	1,598,280	
	회 관 건 립 기 금	36,000,000	0		36,000,000
예 비 비	비 품 비	5,178,000	8,178,000	3,000,000	
	예 비 비	30,386,360	9,229,913		21,156,447
합 계	예 비 비	30,386,360	9,229,913		21,156,447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과 목		FY80예산액	FY81예산액	비 교	
항	목			증	감
총 규모	본 부	327,486,250	299,790,430		27,695,820
	서울지부	81,049,555	93,397,550	12,347,995	
	부산지부	32,760,775	39,560,240	6,799,465	
	경기지부	30,644,065	39,019,070	8,375,005	
	강원지부	16,880,475	21,114,880	4,234,405	
	충북지부	15,705,250	19,386,850	3,681,600	
	충남지부	22,392,365	27,255,620	4,863,255	
	전북지부	15,637,080	19,992,510	4,355,430	
	전남지부	23,008,250	28,015,410	5,007,160	
	경북지부	33,973,480	43,128,680	9,155,180	
	경남지부	23,229,445	27,843,130	4,613,685	
	제주지부	14,233,010	17,495,650	3,262,740	
	지부합계	309,513,750	376,209,570	66,695,820	
	총 합 계	637,000,000	676,000,000	39,000,000	

本協會 定 款

* 第15回 定期總會에서 改正 되어 1980. 11. 21일 부터 施行될 協會定款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에 따른 상근 부회장제도의 신설과 협회운영상 일 부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의 요지

- (1) 개정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라 상근부회장 제도를 신설함.
- (2) 현행 정관 제21조 제④항의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단 위로 정족수의 용이상이 건축사라야 한다"는 규정을 삭

- (3) 가급적 많은 회원이 협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회원 30인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을 회원 20인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도록 하였으며, 본 협회 최고의 결기관인 구성원인 대의원의 취임승인제도를 폐지함.
- (4) 분소 설치 및 포상근거규정을 명문화 함과 동시에 건축에 관한 지도사업과 각종 현상 설계심사대행사업을 사업종목에 추가 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본 협회의 공익성을 설립목적에 명백히 함.

制定 1965. 12. 3
 改正 1966. 11. 8 1967. 3. 24
 1968. 7. 15 1970. 3. 6
 1971. 11. 26 1983. 10. 27
 1974. 7. 9 1974. 12. 30
 1976. 4. 14 1977. 3. 9
 1977. 10. 29 1978. 12. 21
 1979. 5. 2 1980. 11. 21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라 칭한다.
- 제2조 (구성) ① 본 협회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한다.
- ②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둔다.
- ③ 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의 도청소재지에 둔다.
-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 및 건축사업부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시공기술에 관한 지도·감독.
 3. 회원의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건축에 관한 교육작품 발표 및 자재전시.
 5. 건축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참여와 국제교류.
 6.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8. 건축에 관한 각종 현상설계 공모 및 심사대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3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본 협회는 건축 및 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③ 본 협회는 건축사업부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 제6조 (제규정) 본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7조 (회원)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② 본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이외에 다음 각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추대회원 : 본 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또는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추대받은자.
2. 명예회원 : 저명한 건축가 및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자.
3. 찬조회원 : 본 협회의 사업목적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원, 지부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의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사업의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추대회원은 월정회비를 면제하고 명예회원은 각종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 (포상) 건축계 및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보전을 저해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견책.
 2. 자격정지.
- ②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견책.
 2. 1년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자격정지.

제11조 (자격상실) ① 회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폐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기간동안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 협회의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사망.
2. 폐업.
3.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제12조 (제명)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협회의 명예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 협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상근) : 1명
3. 이사 : 5명
4. 감사 : 2명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대

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선출) ① 회장·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중 이사 3명 감사 1명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90일 이내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은 후임자가 전설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취임승인) 임원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취임은 전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고문)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 거명한 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회의) 본 협회에는 다음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제20회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며 역대 회장과 각 지부장은 선출원인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이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 (총회소집공고)

①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총회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임원(부회장을 제외한다)개선
3. 회원의 제명
4.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보수규정, 예비규정, 설

제도의 신고사무 취급 규정,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분소설치 및 운영규정, 전결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7. 기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제 6 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개정 및 임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 일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감사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본협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편찬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2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한 이사회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 기구 및 보수

제27조 (사무처) ① 본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수있다.

1. 총무부
2. 기술부
3. 출판사업부
4. 기획조사실

③ 사무처 직원의 수 및 그 임명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급여) ① 부회장 및 사무처직원은 유급으로하며 보수액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 관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① 본 협회의 재정은 입회비, 정회원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정회원이 되었을때 납부하는 입회금
2. 정회원비 : 정회원이 납부하는 월정회비 및 설계사업설계때마다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는 실적회비
3. 찬조회비 : 찬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찬조금
4. 사업수입 : 회지 및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료 간행물 배부 및 기타 사업의 부대수입

6. 수수료 : 감정 및 제품명 수수료

7. 기타수입 : 기타 잡수입

② 입회비 및 정회원회비의 징수를 또는 징수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며 예산승인시 병행하여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회계) ① 본 협회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동년 12월31일에 마감한다. 다만, 해당 년도 중에 확장된 수익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협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1조 (결산서 제출) 회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3월말일 까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 부

제32조 (지부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명

2. 간사 (간사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100명 이내 지부 2명

나. 회원 101명 - 300명 지부 3명

다. 회원 301명 이상 : 5명

3. 분소장 : 분소당 1명

제33조 (지부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무를 통리하고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부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③ 간사회는 지부장과 간사로서 조직하며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4조 (지부임원 및 대의원선출) ① 지부임원 및 대의원은 정회중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임원의 취임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의원의 명단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분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과 그 임기는 제16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분소설치) 지부에서 분소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지부회의) 지부에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간사회

3. 위원회

제38조 (지부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지부소속 정회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1.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소속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9조 (지부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대의원 개선

2.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0조 (지부총회의 소집과 정원)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정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 ① 지부에는 도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사무국) ① 지부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

2. 기술지도

③ 사무국 직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보수) ① 사무국직원은 유급으로하며 보수액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44조 (승인) 지부가 총회를 가졌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석회원 및 임원명단.

2. 의결된 내용

3. 총회 안전등 유인물 및 기타 참고서류

제45조 (추가사업) 지부가 승인된 당해년도 운영 계획에 의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가사업 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제46조 (보고) ① 지부는 매월 10일까지 회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회에 보고한다.

1. 전월의 일반 회무 보고서

2. 전월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3. 그달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계획서

② 월에 보고외에 특수사항 또는 돌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제47조 (지부의 재정) ① 지부의 재정은 협회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지부에 배정하는 예산은 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48조 (지부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 년도중에 확장된 수익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년도 1월20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결산서 제출) 지부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하며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43

본 정관은 1980. 11. 21 일 부터 시행한다.

會員動靜

■ 서울支部 新入會員

本 籍 : 서울
 姓 名 : 이 종우
 名 稱 : 우정건축기술연구소
 所 在 地 : 강남구 역삼동 366-27
 電 話 : 57-0568
 免許番号 : 1589
 登録番号 : 단독 193
 月 日 : 10. 10



本 籍 : 충남
 姓 名 : 이 종구
 名 稱 : 제일종합건축
 所 在 地 : 강남구 청담동325-10
 電 話 : 57-0311
 免許番号 : 613
 登録番号 : 종합 1
 月 日 : 10. 13



本 籍 : 전북
 姓 名 : 허 강
 名 稱 : 제일종합건축
 所 在 地 : 강남구 청담동325-18
 電 話 : 57-0311
 免許番号 : 557
 登録番号 : 종합 1
 月 日 : 10. 13



本 籍 : 전북
 姓 名 : 김 선양
 名 稱 : 한국종합기술개발
 所 在 地 : 용산구 한남동657-147
 電 話 : 794-0554
 免許番号 : 1605
 登録番号 : 합동 104
 月 日 : 10. 15



本 籍 : 서울
 姓 名 : 양 영일
 名 稱 : 한샘건축연구소
 所 在 地 : 용산구 이태원동260-199
 電 話 : 792-3383
 免許番号 : 1612
 登録番号 : 합동 255
 月 日 : 10. 16



■ 忠北支部 會員 事務所 移転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정진경	중앙건축연구소	대전시 중구 신화동97	2-3333	267	합동 19	10.11
장성덕	중앙건축연구소	대전시중구신화동232-2	2-3333	2-895	합동 19	10.11

■ 서울支部 會員 事務所 移転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일자
진수학	금학건축설계	중구 무교동 8	794-1442	1665	단독 189	9. 4
김용인	(주)삼도건축	용산구 한강로 가363-120		919	합동 257	9. 4
강효석	(주)삼도건축	용산구 한강로 3가63-120	792-0126	1675	합동 257	9. 4
박환인	아주건축공단 박환인연구소	강남구방배동50		2-1576	단독 187	9. 4
김부영	한국환경설계연구소	영등포구 여의도동1-696		1264	단독 1290	9.12
김철영	효성건축연구소	마포구 성산동 51-17	35-8722	643	단독 191	9.12
김민술	국재건축기술공사	관악구 봉천동 399-1		337	단독	9.19
이승복	아남건축	중구 을지로 6가31	265-6657	1688	단독 196	9.19
김기웅	건축설계연구소삼정	종로구 행촌동 27-5	72-7833	37	단독 195	9.22
유영근	대일건축연구소	중구 충무로 4125-1	265-7898	1118	단독 198	9.25
심기섭	청송·상진건축연구소	강동구 천호동 403-21	478-5242	2-402	합동 259	9.25

■ 京畿支部 転入會員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정창규	유정건축설계연구소	인천시 북구 부평동109		236	단독 65	8.29
윤진	대성건축연구소	의정부시 외정동191-7	2184	386	67	10.15

■ 慶北支部 會員 事務所 移転 및 登録事項 変更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월일
김희영	남양건축사무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1-3	44-1544	1685	합동 71	10.15
임봉수	남양건축사무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1-3	44-1544	2-1813	합동 71	10.15
홍성규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중구공평동 13-4	45-4450	1484	합동 40	10.20
김원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13-4	45-4450	2-1072	합동 40	10.20
배기호	환경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13-4	45-4450	1048	합동 40	10.20
이봉복	대안건축사합동사무소	안동시 서부동99-9	2-9988	2-21	합동 79	10.16
이홍로	신홍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1-10	44-6864	980	단독 47	10.27
여옥동	대구종합건축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3-10	45-3616	1266	종합 1	10.27
윤옥	도시종합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 13	46-3216	776	종합 2	10.30

아파트 建築의 標準規格과 部品化 問題

尹 道 根

(弘 益 大 學 校 工 科 大 學 教 授)

1. 序 論

오늘에 이르러 아파트 建設의 급격한 增加는 市民의 住宅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建設되었거나 建設되고 있는 아파트마다 施設이나 規格이 각양각색이어서 質의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어떠한 標準規格이나 部品化도 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놓여있다. 이러한 問題는 施工過程에 있어서 資材의 낭비는 물론 建築材의 低質 使用도 초래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工事費의 適正算出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窓戶 및 各種 欄干, 칸막이등, 其他 標準規格과 品質에 對한 적절한 標準化는 工期의 단축, 工事費의 절약을 위해서 시급히 要求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각 建設業체에서 지금까지 建設된 아파트의 構造斷面중에서 공통적으로 適用할 수 있는 部分을 추출하여 각 設計圖의 長短點을 比較 검토하고 構造斷面에 關한 적절한 要求水準, 規格 및 品質에 대한 資料수집과 調査分析를 通해서 標準規格과 部品化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와같은 아파트의 部分斷面 및 部品을 標準規格화함으로써 設計上의 편의를 도모하고 建築資材의 標準規格 및 部品化를 촉진하여 아파트建築의 工事費에 대한 적정화와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2. 現況 및 實態調査分析

1) 窓戶

窓틀 및 창문부재에 있어서 外部窓은 알루미늄, 内部窓은 나왕木材가 100%에 해당되어 窓材의 選択은 비교적 單純한 반면, 部材의 規格이나 窓의 크기는 매우 多樣하게 採択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居室과 寢室의 알루미늄窓은 대부분 70~80mm의 部材이며 75mm와 90, 100mm를 채택한 아파트도 극소수에 이르고 있다. 内部窓의 部材로서 나왕木材 치수는 居室窓과 같이 큰 開口部인 경우는 45×150mm를, 작은 경우는 40×120mm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窓門 部材의 크기는 居室窓인 경우 윗막이 선대 31×90mm, 밑막이 33×150mm를, 寢室의 경우는 윗막이 선대 33×75mm, 밑막이 33×90mm정도를 가장 많이 採択하고 있다.

玄關門의 문틀 鐵板두께는 1.6mm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문짝板은 1.2mm가 가장 많았으나 너무 얇은 0.7, 0.8mm의 鐵板을 使用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다.

안방門은 兩面 合板으로 된 여닫이 문으로써 두께 4.5mm, 또는 6.0mm(設計圖面上으로) 두 종류의 合板 또는 무늬合板을 使用했으며, 合板위에 무늬木을 붙이기도 하였다. 발침의 여닫이 문에 使用된 合板은 出入門의 것보다도 얇은 合板이 使用되었다.

2) 欄干

발코니 난간은 아파트 外觀의 性格을 결정지우는 매우 重要한 디자인의 要素로서 多樣하고 個性의인 디자인이 要求된다. 그러나 鐵파이프로 構成된 것이 全體의 77.8%로서 대부분 수직의 파이프가 주도 되고있다. 그리고 콘크리트面위에 파이프를 얹고 있는것은 11.1%로서 파이프는 角 또는 円形이다. 欄干의 높이는 규격치 1.1m보다 적은 것이 59.3%에 달하고 0.9m이하의 것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난간동자 간격은 不明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表記된 것도 120~150mm간격으로 안전치수인 100mm이하인 것은 全無이다. 손스침 規格은 두점대로서 빈약하다고 느끼는 1½"~30×45mm의 파이프가 전체중 40.8%, 2"~30×60mm의 파이프가 25.9%, 適正하다고 보이는 것은 25.9%이나 파이프살의 두께는 정확한 表示가 없다. 난간동자의 파이프 規格은 다소 빈약한 ¾"×½"~1" 사이의 규격이 33.4%, 適正規格인 1½"~22×22mm인 것이 29.6%를 차지하고 있다.

옥상 欄干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면(一部는 기와) 또는 鐵파이프, 난간으로 構成되고 있다. 콘크리트 파라펫은 上部를 굴절시켜 안으로 적은 形狀이 全體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직 콘크리트 파라펫이 26.9%이다. 파이프 난간은 15.4%에 지나지 않으나 대부분 수직 파이프 形狀으로 되어 있다.

階段 欄干은 두가지 類型인 鐵파이프 난간동자에 木材

손스침이나, 파이프 손스침이 主流를 이룬다. 난간높이는 850~900mm로서 유지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設計圖가 숫자로 表記되어 있지 않고 形態作圖에 그치고 있다. 난간동자는 모두 1段에 하나씩 設置하여 그 간격이 200~300mm에 이르고 있어 100~150mm의 안전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階段 손스침은 木材로서, 그 형상과 디자인의 개발이 없었다. 規格은 円形파이프의 경우 $\phi 32\text{mm}$, 角파이프는 1"~1½"에 이르고 있다. 각 복도에 있어서는 모두 높이 1.05 m 이상으로 안전치수를 정하고 있으나 形狀은 콘크리트欄干壁에 물탈마감으로써 多樣하지 못하였다.

3. 窓戶 및 알루미늄 窓

1). 木材 窓戶

① 木材窓 및 窓틀재의 部材寸數는 (표 1) 과 같이 K S F 3108 (窓門의 목재틀재) 및 山林庁告示 第4号 (목재문 창틀 소재 규격)에 따른다.

(표 1) 窓틀 목재틀재 (單位: mm)

창호종류	너비 (W)		두께 (T)		비고 (단)
	K S F	산림청 고시	K S F	산림청 고시	
단창 (너비 1, 500 미만)	123 (120)	120	48 (45)	30 36 45	120×45
단창 (너비 1, 500 이상)	153 (150)	150	48 (45)	30 36 45	150×45
	183 (180)	180	48 (45)	30 36 45	180×45
	213 (210)	210	48 (45)	36 36 45	210×45
2 중 창	243 (240)	240	48 (45)	30 36 45	240×45
	273 (270)		48 (45)	30 36 45	270×45

* () 내의 치수는 공칭치수임.

K S F 3108에 의하면 대패질 두께를 뺀 치수인 공칭치수를 마감치수로 하고 있으나 山林庁 소재규격에는 区分이 없다. 그리고 K S와 산림청 고시상의 치수에 대한 限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統一된 規格의 調整이 필요하다.

材面의 品質基準 및 材質은 K S F 3108과 산림청 고시를 따른다.

窓의 部材寸數는 K S F 5601 (목재 미서기窓 및 창틀)에 의하여 (표 2)에 따른다.

建設部 제정 建築標準詳細圖集(1)에 나타나 있는 木材

窓戶 사용部材 치수는 창문의 높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다음의 5가지로 区分할 수 있으며 이를 適用한 基準(案)은 (그림 1)과 같다.

(표 2) 窓의 部材치수 (K S F 5601) (單位: mm)

두께	너비		허용치
	선	대막이	
30	42	42	± 1
33	57	57	
36	72	72	

(표 3) 窓의 適用 部材치수 (單位: mm)

窓 높이 (H)	윗막이	선대	밑막이
300이하	33×51 (30×49)	33×51 (30×48)	33×60 (30×57)
600~900이하	33×60 (30×57)	33×51 (30×48)	33×60 (30×57)
1,100~1,500이하	33×60 (30×57)	33×60 (30×57)	33×75 (30×72)
1,600이하	36×75 (33×72)	36×60 (33×57)	36×75 (33×72)
1,800~2,300이하	36×105 (33×102)	36×90 (33×87)	36×120 (33×117)

* () 내의 치수는 마감치수임.

窓 部材의 品質基準은 K S F 3108 (창문의 목재틀재)에 따른다. 창틀 및 窓部材의 製作方法은 K 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및 建設部 제정 建築標準示方書에 의거한다.

② 木材門 및 門틀 部材의 規格은 가능한 窓戶分類規格에 示致되는 것을 使用하며 문크기는 틀외곽규격, 부재 규격은 마감 규격으로 表示한다.

문틀의 치수는 K S F 3109 (木材門 및 문틀) 및 山林庁告示 제4호 (1979. 2. 1. 시행)의 목재문 및 창틀 소재 규격에 의해서 정하고 製作치수는 K S F 1509 (建築部品の 치수 정하기)에 따른다.

(표 4)와 (표 5)에서 表示된 바와같이 소재규격의 許容치수상에 K S F와 山林庁의 規格이 다르기 때문에 適用上の 問題點을 窓틀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으나 最近告示된 山林庁의 치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문틀의 소재 樹種 및 材質은 窓틀과 같다.

③ 플러쉬문의 部材치수는 K S F 3109에 의거하였으며 가장 많이 使用되는 플러쉬문의 부재치수는 (표 6)과 같다. (그림 2) 참조

문의 제작방법은 K S F 3109에 의거하거나 建設部 제정 建築工事標準示方書의 窓門, 문에 使用되는 窓戶工事바퀴와 래일은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지며 표준시방서 K

SF5601에 따른다. 미서기 미닫이 및 窓門, 문에 사용되는 窓戶門바퀴와 레일은 창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표준시방서 및 KSF5601에 따른다. 문바퀴는 窓의 원활한 開

閉를 위해서 배아링이 들어있는 屋外문바퀴를 권장하며 밀폐의 청소 및 물베기를 돕기 위해서 레일의 한쪽부분은 窓틀에서 15mm程度는 離隔시켜 施工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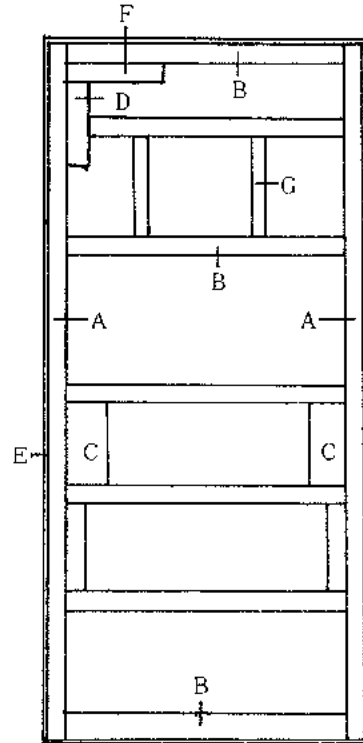
(표 4) 목재 문틀재 (單位: mm)

너 비 (W)		높 이 (H)		두께 (T)		문짝 수
K S F	산림청	K S F	산림청	K S F	산림청	
590	600	2,090	2,100	30이상	30	1
690	700					
790						
890	900					
990	1,000					
1,190	1,200	2,090	2,100	36이상	36	2
	1,400					
1,490	1,500					
	1,600					
1,790	1,800					
	2,100	2,090	2,100	40	45	4
1,990	2,000					
2,090	2,100					
	2,200					
2,390	2,400					
2,690	2,700					
2,990	3,000					
3,290	3,200					
3,590	3,600					

(표 5) 문틀재의 부재치수 (單位: mm)

두께	90	110	120	140	150	180	200	210	240
30	○								
36		○	○	○	○				
45						○	○	○	○
허용치수	+2-1 (±1)	+2-1 (±2)	+3, -1 (±2)			+4,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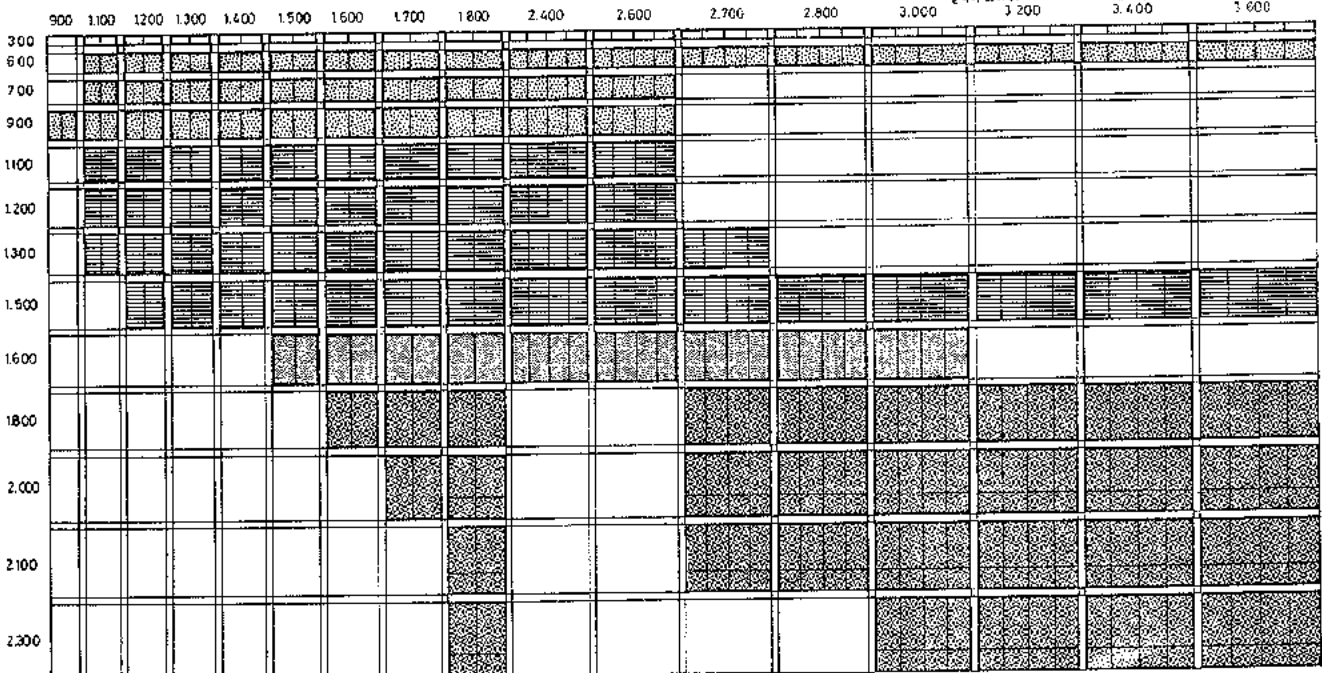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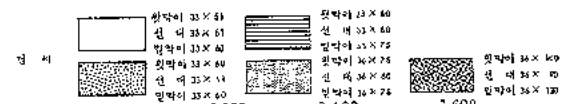
* () 내의 數字는 KSF3109에 의한 허용치수임



(그림 2) 목재재 코어 플러쉬문

(표 6) 플러쉬문 部材치수 (單位: mm)

문 (무게)	합판 (부재)	차우선재 (A)	외면막 (B)	손잡이 (내비×외비) (C)	정척만 (내비×외비) (D)	태들림 (E)	도어패 (F)	창감하 (G)
(36)	3~5	30	35	70이상×280	25이상×200	7이상	60이상×	25이상
40		이상	이상					
45	(4.5)	(42)	(12)	이	상	이	상	(12)



(그림 1) 木材·窓戶·使用部材基準(案) (單位: mm)

2) 鉄材 窓戸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철재 창호는 주로 世帶玄關門 및 階段室의 防火門이며, 規格상으로는 어느정도 變化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적다. 몇개의 固定된 規格으로 統一시켜 機械的 大量生産을 함으로서 現場인력소요가 減小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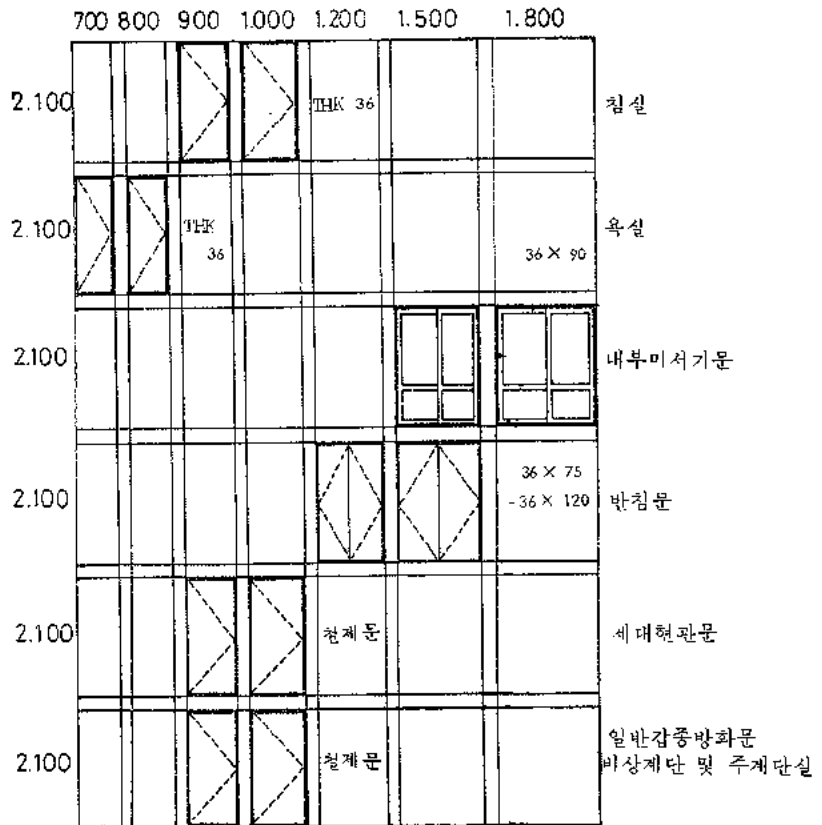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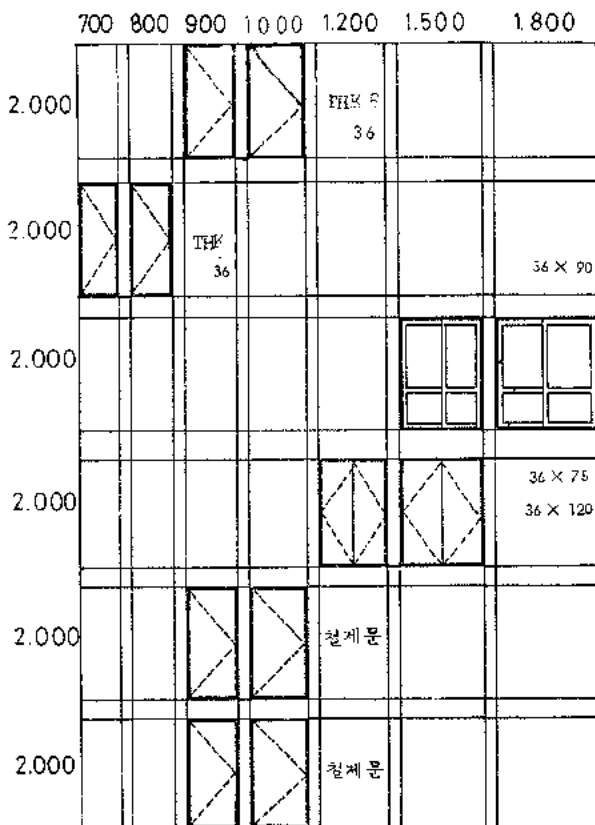
鉄材門의 開閉方式은 外여닫이 또는 出入口 幅이 넓은 경우는 쌍여닫이 방식이다. 강판의 두께는 KSF 4508 (강철재분)에 의거 1.6mm 이상으로 하며, 다음 (표 7)에 따른다.

(그림 3)은 内部 出入口의 位置에 의한 크기 및 部材 치수를 表示한 것이다.

(표 7) 철재문의 강판두께 (單位: mm)

구 분	명 칭	두께
창	틀·추압·번선·중간휴대·물끊기 (관문·틀선)	1.6
	창대 판·비 아부림판	2.3
	창선반	1.2
	창선틀	1.2
	레일 (미서기·미닫이)	2.3
창짝	울거미·살	1.6
출입구	문틀	
	틀·물끊기 판 (윗틀·선틀)	1.6
	딴벽선	1.2
	문틀선	1.2
	문턱·밀문용레일	2.3
	문	
	울거미·미장	1.6
	양판·플러쉬판	11.6
	휨살·앵커플레이트	

(單位: mm)



(그림 3) 内部 出入口 基準(案)

3) 알루미늄 窓戸

① 알루미늄 製品 分析 및 基準抽出

아파트 및 一般住宅의 外部窓은 대부분 알루미늄 제 품으로 되어 있으며 外觀上 중요한 디자인의 要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窓戶는 部材의 두께에 대한 規制事項이 없으므로 不良製品이 많이 市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對한 적정한 基準抽出이 要求된다. 調査結果 KSF 4506 (알루미늄 窓戶)의 치수는 形狀을 너무 細分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適用上 상당한 問題가 되며, 窓戶의 各 機能面에 있어서 多樣한 意匠性을

고정시키므로써 適正化할 수 있는 部材의 범위를 폭과 너비 程度로 좁혔다.

이것은 抽出을 위해서 業體의 製作 사양서를 中心으로 여러가지 形을 수집하여 分析한 結果는 다음의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窓戶 두께의 規格에 대한 규격은 KSF 4506에는 없으나 建設部 制定 建築工事標準示方書에서는 1.35mm로 정하고, 許容誤差의 範圍를 0.0 ~ +0.5mm로 하고 있다.

市販되고 있는 알루미늄 製品의 두께에 대한 調査結果와 基準(案)은 (표 13) 과 같다.

(표 8) 50mm 알루미늄 窓門틀재 基準抽出 (單位:mm)

구분 부재명	평 균		K S F		비 교		기 준 안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윗틀재	50	29	50	25	±0	±4	50	25
밑틀재	50	30	50	30	±0	±0	50	30
중간틀재	50	55						
선틀재	50	25	50	30	±0	-5	50	25
중간선대					-1.7		15	
윗막이	15	25	16.7	25		±0	15	25
중막이			18	26	±0		15	25
밑막이	15	40	15	40	±0	+0	18	40
선대	18	30	18	30	-5.7	±0	18	30
여밌대	18	26	23.7	30		-4	18	30

(표 9) 70mm 알루미늄 窓門틀재 基準抽出 (單位:mm)

구분 부재명	평 균		K S F		비 교		기 준 안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윗틀재	70	30	70	30	±0	±0	70	30
밑틀재	70	30	70	30	±0	±0	70	30
중간틀재	70	60						
선틀재	70	30	70	30	±0	±0	70	30
중간선대								
윗막이	21	30	27	30	-6	±0	20	30
중막이	21	30	21	30	±0	±0	20	30
밑막이	21	55	21	50	±0	+5	20	50
선대	25	30	25	35	±0	-5	25	30
여밌대	25	30	33	30	-8	±0	25	30

(표 10) 80mm 알루미늄 窓門틀재 基準抽出 (單位:mm)

구분 부재명	평 균		K S F		비 교		기 준 안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윗틀재	80	30	80	35	±0	-5	80	30
밑틀재	80	30	80	35	±0	-5	30	30
중간틀재	80	60						
선틀재	80	30	80	35	±0	-5	80	30
중간선대								
윗막이	25	35	30	35	-5	±0	25	30
중막이	25	30	25	35	±0	-5	25	30
밑막이	25.5	65	24	60	±1.5	±5	25	60
선대	30	40	30	38	±0	+2	30	35
여밌대	30	38	35	38	-5	±0	30	35

(표 11) 100mm 알루미늄 窓門틀재 基準抽出 (單位:mm)

구분 부재명	평 균		K S F		비 교		기 준 안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윗틀재	110	35	100	35	±0	±0	100	35
밑틀재	100	40	100	50	±0	-10	100	40
중간틀재	100	100						
선틀재	100	40	100	30	±0	+10	100	35
중간선대								
윗막이	33	50	35	30	-2	+20	30	30
중막이	32	40	35	60	-3	-20	30	40
밑막이	34	85	33	70	+1	+15	30	70
선대	36	50	35	38	+1	+12	35	40
여밌대	40	50	35	46	+5	+4	35	40

(표 12) 100mm 알루미늄 窓門틀재 基準抽出 (單位:mm)

구분 부재명	평 균		K S F		비 교		기 준 안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폭 (A)	너비 (B)
문틀재 (사각재)	100	45	100	45	±0	±0	100	45
윗막이	75	45	100	45	-25	±0	75	45
중막이	100	45	100	45	±0	±0	100	45
선대	60	45	100	45	-40	±0	75	45
밑막이	200	45	100	45	+100	±0	200	45
중간선대	65	45	100	45	-35	±0	75	45
문틀재 (C형재)	100	45						
유리접	3	17						

(표 13) 알루미늄 窓門틀재 두께 基準(案) (單位:mm)

구분 부재	평 균	기 준(안)
50	1.2	1.35 이상
70	1.35	1.35 이상
80	1.45	1.35 이상
100	1.4	1.35 이상

* 基準(案)에 있어서 유리접, 스판드렐, 물딩재에 있어서는 용도의 특성에 따라서 두께를 조정하되 겨지 1.2mm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窓戶 크기에 따른 使用部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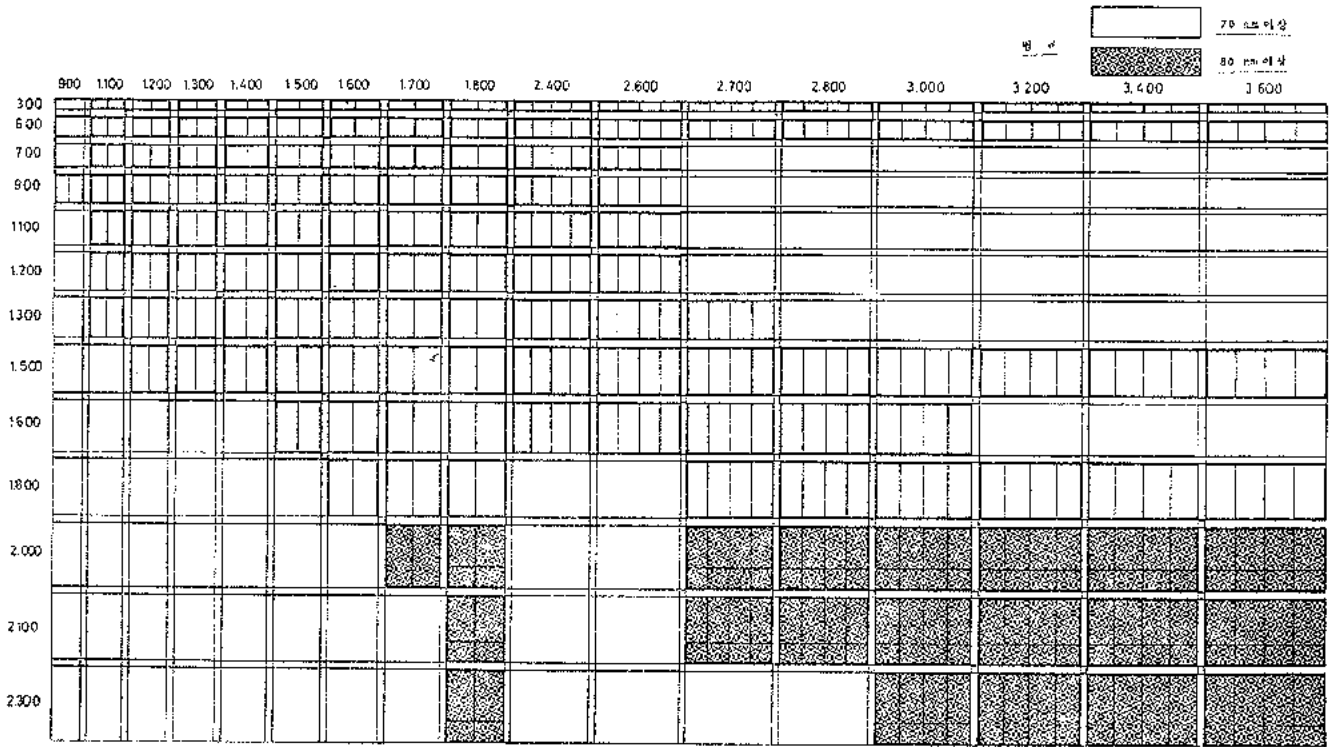
建築標準詳細圖集(1)의 窓戶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窓의 使用부재는 窓의 높이 1,800mm를 基準으로 한 1,800mm 以下는 70mm 以上의 部材를, 1,800mm 以上은 80mm 以上의 部材를 使用한다. (그림 4 참조) 그러나 높이(H) 2,000mm 以上, 폭(W) 2,700mm 以上의 開口部인 居室 窓은 100mm 程度를 권장한다.

出入門에 使用되는 알루미늄 門은 主로 外部 出入門으로 그 크기도 어느정도 統一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使用部材는 100mm로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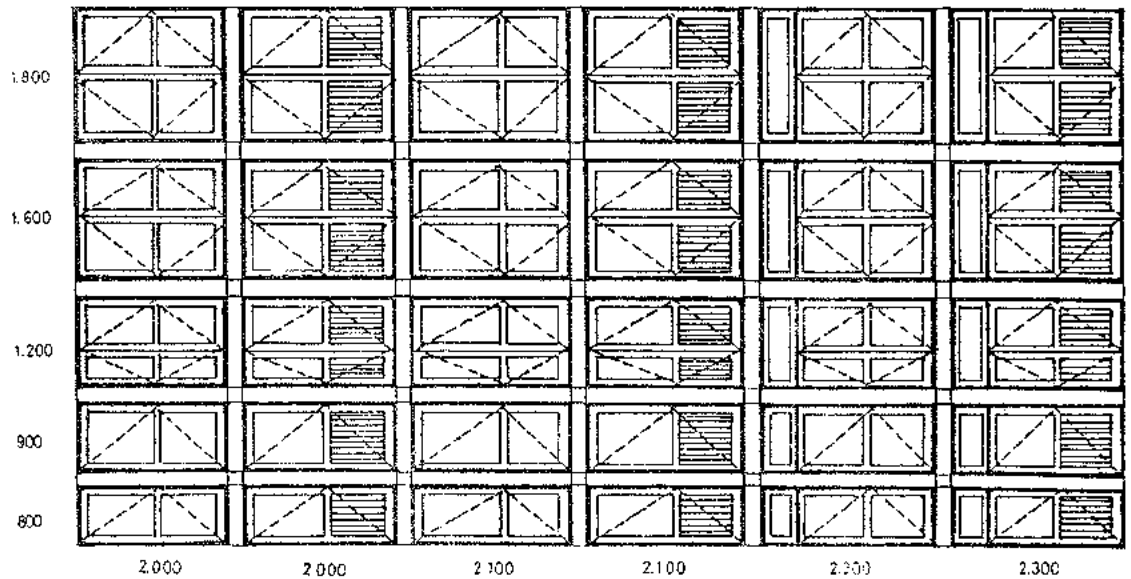
4. 欄干

1) 발코니, 屋上欄干

① 디자인상의 條件: 발코니와 屋上欄干은 그 처리가 아파트 外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디자인의 측면에서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 同時에 安全性(특히 아파트에서)이 중요하다. 첫째, 安全 치수設計를 위한 基礎資料로서, 欄干높이, 난간동자, 간격, 양카 및 구체에 接觸상태의 완전 등이며,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現狀에서 外觀決定의 디자인 폭을 가능한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展開를 위한, 全体 外觀 중 하모니와 리듬의 要素로서 난간 디자인, 장독과 화분대 처리와의 관련, 單純材料의 구사로서 多樣한 形態抽出의 可能性을 가져야 한다. 그 한 例로서(그림 6)과 같은 類型別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알루미늄 窓戶 使用部材 (나비)



(그림 5) 알루미늄 出入門 使用部材

(單位: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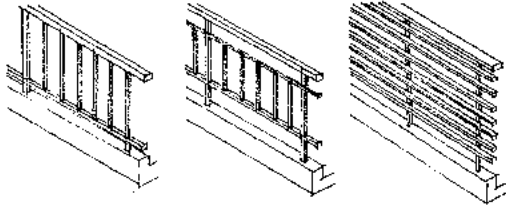
② 基準(案)抽出: 類型A은 鉄파이프 수직 一般型으로 가장 一般的인 모양이나 보편적이며 고식화된 패턴이다.

마감바닥에서 欄干높이 1.1m, 구체 연결 동자간격 1m이하, 난간의 동자간격 100mm이하로 규정하고, 하부가로 가름대 높이 바닥에서 100mm이하로 한다. 손스침 두점대 規格은 (45~60) × (60~70), 45×75파이프를 추천규격으로 하며, 보통 지주 동자로 (27~45) × (2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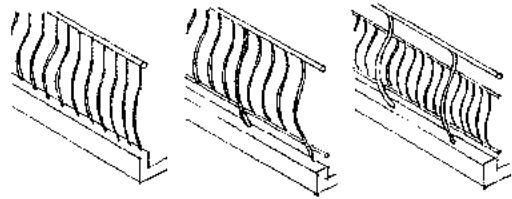
45×45 파이프를 추천규격으로 한다. 이때 간살동자는 (25~30) × (25~30), 25×25를 추천규격으로한다.

類型B, 鉄파이프 만곡형은 밀部分이 外部로 曲面 돌출되어 수직형의 單調로움을 덜수있고 使用上 매우 機能的이며, 形狀에 부드러운 感覺을 채택할 경우 변용할 수 있는 類型이다. 欄干 지주 동자와 간살종자의 曲線 정도는 標準圖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발코니 길이, 形狀에 따라 曲線의 정도(r)는 가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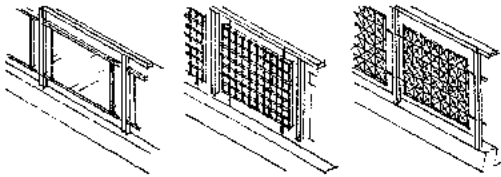
(유형 A) 수직파이프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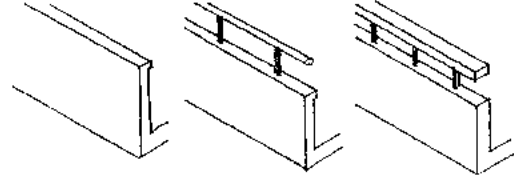
(유형 B) 원뿔파이프 반곡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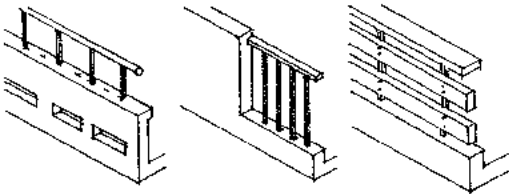
(유형 C) 무늬 스크린 (가리개판) 삽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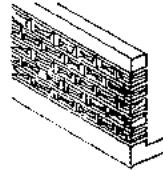
(유형 D) 콘크리트 난간형



(유형 E) P, C 콘크리트 난간형



(유형 F) 콘크리트 무늬 블록, P, C 콘크리트



(그림 6) 발코니, 屋上欄干 類型別 形狀

類型C, 무늬 스크린 (가리개板) 삽입형은, 무늬유공철판, 철망, 망입유리판, 강화유리판, 아크릴등, 스크린의 무늬를 난간간살동자 대신에 삽입시키는 방식이다. 스크린의 무늬를 각종 패턴으로 變化시켜 特色을 줄 수 있으며, 가리개 역할도 한다.

類型D, 콘크리트 난간 一般型, 類型E, P, C. 콘크리트 欄干, 其他 類型F, 콘크리트 무늬 블록 난간형등으로 分類하여 디자인될 수 있다.

2) 階段欄干

① 階段欄干은 승강운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낙하 위험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계단설계에 있어서 첫째, 이러한 안전설계를 위해서는 난간의 높이, 손잡이와 계단사이의 간살간격, 난간의 지지구조등이 문제가 되며, 둘째, 쾌적한 손잡이대(손스침)의 촉감과 간살전체의 리듬감이 있는 조형상의 問題가 된다. 우선 난간의 높이 900mm, 간살구조는 어린이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100mm 内外의 치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단마다 2개 이상의 지주를 세울 경우 125~150mm 또는 기타의 경우 100mm 이하가 될 수 있다.

階段바닥의 設計에 있어서는 계단의 幅이 1.2m 로서 거의 비슷하고 層高가 일정하여 部品化가 充分히 可能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석 현장걸기를 저항하고 테라조판이나 P, C.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階段欄干 디자인의 基準(案) 抽出은 (그림 7)과 같이 類型別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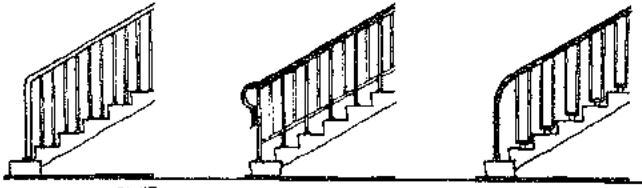
類型A, 의 수직 파이프 一般型은 공정이 간단하고 손쉬운 材料의 現存상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어느 경우나 그 構成은 다양하게 變形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欄干的 造形成을 줄 수 있다.

類型B, 는 수직 파이프 曲線型으로, 난간 간살 파이프의 形狀이 수직적으로 구성될때 딱딱하고 단조로움을 接合部와 上下部의 曲線을 넣으므로써 경쾌한 리듬감을 가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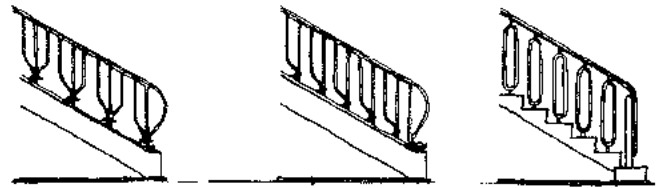
類型C, 는 水年 파이프 型, 난간 지주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간살이 수직적으로 構成될 必要는 없다. 같은 安全치수를 유지 하면서도 材料의 증가없이 동일한 재료와 工價구사로서 可能한 形態들이다. 또한 승강하는 계단의 선형을 한층 강조하며 연속감과 리듬감이 있다.

類型D, 는 가리개판 型으로, 600~900 mm 간격의 난간 지주대를 設置하고 지주대 사이를 강화유리, 금속망, 유공철판, 등으로 끼우는 형식이며, 공정도 간단하고 새로운 感覺의 階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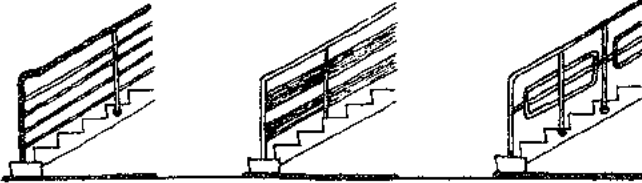
(유형 A) 수직파이프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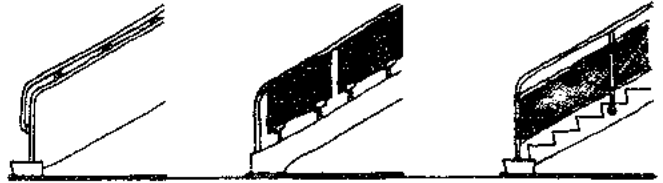
(유형 B) 수직곡선 파이프 형식



(유형 C) 수평간살 형식



(유형 D) 가리개관 형식



(그림 7)階段欄干的 類型別 形狀

5. 結 論

本 論文은 主로 아파트 建築에서의 窓戶관련 사항으로 목재, 철재등의 部材断面, 알미늄 窓戶에 대한 部材断面 및 製品 두께를 다루고 欄干關係로서 발코니, 및 階段난간을 中心으로 展開한 것이다.

最近 端工된 아파트와 設計圖를 수집分析, 檢討하여 그 結果値를 抽出해 내고, 이것을 補完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基準(案)을 作成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40여종의 아파트單位平面을 수합하여 分析하였던바 몇가지 問題點들이 다음과 같이 要約되었다. 더우기 現在의 住宅建設중 아파트 建設事業의 경우 建築設計와 監理, 施工이 업무간 区分되지 않고 있으므로 設計上의 未備, 施工의 拙速등의 問題까지 惹起되고 있다.

一責任 監督不實에 따른 施工의 하자과 이로 因한 責任 소재의 不明.

一設計圖의 未備, 또는 設計上의 不實이 現場에서 즉석 任意處理되는 過程에서의 하자 發生.

一詳細設計圖 및 示方 不在에 따른 適正建設費 算定 基準 未備.

一건축공사의 技術開發上 장애요인과 설계도 作成에 있어서 進取性的 결여등이다.

그리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基準(案)의 抽出을 위한 結論으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얻을 수 있었다.

一木材 창문을 및 窓戶部材에 대한 치수는 圖面치수上 마감치수인 公稱寸數를 統一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一窓戶圖는 實質的이고 施工上 상세한 表現이 要求된다.

一문을 骨造에 대한 자세한 製作사항이 附記 되어야 한다.

一알루미늄 窓틀 部材에 대한 두께 및 部材치수 사항을 明記하여야 한다.

一알루미늄 窓의 氣密施工이 이루어져 보다 斷熱 및 遮音에까지 유리한 構造를 이루어야 한다.

一발코니, 欄干 및 階段난간등의 安定性 및 多樣的 디자인 展開가 必要하여 部品の 組立施工을 위한 工場生産化가 促進되어야 한다.

一各種 部品은 基準(案)을 抽出함으로서 工場生産化를 촉진하고 보다 經濟的이고도 堅固한 아파트 建築으로 發展시켜야 한다.

以上과 같이 標準規格과 部品化 問題는 이후에도 보다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建築 標準規格의 補完이 要求되며, 集約的인 研究를 必要로 한다. ■

韓國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

金興坤

(忠北大學校 工學博士)

1.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

建築士는 우리의 世帶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綿綿히 이어져나갈 것이다.

干先 當場에 젊은世帶들, 새로운建築士들, 새로운 誕生된 우리의 스타들이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이 없다. 우리 世帶들, 現在의 建築士들, 즉 우리는 依支할 傳統이 있었다. 아무리 적다고해도, 우리가 依支할수 있었던 傳統은, 그래도 많이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傳統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消化하지 못하고 現在 吐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다음世帶들에게 処分하라고 내밀고 있는 現在에 와있다. 이말이 좀 甚했을까. 冷情하게 生覺하여 보자. 우리가 依支할 수 있었던 傳統을 우리가 다 消化했을까.

1945年을 反省하고 1970年以後의 現在볼 수 있는 그러한 空間과 外觀이 과연 옳았을까. 日本이 1950년에 밝아왔던 그 方式대로 지금에서 우리의 옛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空間과 外觀이 과연 옳을까. 옳았을까하고 묻는것과 옳을까하고 묻는것은 過去와 現在에 對한 質問이다. 過去에 그렇게했어야 할것을 現在에 하고 있고 現在에 하고 있어야할것을 過去에 해버렸다. 우리가 다음世帶에 물려주어야 할것은 먹어버렸고, 우리가 먼저먹어야했고 이미 消化되었어야 妥當했었던것은 消化되지 못하니 吐해낼수 밖에 없다. 그래놓고 지금에서와서 젊은世帶들에게 그것을 먹어보라고 한다. 洋果類를 먼저먹으면안되니 우리의 것, 우리의 意匠을 먼저 消化하라고 야단이다.

1950年代에 日本이 西洋建築을 日本化하면서 10年, 20年씩 消化하면서자라나 1970年代가 되고, 결국 1980年代의 문턱에 왔고, 우리는 1950年代에 6.25와, 1960年代의 격동기와, 1970年代의 好況에서 1980年代에 와 있다. 日本은 世界的인 建築으로 그네들의 意匠이 이미 발돋움을 하였다. 우리는 洋果類를 現在즐기면서 第2世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즉 우리처럼 불쌍(?)하게 되지 말고, 우리처럼 물려줄 資産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네들의 第2世들을 爲하여 依支할 傳統을 構築하라고 한다. 第2世들에게 洋果類, 洋式意匠을 조심해서 挾하라고 겁을 준다.

이것이 過然을을까. 이것이 道德과 倫理面에서볼때 옳을것일까. 우리들의 先祖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綿綿히 우리의 意匠을 消化하면서 後世의 糧食을 取하거나 없애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할必要조차 없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때에는, 그러한 어떤倫理속에서 生活하여 왔으며 또 그곳에서 成長하여왔다. 그래서 우리의 世帶는, 옛것에 對하여 몸에배여있어서 所謂 體驗이 되어있으나, 우리의 스타들은 그몸에 體驗을알려고해도 斷絶된 感情이 前提되어 있기 때문에 비위가 몹시 傷해 있는것이다.

즉 우리주변의 建築意匠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 날조된 形象이 오히려 正常인것으로 알고있는, 그러한 2世에게 어떠한 것을 주어서 어떠한 것을 傳承 시켜야 진정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消化하지 못한것은 우리의 責任이지 第2世들의 債務는 아니다. 우리는 옛것에 對한 體驗에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空間과 外觀을 만끽하면서 어떤意味에서도 自意이든, 他意이든, 享樂하여왔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많이 設計하기 爲하여, 그리고 享樂하기 爲하여 무진애를 다쓰고 있다. 이러한 무진장의 勞力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에 對한, 우리들을 爲한 勞力이지 다음世帶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生覺이 前提된 行動은 아니었다. 적어도 歷史에 對한 無分別이 앞섰던形式이지 理念, 즉 어떤 哲學의理念이 前提된 뜻깊은 設計나 意匠은 아니었고 施工 또한 아니었다. 自己慰樂과 모만적만족으로 現在가 進行되었고 未來를 斷絶시켜왔다.

結局, 問題는 30年前 日本이 걸어왔던걸을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옳을까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全力이 그쪽으로 쏠릴때 日本은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나갔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격차는 영원히 줄일수 없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日本만을 比較하는것은 東洋의인 思考때문이다.

中共은 斷絶된 世界임으로 論外가 된다) 다른쪽을 生覺하여 보자.

未來指向의이지 過去指向의인 것은 아니다. 未來를 爲하여 建築이 存在하는것이므로 過去의 것은 잊어도 된다는 生覺을 하게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建築意匠도 버려도 좋다는 生覺을 하게된다. 그리고 世界에서 現在 내달

고 있는 空間과 外觀을 創作해나가야하고 世界的인 그네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걸을수 있는 方法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강조하게된다. 全力投球해도 잘되지 못할일인데, 過去指向的으로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後退만 있게 될 것이며 결국 2세에게 물려주게되는것은 後退된 것까지 包含된 오로지 前進만을 要求하게되는 結果가 되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게된다. 簡單한 비유적인 質問으로는, 洋式果類를 우리가 계속 즐긴것인가 혹은 우리의 것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消化해나갈것인가. 어느것이 옳은가, 두가지가 다옳은가, 두가지가 다틀리는가, 이를 区分해 나가야 할 時点에 와있는 것이다.

2. 우리의 建築은 線의 建築이다

우리의 建築만이 線의 建築은 아니다. 日本의 것도 中國의 것도 線의 建築이다. 中國의 것은 大陸人답게 그 線의 建築을 余有있게 즐기고 包括한다하고, 日本의 것은 섬사람답게 그 線과 더불어 快樂追求속에 含縮시킨다 하고, 우리의 線은 兩人勢力사이에 끼여 늘 不安에 떠는 선율적인 線의 建築이라고 비유한 者(日本人)가 있다. 「半島라는 것이 드디어 이나라의 運命의 方向을 決定하였다.」고 전제하고, 극동을 이루고있는 세나라가 어떻게 다른 歷史와 藝術을 나타냈는가를 記述하였다. 즉 中國은 大陸이어서 大地에 平安을 누리고 意志가 강경한데 대하여, 日本은 섬나라이니 大地에 즐거움을 느끼고 人情은 安樂하다고 하였으며, 韓國은 땅에 平安을 얻지 못하고 그마음이 靜寂하다고 하였다.

造形美의 表現에 있어 강경함은 形을 擇하고, 安樂함은 色을 求하나 靜寂함은 線을 取하였다고 하면서, 中國의 藝術이 意志의 藝術이고, 日本의 藝術이 情趣의 藝術이었으나, 그사이에 홀로 悲哀의 命數를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였다. (趙要翰의 藝術哲學 P. 177)

이말을 긍정적으로 받는경우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두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부정적인것은 우리의 世帶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피해왔다. 여기에서 밝히고저하는것은 긍정적인面이다. 우리의 根性은 어떤것인가. 그렇게 同情의 行爲가 없다. 이 同情은 上向으로 調整되는 行爲가 결코 아니어서, 下向으로 調整되는 이 絶對的의 行爲가 우리 주변의 어떤하나의 傳統인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것인가.

下向으로 調整되는 이 同情은 선율적이다. 그리고 女性의이다. 늘 悲劇的인 것에 처하여서만 안방에서의 눈물과 同情이 그치질 않았고, 그 悲劇的인 것은, 그리고 이 同情의 行爲는 自己滿足을 가져다주었으며, 建築行爲도 例外는 아니어서 나보다 잘된 建築보다는 내가 한것보다 잘

안된 建築, 그래서 竣工되고 난 뒤 困惑을 겪고있는 그에게 더없는 따뜻한 同情을 주는 그 行爲속에서 快感을 느끼는 그 根性은 어떤 선율의 線인가. 우리가 걸어왔던 過去에서, 우리가 접하여왔던 現實에서, 悲劇的인 文學과 演劇과 映画에 처한 연민의 情을 얼마나 많이 生活속에서 発見해 왔던가. 기차길위에서 노는 어린이를 向해 달려오는 汽車를 본 그 어머니가 등을 汽車에 물리고 어린이를 밀어내어 살리는 그러한 母性속에 우리가 자라왔다.

즉 西洋의 어머니가 등뒤에 어린이를 감추고 汽車를 向해 正面으로 맞서는 것과는 격심한 差가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커왔다. 殺身成仁의 뜻이 숨겨져서 이루어지는 母性속에 우리의 線이 떨리면서 存在한다. 물을 數十里 밖에서 길어날려서 번돈으로 낭군을 유학시키고 결국 그 낭군한테 쫓겨나도 自己子息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一念으로 물장사를 계속하는 그 母性속에 우리世帶는 커왔다. 그리고 그 母性은 子息한테 속았어도 결국 自己 잘못으로 늙어갔다. 우리의 老建築도 自己잘못으로 하고 늙어갔다.

1900年代에서 1945年代까지의 45年間이 幾千年의 歷史를 속였어도 우리의 老建築은 自己잘못으로 하고 늙어간 것이다. 1945년에 처한 새로운 기대는 싹이 트지도 못한채 1950년의 6.25를 당했고 폐허속에서 숨들릴 겨를도 없이 파동과 격랑속에서 1960년의 5.16을 보았고 그리고 1970년의 好況을 맞이하였다. 이때의 好況에도 우리의 老建築은 계속 늙어갔고 새 世帶인 우리는 그 동자에서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洋果類에 몸이 밴 建築士가 누덕이가된 삼베 저고리를 입은 물장사 어머니를 찾기에선 너무나 世帶의 差異가 많았고 自己의 空間內에 이 傳統的空間을 부쳐두기가 참으로 困惑스러웠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建築士는 故鄉을 잃지는 않았다. 第2世들에게 사배의 몸을 알려야 한다고 권하면서 老母인 建築을 찾게한다. 그 몸안이 眞實되고 참다운 母性이었다고 참회하고 또 그렇게 體驗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傳統을 줄 수 있는 바탕을 2세에게 주지 못할망정 그네들의 그다음 世帶에게는 우리처럼 똑같은 行爲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네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依支할 傳統은 있었으나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는 것이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린를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衞寧鞠의 線을 권유하나, 정몽주는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하면서 백골이 진토되는 淸々한 面壁的 抵抗과 傳統을 고집하였을때, 가차없이 그 衞寧鞠은 그 壁의 목을 치고만다. 여기에서의 線은 강인하다. 앞에서의 線은 떨리는 선율적 線이며, 늙어가는 線인데 反하여, 이곳의 線은 그렇게 強할 수가 없다.

3. 우리의 後世人들이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모든것이 傳統을 만들어가는 過程이라고 生覺하는 金鍾星(I.I.T教授)의 경우는 筆者를 몹시 思索하게 만든다.

金氏는 韓國人이 한 것은 다 韓國建築이어서 世界 어느 나라에서하든 韓國人이 設計하여 創作된것은 韓國化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氏의 경우는 少年期, 青年期를 이곳에서 充實히 지냈다는것이 前提되므로 그의 意見은 妥當하다. 즉 이 경우는 建築創作過程에서 作家가 자라난 韓國이라는 바탕이 결국 無心의再現이 되면서 建築에 表現되는 그 自体가 傳統이 될수 있다는 뜻이 되거나 혹은 建築意匠過程에서 일어나는 精神的인 分析과 心理的인 価値, 그리고 創作의 情趣와 構想 및 表現의 內面性, 그리고 갈등등이 계속 반복되어 걸리지면서 最終의 歡喜는 결국 韓國化 되어지는 데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傳統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것이 妥當할것 같다. 즉 이러한 두가지 思想의 바탕에서 誘導되어지는 作品일 경우, 그 傳統은 高次元에서 昇華된 建築으로 보아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作家가 자라나는 過程, 즉 韓國의 바탕을 얼마만큼 吸收했느냐 하는 것이 될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인 바탕에서 少年期 青年期를 充實하게 보낸 경우와 少年期부터 外國의 바탕에서 자라나오는 경우와는 많은 差等이 建築意匠過程에서 發生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理由는 建築意匠過程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過程에서, 無我的 眞理가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데, 그 無我是 感受性이 예민했던 少年期와 青年期の 잠재의식에 많이 濃縮되어 은연중 自己의 再現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韓國化 되어질 수 있는 素地는 어느쪽이 더 많은가 하는것은 自明해진다. 少年期和 青年期를 情緒의濃도가 짙은 韓國땅, 그리고 韓國의인 情趣에 몸이 뻗 建築士, 그리고 그러한 作家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들이 갈등과 고민을 많이하면 할수록 우리의 傳統은 綿綿히 지탱될 수 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創造로서의 建築이 古建築에 對한 모방으로 나타날때 이것은 자기기만이며 모작이다. 그렇다고 傳統은 創造되는 것은 아니다. 그 傳統은 數字나 紋樣이 一定하게 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傳統은, 우리의 傳統은 綿綿히 이어져온 우리의 理念이다. 그 理念은 韓國의 自然과 美속에 있으며, 韓國人의 理想과 美속에 있으며, 韓國美의 歷史的 傳承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反省해야할 點이 있다. 즉 初步的인 世界속의 韓國建築이 始作된지 10有余年, 이 期間이 비록 짧다고는하나 어느 우주인이 말한 「巨步」임에 틀림없고, 그 巨步는 後世의 우리建築史家가 傳統의 전통기였다고 말할수 있도록 깊은 自省이 必要할 것이다. 우리가 依支할 傳統은 있었음에도 우리의 2世가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이 없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4. 위에서 論述된 韓國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은 우리의 傳統이 어떻게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指向해야 하느냐 하는데 있다. 그 첫째는 創造의 情趣過程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創造活動의 当初에 建築士로서의 內面을 支配하는 漠然한 感情的 發酵狀態에서 無形態의 素材의 體驗內容으로부터 建築의形成에 이르고자 摸索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創造될 것 같은 感興에 젖을 때 韓國의 理念, 즉 우리의 自然과 美, 우리의 理想과 美, 우리의 歷史的 傳承等を 일순간이라도 生覺해 본다면 그 意義는 클 것이다. 그 두번째는, 創造의 氣分으로부터 앞으로 誕生될 建築作品의 全体的形像이 漠然하게 案出되는 過程, 즉 建築創造의 心理過程中 最中心的인 位置에 있을 때 그리고 그 構想이 強한 意志와 冷靜한 思惟에 依해 能動的이며 意識的으로 될때 혹은 靈感作用에 依해서 受動的이며 無意識的으로 그 構想이 될때 한순간 만이라도 우리의 理念을 生覺하여보자.

그 세번째는 感情移入이 作用되는 內面的인 展開에서 즉 想像에 依한 形成活動이 主導的要素를 이루는 그래서 內面的으로 充分히 展開하여 점차 명료한 형태나 질서를 부여하는 過程에서 우리의 理念을 조금이라도 移入시켜보자. 그 네번째는 內面的展開에 依해서 成熟된 內面的인 想像形像을 一定한 物質的素材와 建築의 技巧에 依해서 外面的形像으로 이끌어 客視的인 所與로서의 建築作品을 完成하는 過程에서 우리의 理念을 客視的으로 參與토록 하여보자.

이것은 하나의案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은 바로 우리의 傳統이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나하나만의 고민과 갈등일 수는 없다. 우리 世帶가 같이 걸려져야할 課題인 것이다. 어느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單位者는 存在치 않는다. 傳統은 具體化된 主体性과 民族性과 全 建築士가 하나의 理念이 될때 存在하는것이다. ■

오피스 랜드 스케이핑

(完)

金 炯 宇

(弘益工業專門大學 專任講師)

Ⅳ. 計劃의 分析

1. 디자인 方法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事務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完全히 理解하고 計劃에 反映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이것을 爲한 準備作業과 作業進行은 다음과 같다.

① 說問調査에 의해 組織員들은 2周동안 個個人에 대한 것을 調査하며, 그것은 크게 物理的 패턴(physical patterns)과 職務패턴(Task patterns), 活動明細(Activity breakdown)에 대한 것으로(표 2)는 액션오피스의 인터뷰 樣式의 例이다. 이밖에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컴퓨터處理할 수 있는 카드형의 調査紙가 있어서

(표 2) 액션 오피스 인터뷰 樣式의 例

액션오피스 인터뷰 양식(樣式) # 1

現在의 事務所 패턴

姓 名: _____ 職 銜: _____ 日 字: 19 ____ . ____ . ____
 会社, 機構名稱: _____
 職 責: _____ 年 齡: _____

A. 物理的 패턴

자신의 사무실에서 週당 몇시간을 보내니까?

보내는 시간을 100%로 했을때 사무실의 活動時間은?

1. 앉음 _____
2. 서있음 _____
3. 걸음 _____
4. 휴식 _____

B. 職務 패턴

보내는 시간을 100%했을때 사무실에서 活動시간은?

1. 書類읽기 _____
2. 會議 _____
3. 書類작성 _____
4. 指示 _____
5. 外出入 _____
6. 個人的時間 _____
7. 其他 _____
8. 電話 _____

당신이 要求하는 것은 이것보다 이것보다 이상 혹은 이하이나?

C. 活動明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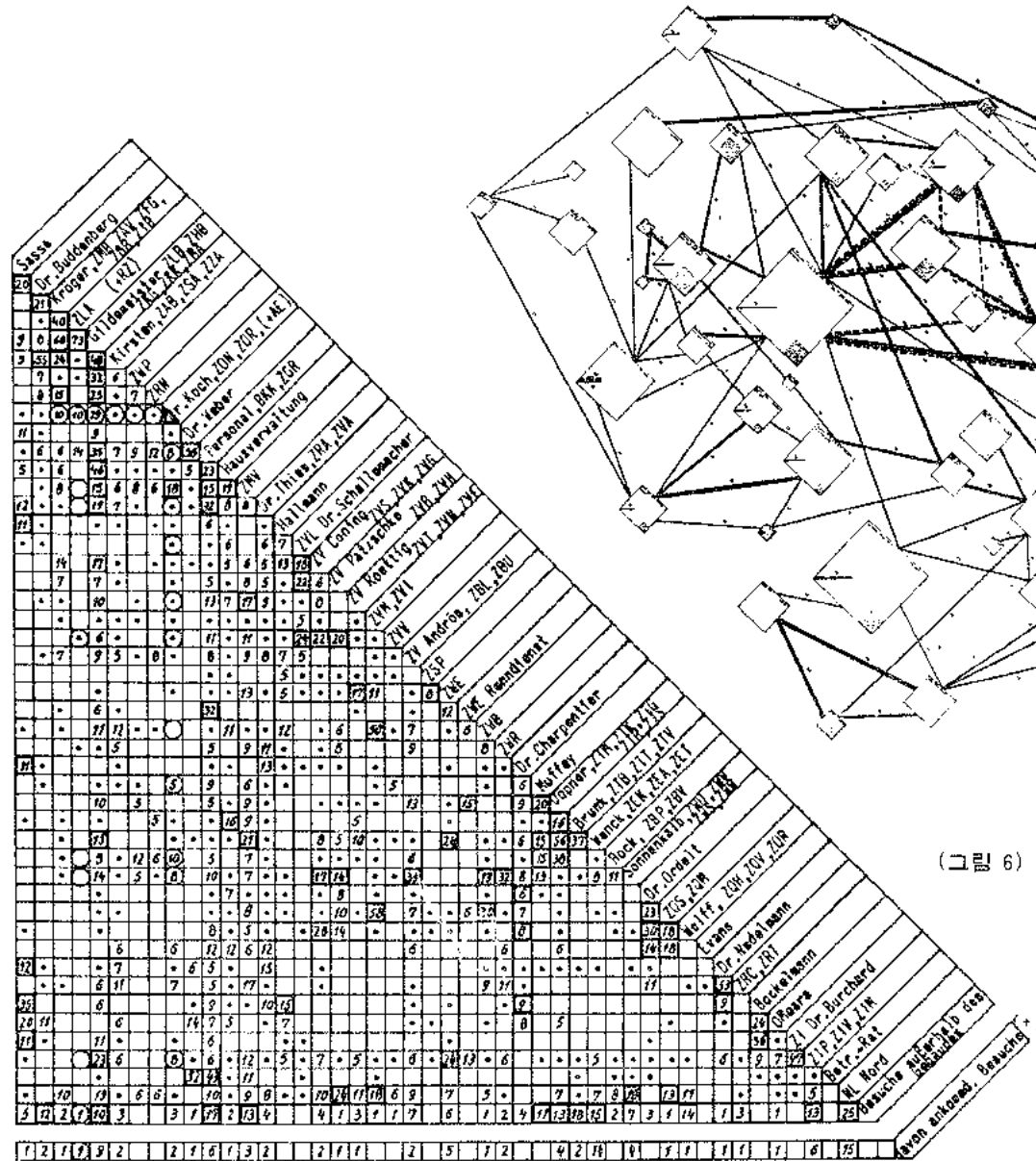
1. 通行: 1日 사무실 出入 回数 _____
 1年間의 전체 出張 回数 _____
 出張은 1日 혹은 미만 _____ 2~5일 _____ 1~3週 _____
 定期的인 경우 _____ 非定期的인 경우 _____
 出張때 116(파운드)이상의 金 휴대 _____ 速記用 口述錄音器 휴대 _____
2. 書類: 1日 受取하는 公文, 메모, 複写物의 數 _____
 1日 発送하는 公文, 메모, 複写物의 數 _____
 개인적인 書類관계 職務는 4시간 이상 걸립니까? _____
 1日以上 _____ 1週以上 _____
 동시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書類는 하나이상 얼마인지 _____
 週당 훑어보는 書類는 全体 얼마 정도인가? _____ : 읽는것은 _____
 1日당 書類作成時間: _____, 指示時間(書類) _____
3. 會議: 1日당 5분미만의 모임 回数 _____ : 5분미상의 모임 回数 _____
 자신의 사무실에서 1日計劃된 모임 回数 _____
 1日당 사무실에서 관련부서와의 모임 回数 _____
 外部 訪問客의 數 / 1日당 _____
 1日당 秘書가 立會하는 回数 _____ : 진제시간 _____
4. 1日 受取하는 通話回数 _____ : 당신이 거는 回数 _____
 書類나 그림을 参照하는 경우 _____ : 노트하는것 _____ : 記錄하는것 _____
5. 情報의 修正과 카일빙: 情報을 수집하는데 보내는 1日間の 回数 _____
 다른것이 포함된것 _____ 성취의 비율 _____ %
 1日당 情報의 분류시간: _____, 자신이 사무실내에서 사용되는 書類綴의 數 _____
 사무실 밖에서 사용되는 회의의 數 _____

事務室 内部에서 일어나는 모든 現象과 앞으로의 希望을 完全히 조사할 수 있다.

② 이 調査는 各 分野에 있는 事務員들의 要求에 따라 이루어지는 体系的인 方法으로서 必要로 하는 備品(裝備), 必要로 하는 作業空間, 作業場所의 往來에 必要한 空間을

算定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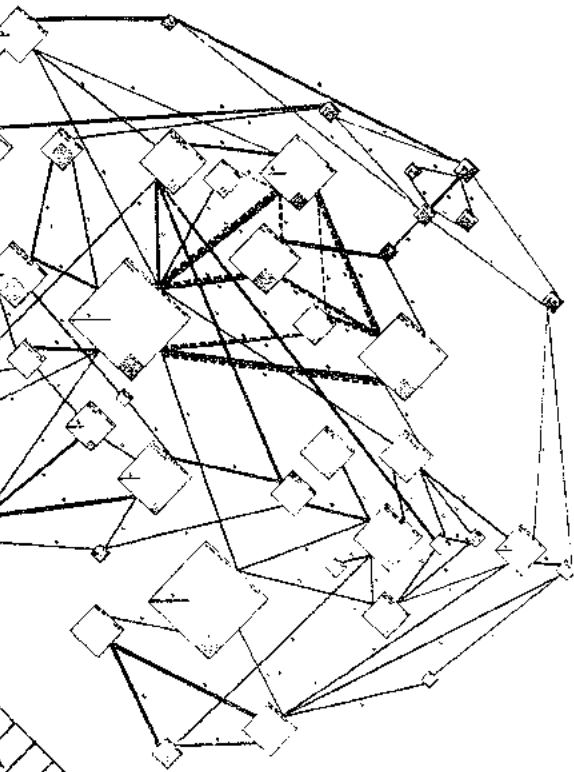
③ 커뮤니케이션과 分野別 要求事項의 相互關係(Interaction)에 따라 各室의 合理的인 配置를 構想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컴퓨터의 資料處理 결과로 하나의 圖表를 作成한다. (그림 5·6)



(그림 5) 쿼크보오너팀의 상호관계의 도표 (Matrix chart)

④ 이 圖表(Matrix chart)에 의한 配置區劃의 多樣한 패턴은 數學的으로 要素의 數에 따른 "팩토리얼(Factorial)"의 가지수로 構成될 수 있으며, 이 要素(室 또는 作業場)의 接近值(Adjacency Value)에 따라 몇개의 代案을 得點으로 評價하여 결정한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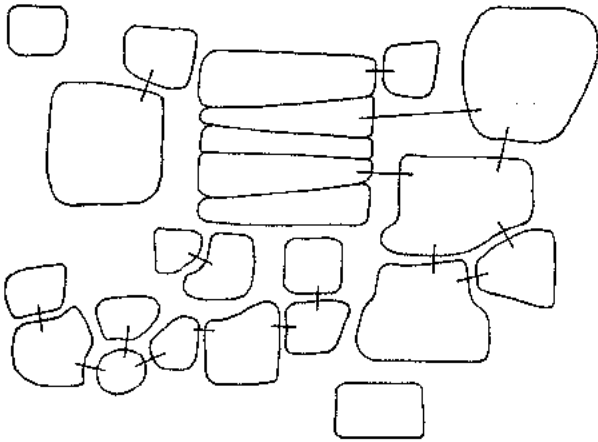
⑤ 그 結果 각각 커뮤니케이션의 作業効率上 最短距離를 連結하는 位置에 作業場所가 配置된다. (그림 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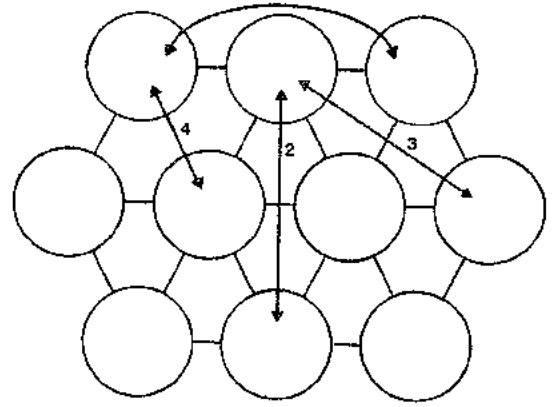
(그림 6) 도표에 의한 상호관계의 다이어그램
선의 굵기는 상호작용의 밀도를 나타낸다.

⑥ 基本的인 計劃에 到達하면 提出된 프랜에 따라 移動家具나 포터블 스크린 등의 要素를 포함하는 模型(Scale Model) (사진 1) 을 製作하여 檢討를 거듭하게 된다.

⑦ 必要한 變更의 계속적인 研究를 進行하며, 대체로 6個月마다 그동안 일어난 諸 問題를 체크하고 適宜改善하거나 일반적인 調整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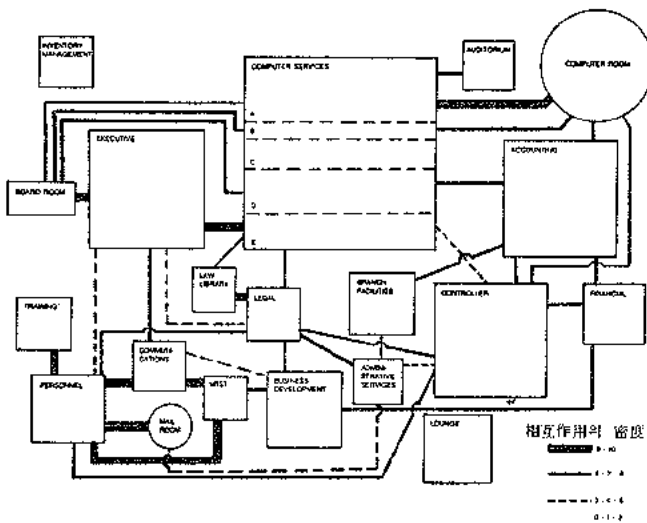


(그림 8) 후리랜드로作成한 配置構想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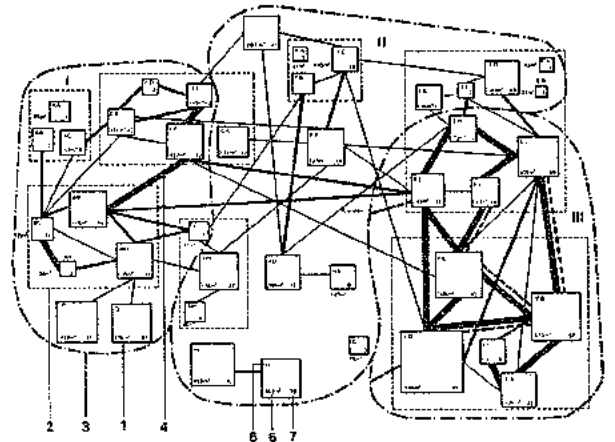
(그림 7) 室의 要素를 接近値로 나타낸 그림

번제 1. 아주 먼것(Very Far) 2. 먼것(Far)
3. 가까운것(Near) 4. 접근한것(Adja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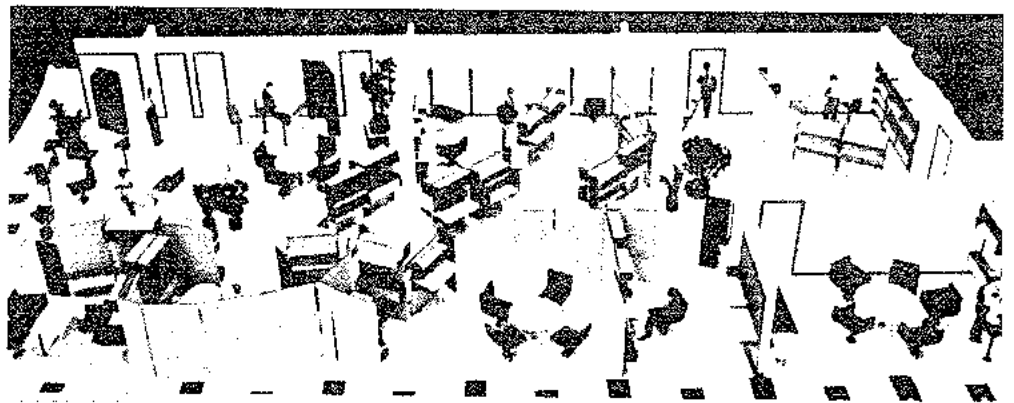
(그림 9) 좀더 정리한 配置構想 다이어그램

연결線은 10등분으로 等級 密度를 表示한 것임.



(그림 10) 配置區劃을 完成한 다이어그램의 예

1. 係의 區劃 2. 課의 區劃 3. 部의 區劃 4. 相互作用的 量
5. 係의 名稱略語 6. 所要面積 7. 人員數를 나타낸다.



(사진 1) 허만 밀러社의 「액션오피스」要素의 모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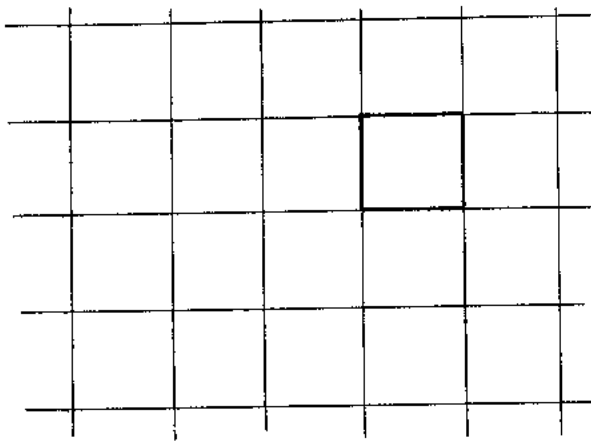
2. 配置計劃의 基本

配置計劃은 基本的으로 作業場을 構成하는 시스템 패니처의 多様な 패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리드 모듈(Grid Module)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配置를 할때 基本패턴의 그리드(그림 11)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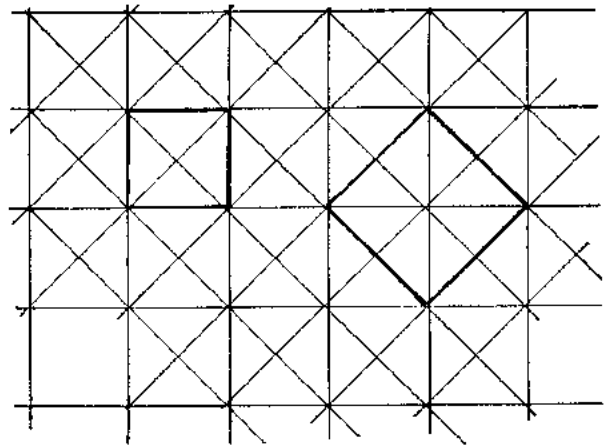
시스템 家具는 그 構成材를 패널과 스크린, 책상과 의

자, 응집셋 등으로 이루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色相, 모서리의 굴림, 材料, 接合部分의 기둥의 처리, 照明方式에 따라 特徵이 결정된다. 여러가지의 시스템중 일반적인 要素를 나타낸 것은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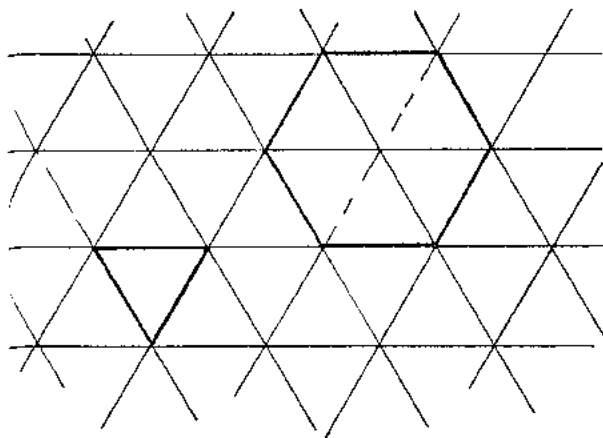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된 事務室은 家具의 配置가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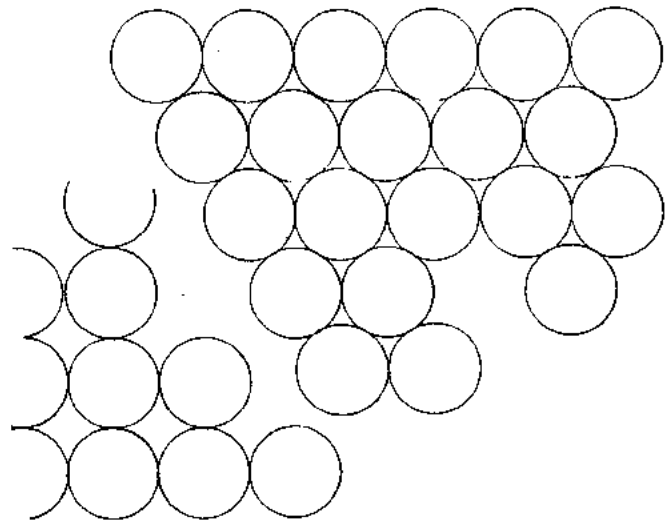
正方形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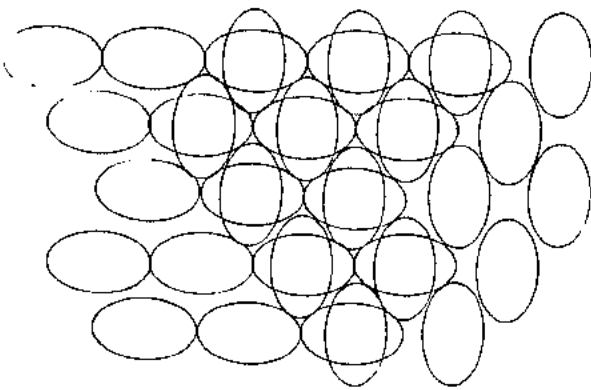
正方形 모듈 + 斜線 모듈



3 角形 및 6 角形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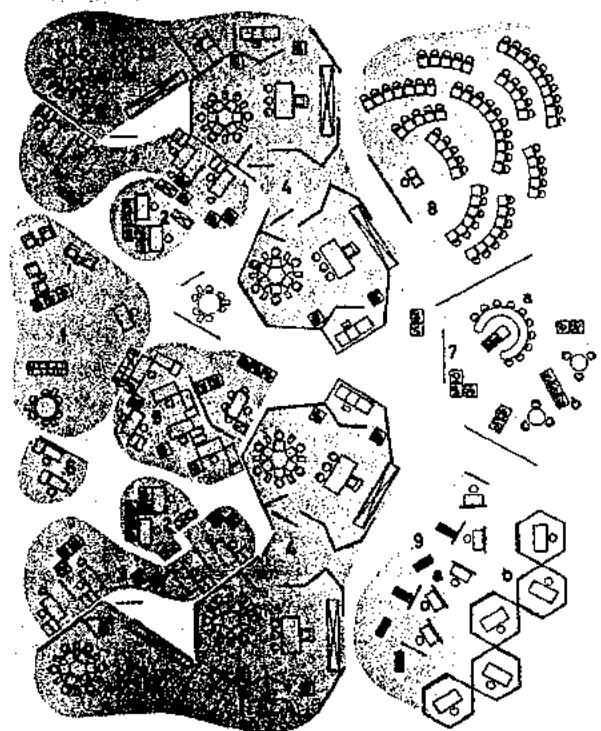


圓形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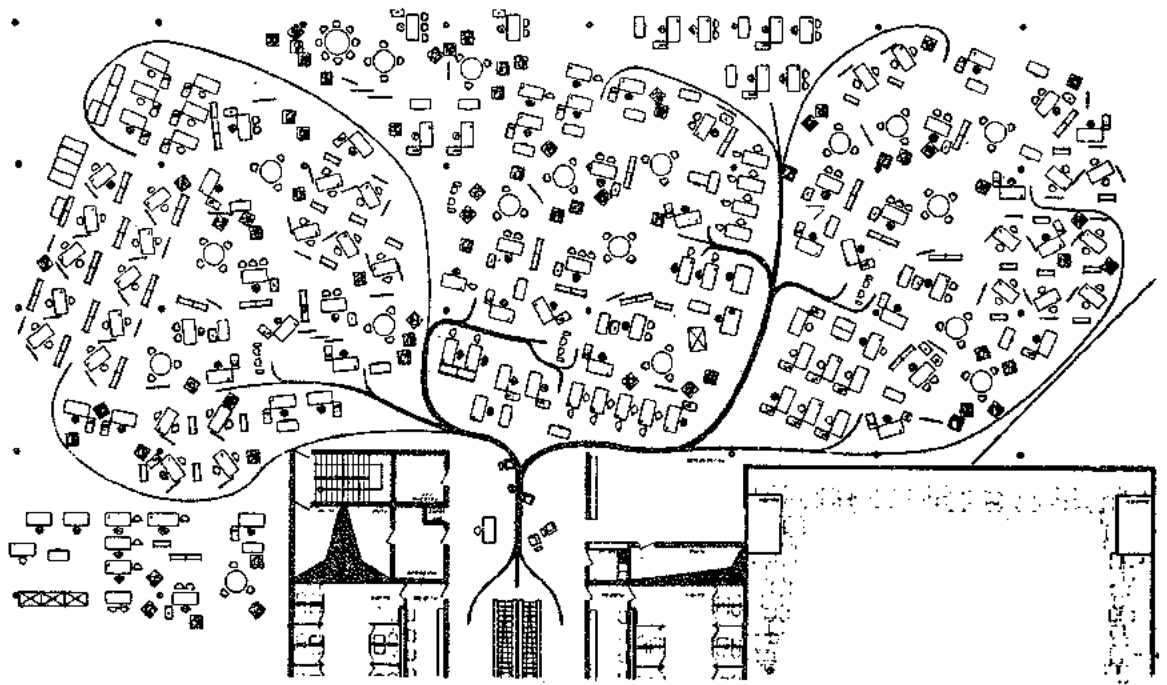


楕圓形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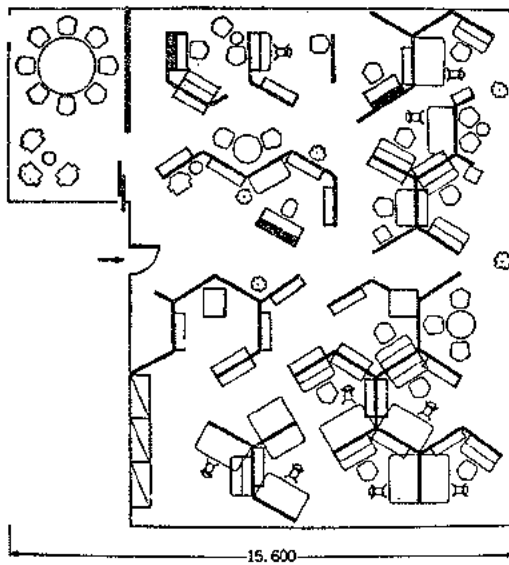
(그림 11) 配置 (lay out) 그리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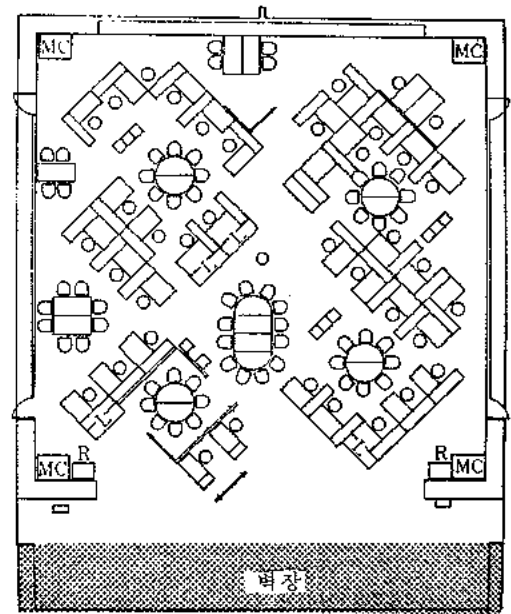
(그림 12) 家具 시스템중 작업 클러스터 (clusters)의 예
(8) 대규모會議에 쓰인다. (7) 다목적용의會議 스페이스
(Schnelle)과 Wankum의「Architekt and Organisator」에서



(그림 13) 典型的인 랜드스케이프 事務所 平面例 화살표인 線은 動線의 흐름과 畚을 나타낸 것임.



(그림 14) 6角型의 그리드를 사용한 配置
(JEN사무소/시카고) 「Action office 2」하만 빌러 쪽에서



(그림 15) 事務所 配置의 독특한 例

나 混亂을 가져오기 때문에 比較的 整然한 方式이 最近 開發되어 이것에 대한 反感을 鮮蘇시켜 주고 있다. (그림 14, 15)

基本規則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은 通路나 出入口(化粧室, 事務所 休憩室등의 출입구도 포함)가 視界에서 벗어나야 한다. 視界遮蔽物(스크린, 樹木)이 우선적으로 通路를 區劃하게 하는 機能을 同時에 充足시킨다.

② 窓에서 6m 幅의 外周는 빛이 왼쪽에서 들어와야

중다. 事務機械를 使用하는 作業場에는 考慮치 않아도 되며, 빛의 方向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③ 作業場所는 남에게 妨害가 되지 않고 通路에 이를 수 있게 配置되어야 한다. 事務員들이 애써 나가기 보다는 손쉽게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一定 空間割當이 3m²로 증가될때 90cm로 늘어난다.

④ 冊床이 한사람 뒤에 또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70cm의 간격을 維持해야 한다. 이것은 一定 空間割當이 3m²로 증가될때 90cm로 늘어난다.

⑤ 會議場所 管理課는 作業空間과 騒音의 震源地로 부터 4.5m~9m의 間隔을 두어야 한다. 이 距離는 騒音 이 적을수록 좁힐 수 있다.

⑥ 管理者의 作業場에의 접근은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이 正面이나 왼쪽, 오른쪽 비스듬히 接近할 수 있도록 配置되어야 한다.

⑦ 係나 課는 視覺의으로 認知될 수 있어야 하며, 한 방향으로 面해 있어야 한다.

⑧ 主通路는 2m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普通通路는 1m이상 係내의 通路는 70cm이상 이어야 한다. 主通過路에 의한 길은 出入口의 位置, 課간의 区劃에 의해 결정되며 스크린이나 樹木으로 方向이 引導된다. 다른 通過路는 係간의 区劃에 의해 支配된다.

⑨ 事務員 休息室의 家具는 使用者가 가장 便利하도록 配列되어야 한다.

⑩ 特殊 作業空間은 세심한 디자인을 必要로 한다. 空間이 完全히 막하지 않으며 經管陣들의 視角保護나 對話가 다른 곳에 들리지 않도록 企圖되어야 한다.

⑪ 作業場所는 같은 職位의 事務員간의 作業의 흐름과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最優先으로 하여 디자인 되어진다. 사람별로 標準 作業空間이 考慮되어야 한다. 또한 集團의 識別이 容易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機械가 騒音으로 因하여 妨害가 되어 진다면 隔離시켜야 한다.

⑬ 家具에 대한 要求事項 調査는 각 個人이 그가 必要로 하는 家具와 備品을 소유했다고 保証할 수 있도록 세밀히 調査되어야 한다.

⑭ 칸막이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音響 스크린일때 家具들로 간주되며 때때로 黒판이나 핀 보오드(pin board)와 같은 附帶使用物도 設置된다. 人爲의인 室을 만드는 데는 사용되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⑮ 리셉션 場所에는 充分한 空間이 주어져야 하며, 訪向客들을 이 環境에 適応시키기 위해 事務室을 구경하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⑯ 職員들이 누구나 休食場所에 가기 위해서는 30m이상을 걸어서는 안된다. 휴식장소는 氣分轉換을 할 수 있는 施設이 提供되어야 하며, 可能하면 싱크대, 冷藏庫 그리고 茶藏을 設置하는 것이 좋다.

音響의 問題와 죽은듯한 感覺을 가져 올 수 있다. 重役과 上級 管理者의 地域은 일반적으로 地位의 理由에서 密度가 낮으며 어떤 감춰진 機能的 要求에도 対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組織에 따라 作業場이 混在된 것이 크게 달라지므로 한 사람의 理想的인 平均密度에 到達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다음의 (표 3)은 最近의 實例에 의한 理想的인 等級의 密度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랜드스케이프 事務所의 1人占有面積

計 劃 名	1人当面積 (m ²)
Buch und Ton	12 (125)
International Harvester	13 (136)
British Petroleum	13 (137)
Dail Financial corp	13 (137)
Port of New York Authority	13.5 (145)
Corning Glass	14 (151)
Ford Motor Co	14.5 (157)
Du Pont (test space)	15 (160)
Kodak (1968)	16.5 (174)
Krupp	18.5 (195)
Osram	21.5 (227)
Oronstein - koppel	22 (237)
平 均	14 m ²

※ () 안은 Sq ft임

所要面積과 經費는 全体密度의 平均에서 擇하는 것보다 각 作業場에 따른 平均面積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은 詳細나 다음과 같은 代表的인 等級의 室面積 (표 4)에서 選擇에 의해서 要求하는 作業場의 計劃이 行해질 수 있다.

(표 4) 室에 따른 平均面積

作業場의 型	面積範圍 m ² (Sq ft)
最 高 重 役 室	23~42m ² (250~450)
重 役 室	19~32 (200~350)
管 理 人 室(課長)	9.5~24 (100~250)
監 督 者	9.5~14 (100~150)
엔지니어 / 프로그래머	7.5~14 (80~150)
일 반 事 務 職 員	5~8.5 (55~ 90)
書 記	4.7~7.5 (50~ 80)
重 役 秘 書	7.5~14 (80~150)

3. 計劃基準의 分析

가. 密度와 面積算定

事務所의 性格, 価格, 效率의 樹立에 있어서 事務員 1人当의 占有面積의 總計는 가장 重要한 要素이다. 密度가 너무 높으면 過密의 問題가 있으며, 너무 낮으면

通路에 許容되는 面積은 이것의 約 25%이며, 1人当 3.3m² (35 Sq ft)가 加算되어야 하며 기타 家具가 있는 경우는 각각 파일 캐비닛은 1.9m² (20 Sq ft), 옷장 (12人用 기준) 2.4m² (25 Sq ft), 소규모 會議 面積은 9.5m² (100Sq ft)를 人員數대로 加算하여야 한다.

式來式 平面과 오피스 랜스케이팅을 美國政府의 2 機關에서 關心을 갖고 樹立한 標準値는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美國政府의 等級에 따른 標準値 (m²)

等 級	在 來 式		랜스케이프	
	일반조달본부(GS)	勞 働 省	勞 働 省	
GS18과 A이상	46 (500)	56 (600)	41 (440)	
GS18과 B이상	37 (400)	39~44 (425~475)	28~38 (306~410)	
GS 16~18	28 (300)	28 (300)	23 (244)	
GS 14~15 ¹⁾	23 (250)	23 (250)	18 (192)	
GS 14~15	14 (150)	14 (150)	11 (120)	
GS 12~13 ¹⁾	11.4 (150)	14 (150)	7.9 (85)	
GS 12~13	9.3 (100)	9.3 (100)	5.9 (63)	
GS 7~11 ¹⁾	7~9.3 (75~100)	9.3 (100)	5~9.8 (54~105)	
GS 7~11	7 (75)	7 (75)	4.2~5.9 (45~63)	
GS 1~6	5.6 (60)	7 (75)	4.2~5.9 (45~63)	

(註) (1)은 감독적인 확실성을 나타낸것임. 통로는 어느 경우나 포함되지 않음. ()안은 Sqft.

美國 一般調達本部(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스페이스計劃과 配置를 위한 案內에 의하면 面積의 標準値는 각각의 市民 서비스에 따라 GS1에서 GS18까지의 等級으로 区分된다. 勞働省의 標準値는 같은 等級인데도 약간 다르게 策定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오피스 랜스케이프 研究의 比較의 目的으로 引用하였다.

面積算定에 있어서 特殊施設에 대한 標準面積은 (표 6) 과 같다.

(표 6) 特殊 施設에 대한 標準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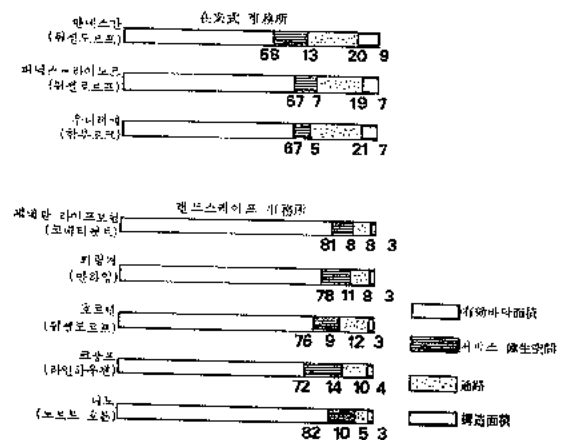
시 설 명	표 준 면 적
층별로비(층별리셉션)가 요	10.75~15.60m ²
구원대 빌딩주층로비(주층	37.00~70.00m ²
의 리셉션)스위치의 보드룸	0.75m ² ~1.4m ² (좌석당)
카페테리아 1식당 會議	10명까지 1人當 1.58m ²
및 미팅룸.	26명까지 1人當 1.39m ²
	25명까지 1人當 1.30m ²

나. 計劃의 利点

① 空間의 節約이 可能하다. : 事務室의 效率은 平面의 因子인 建物바닥面積에 대한 純粹有效面積에 따라서 測定된다. 有效率이 높으면 作業場이 좀더 經濟인 建物이 된다. 오피스 빌딩의 有效率은 低層일때 80~85%, 中層規模일때 65~75%이며 一般的인 高層의 타워型 빌딩은 55~65%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림 16)과 같이 在來式 事務室은 有效率이 58~67% 인데 비해서 랜스케이프 事務室들은 72~82%에 이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明白한 理由는 在來式 事務室들과 달리 自然光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에 建物에 구애를 받

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6) 有效바닥 面積 比較

② 變化하는 作業패턴에 따라 控制이 可能하며 融通性이 있다. : 作業의 흐름, 団体活動, 地位表示등의 要求條件에 適當하며 아무 것에도 制限받지 않는 可變性이 있는 設計가 可能하다. 또한 事務室을 職制나 機構의 變化, 職員의 增減등에 対応하여 새로운 資事事項에 맞도록 신속하게 變更할 수 있으며 經濟的이다.

③ 오피스 內에서 보다 上쾌한 人間關係나 道德性을 確立하고 作業의 努力向上에 도움을 준다. : 社会心理学에 의 많은 研究가 오피스 랜스케이프의 發展에 기여해 왔으며, 作業條件에 대한 改善은 技術分野와의 協同体制속에서 可能하게 된다.

④ 施設費와 維持費는 在來式 計劃보다 상당히 經濟的이다. 이것에 대한 比較는 다음과 같다. (표 7) 内部 施設經費는 在來式에 比해서 16.98%, 年間維持費는 48.31%, 年間交替費는 16.44%나 輕減된다.

事務室의 密度에 따라 年間 施設費가 달라지며 5年間 10年間을 基準해서 본 年間 1人當 經費는 (표 8)과 같다. 그것은 38.60%에서 48.56% 정도가 輕減된다.

(표 7) 施設費와 維持費

項 目	在 來 式	랜스케이프	比較(경감 %)
内部施設經費 (내부바닥, 家具, 칸막이, 블라인드)	\$4.18/sq ft	3.47/sq ft	0.71(16.98%)
年間維持費 (再配置, 樹木손질)	0.89/sq ft	0.46/sq ft	0.43(48.31%)
年間交替費 (바닥마감, 칸막이등등)	0.152/sq ft	0.127/sq ft	0.025(16.44%)

(표 8) 年間 施設費 (1人當)

基準	在 來 式	랜즈스케이프	比較(경감 %)
5年기준	\$ 281.70	\$ 172.94	108.76 (38.60 %)
10年기준	219.00	112.65	106.35 (48.56 %)

다. 問題點 및 對策

問題點은 첫째, 칸막이의 撤去로 騒音과 프라이버시가 缺如된 것이며 둘째는 大型家具등의 소리를 反響시키는 要素를 除去해야 한다. 이에 對한 對策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닥을 카펫으로 完全히 메꾸거나 天井에 防音裝置를 하는 등의 配慮가 必要하다.
- ② 騒音을 일으키는 事務用 機器는 日常的인 作業場에서 隔離된 位置로 移動된다.
- ③ 常設 파일도 떨어진 場所에 設置하고 계속 必要한 것만 小型에 넣고 빼기 쉬운 파일등을 利用하여 가까운 곳에서 使用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V. 結 論

오피스 랜즈스케이핑은 組織的인 아이디어에 親密하게 되어진 特有한 디자인으로서 누구나 組織的인 指導의 立

場이나 反對의 立場을 포함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接近 할 수 없다. 建築家와 建築主 그리고 室内디자이너, 技術分野 專門家가 同共參與해서 하나의 팀 프랜닝을 해야 한다. 建築家は 이러한 것을 主導하는 사람으로서 概念을 明確하게 把握하고, 얻어지는 利點과 特徵을 고려하여 하나의 計劃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1) 計劃基準의 分析 結果

事務所의 密度는 1人當 12m²에서 22m²에 이르고 있으나 平均하여 14m²이다. 通路 所要面積은 이것의 약 25%에 해당하며 加算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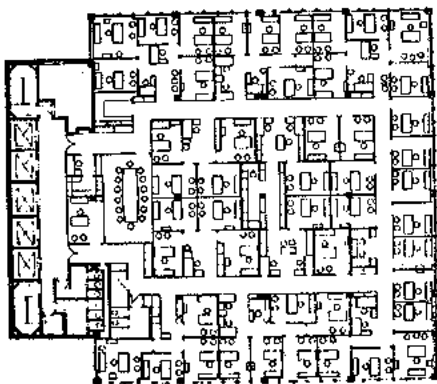
職級에 따른 1人當 占有面積은 이것의 약 25%에 해당하며

職級에 따른 1人當 占有面積은 5m²에서 42m²에 이르는 広範圍한 分布를 보이고 있다. 面積算定은 職員의 數와 職級에 따라 하는 것이 實際的이며 家具등의 面積은 파일 캐비닛 1.9m², 옷장 2.4m², 소나무(會議室은 1人當 9.5m²정도 加算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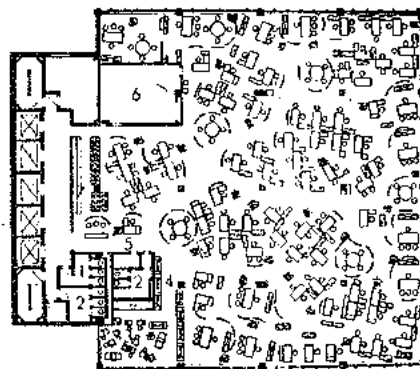
(2) 計劃의 利點은

① 空間의 節約이며 有効率을 基準으로 할때 在來式이 58~67%인데 反하여 72~82%에 이르고 있으므로 約 15%정도가 節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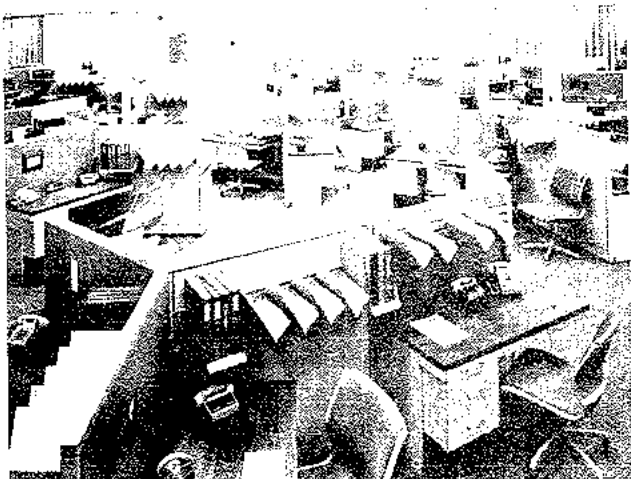
② 變化하는 作業패턴에 따라 콘트롤이 可能하며 融通性이 있으므로 새로운 要求事項에 맞도록 신속하게 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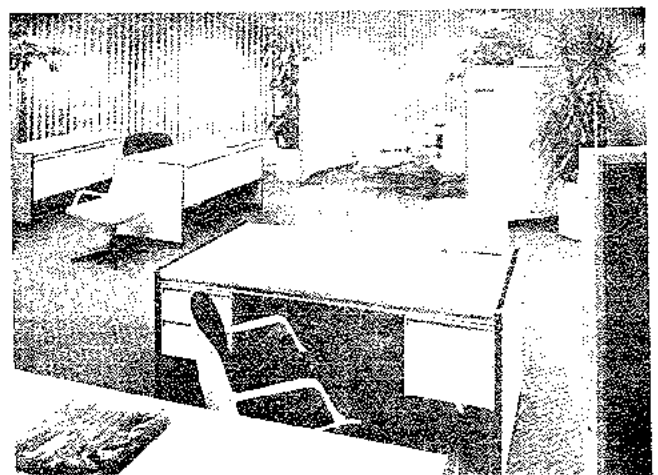
(그림 17)
뒤퐁 (Du Pont)社 實驗室의 在來式의 事務室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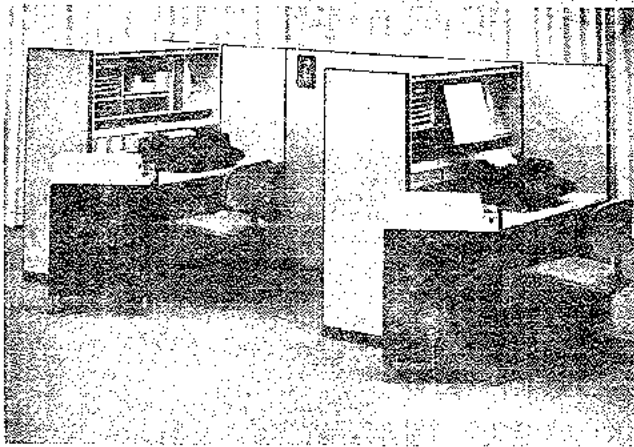
(그림 18)
오피스 랜즈스케이핑에 의한 配置의 比較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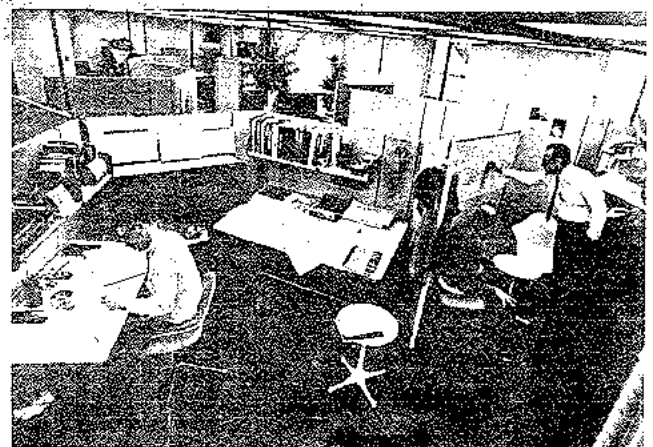
(사진 2) 허만 빌러한의 「액션오피스2」시스템의 例로 부분적인 랜즈스케이프에 잘 적응된다.



(사진 3) 오피스 랜즈스케이프를 위한 「스틸케이스」(steel case)시스템 가구의 例



(사진 4) 스틸케이스 9,000 시스템으로 특수용도의 작업실에 CRT를 위한것



(사진 5) 스틸케이스 시스템으로 판넬을 사용하여 그것에 딸린 家具와 선반으로 구성된 예

할 수 있다.

③ 오피스 내에서 보다 상쾌한 人間關係나 모랄을 確立하고 作業의 能率向上에 도움을 준다.

④ 施設費와 維持費는 在來式을 基準할때 内部施設費는 19.98%, 年間維持費는 48.31%, 年間交替費는 16.44%의 輕減을 가져옴으로 상당히 經濟的이다.

(3) 問題點은 칸막이의 撤去에 따른 騒音과 프라이버시의 缺如와 大型家具등이 소리를 反響시키는 要素이다.

(4) 이것의 對策은 바닥을 카펫으로 完全히 메꾸거나天井에 防音裝置를 하고, 騒音을 일으키는 事務用 機器를

日常的인 作業場에서 隔離된 位置로 移動한다. 또한 反響要素가 되는 大型 파일은 떨어진 場所에 設置하고, 필요한 것만 小型에 凝고 가까운 곳에 둔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얻어지는 많은 利點과 技術的

考慮와 合一된 바탕위에서 建築디자인의 アプローチ로 含蓄性이 높은 空間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室内디자인 領域뿐만 아니라 環境의 質을 높이는 方向에서 우리나라에

서도 우리에게 알맞는 시스템으로 開發시키는 研究가 더욱 必要하다.

본 연구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利點과 問題點을 調査하고, 그것의 對策을 提議한 것이다. 앞으로는 實地 調査를 進めて, 實證을 得을 必要하다.

(38페이지의 連續)

III. 結 論

高層住宅의 단점을 해소하면서 單獨住宅이 갖는 장점을 갖추고 集團住宅 형식을 띠는 聯立住宅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연립주택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정되어 인동간격에 따른 적합한 배치 형식을 연구하여 物理的인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인동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호당 소요대지면적을 남북으로 긴형, 정방형, 동서로 긴형의 순으로 소요대지면적이 커지고 호수밀도는 반대의 순서가 된다.

따라서 동일한 단위면적에서 토지의 이용율을 최대화하려면 單位平面形이 南北으로 긴 것이 가장 유리하고, 동서로 긴 것이 가장 불리하다.

② 단위면적과 인동간격이 동일한 경우 호당 소요대지

면적은 2층연립형이 1층연립형보다 적고 호당밀도는 2층연립형이 1층연립형보다 크다. 따라서 단위면적화 인동간격이 동일한 경우 토지 이용율을 높이려면 2층연립형이 1층연립형보다 유리하다.

③ 단위면적이 동일하고 인동간격이 1.25H와 2.0일 경우 호수밀도와 호당 소요대지면적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율이 가장 좋은 것은 1.25H의 2층연립형이 가장 좋고, 2.0의 2층연립형, 1.25H의 1층연립형의 순으로 2.0H의 1층연립형이 가장 불리하다.

④ 현행법규에 의한 1.25H의 인동간격을 갖는 1층연립형을 2.0H의 인동간격과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면 2층연립형으로 하면 된다.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22m의 인동간격을 취했을 경우 우리나라 연립주택 실정에는 토지이용상 적용이 곤란하다. 인동간격이 22m일 경우에는 1.25H의 약 3배 2.0H의 약 2.5배 정도로 토지이용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聯立住宅의 型式과 配置計劃

卞 鍾 煥

(三星建築代表)

I. 序 論

第1節 研究目的

都市内の集團住宅의 出現은 生活의 變遷에 따른 都市化의 대표적 産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集團住宅은 고대 로마에서 발생하여 現在에는 聯立住宅과 아파트로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人口의 都市集中, 핵가족화에 의한 家口의 文化現象 등으로 都市는 과밀화되어 集團住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친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아파트 위주로 발전되었고 聯立住宅은 대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密集하게 居住한다는 잘못된 認識이 심어져 왔다.

그러나 高層住居가 갖는 여러 社會心理의 短點과 흠에 彌補하고자 하는 人間本연의 心理的인 面에서 低層의 必要性은 尠절하다. 특히 高層住居가 갖는 長點을 갖추고 集團住宅의 形式을 떠는 聯立住宅은 앞으로 必然的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은 現在까지 우리나라 서울지방에 建設된 既存 聯立住宅의 現況을 파악하고 그동안 聯立住宅이 보급되지 않았던 여러 問題점들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聯立住宅 配置計劃에 중요한 人자들인 일조, 조망, 시각적 프라이버시 밀도 등을 研究하므로써 우리나라의 聯立住宅 配置計劃에서 一般的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線狀聯立住宅을 대상으로 적정배치와 最小 및 最大 許容密度를 규명한 것이다.

第2節 研究團圓 및 方法

聯立住宅의 園地計劃에는 密度計劃 環境計劃 配置計劃 등이 綜合적으로 分析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本論文은 이러한 聯立住宅의 園地計劃要素들을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研究하였다.

(1) 聯立住宅의 一般的 特性을 單獨住宅 및 아파트와 比較하고 聯立形式을 線狀 格字, 傾斜地 型으로 區分하여 우리나라 聯立住宅의 발달과정 및 現況을 개괄적으로 考察한다.

(2) 聯立住宅의 配置計劃에 미치는 影響을 일인자들인 일조, 조망, 시각적 프라이버시, 밀도등에 관해 문헌상으

로 考察한다.

(3) 文헌고찰을 중심으로 現行法規에 의한 1.25H의 인 등간격, 일조를 위한 2.0H,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위한 22m의 인등간격을 예로 주거밀도의 最小 및 最大 기준을 산정한다.

II. 聯立住宅의 形式

第1節 聯立住宅의 特性

聯立住宅은 計劃方法에 따라 獨立住宅과 비등한 프라이버시와 변화있는 외관을 얻을 수 있으며 私有의 부지에 獨立된 個人庭園을 가질 수 있고 單獨住宅이 갖는 垡地境界線과 建物の 法規上 거리를 없애므로써 公共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低層이 갖는 社會的 親交와 활동의 기회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土地 利用率을 높일 수 있고 地形의 條件에 따라 多樣한 配置形式과 豊富한 視覺의 變化를 유도할 수 있는 등 單獨住宅과 高層住居의 長點을 보완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集合住宅이란 計劃的으로 住宅을 集合시켜 세운 것이다. 單獨住宅 자체는 集合住宅이 아니지만 일단 집단적으로 건설되면 이를 集合住宅이라 볼 수 있다.

多數의 住宅을 옆으로 연속하여 一棟으로 세운 것을 聯立住宅(Terrace house, row house), 옆으로 세로로 겹쳐 세운 것을 공동주택(Apartment house)이라 한다.

第2節 聯立住宅의 形式

2-1 線狀聯立(Linear house)

(1) 一字形 線狀聯立

① Row houses의 線狀聯立

a) 로우하우스(Row house)

b) 더블 로우 하우스(Doubled row house)

c) 플레이트형 로우하우스(Combination of row house with 8 lates)

c) 세트백형 로우하우스(Set back type row houses)

②파티오하우스(Patio house)의 線狀聯立

- (2) 체인형 線狀聯立 (Chain type houses)
 (3) 로우하우스와 워크업아파트 (Walk-up-apart) 혼합형

2-2 格字聯立 (Lattice houses)

- (1) 규칙형 格字聯立
 (2) 불규칙형 格字聯立

2-3 傾斜地 聯立

수직적 平面의인 聯立의 長點을 傾斜地 聯立을 택하므로서 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지의 配置는 平地와는 달리 向에 따른 日照, 通風, 채광조건이 까다로와 진다. 一般的으로 남향 경사지가 가장 좋고 北向 경사지가 가장 불리하다. 向에 따른 경사지의 특색을 보면(표 2-2)와 같다.

경사지의 구배는 地形條件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사가 급하면 單位住居가 上下로 포개질 것이고 경사가 완만하면 單位住居 上下에 노출된 土地가 생기게 된다. 전자의 形式을 테라스 하우스 후자의 形式을 힐 사이드 하우스라 한다.

(1) 테라스 하우스 (Terrace ho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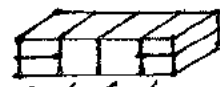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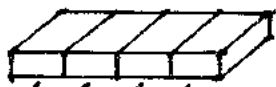
單位住居의 平面形式에 있어서 주로 테라스 하우스형이 많으나 파리오 하우스형도 적절히 응용되기도 한다.

(2) 힐 사이드 하우스 (Hill side ho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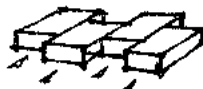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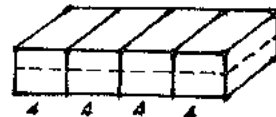
地形條件과 建築家의 창의력에 따라 로우하우스형이나 파리오 하우스형의 單位住居를 병용한다. 경사지 單位住宅形式은 水平地面당 비교해 볼 때 고밀도를 얻을 수 있고 경사지가 급할수록 建物사이의 必要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그림 2-2)참조.

(표 2-2) 경사지방향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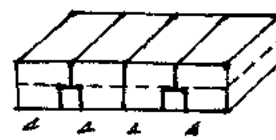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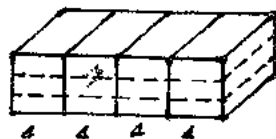
	南向언덕	北向언덕	東向언덕	西向언덕
일 조	4계절 모두 유리	겨울에 아주 불리	보통이며 오전에 강한 햇빛을 받음	여름오후 강한서늘 빛을받음
여름통풍	아주좋다	아주不利하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	아주좋다
겨울통풍	아주좋다	북풍이 露出된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건물의배치및해결	해결이 용이하다	아주불리하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인동간격이 적어도 가능하다	인동간격이 적어도 가능하다	인동간격이 길어지고 기초의 길이가 매립지에 의하여 깊어져 불리할때가 많다.	向과 건물배열을 주의깊게 해결해야 한다.	左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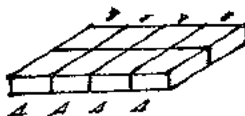
Flat Row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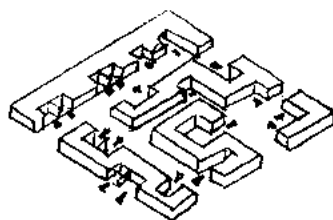
Set back Row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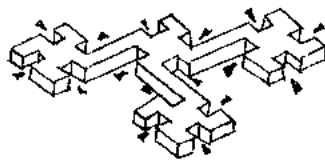
Row Houses



Doubled Row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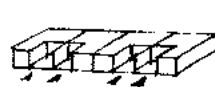


규칙형 격자 연립



불규칙형 격자 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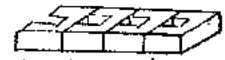
격자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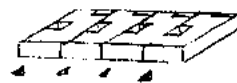
L형



D형



U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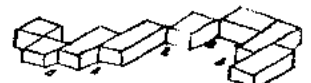


B형

Patio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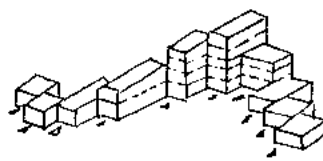


규칙형



불규칙형

Chain형



로우하우스와 워크업아파트

(그림 2-2) 연립주택의 형식

第3節 우리나라 聯立住宅 現況

우리나라에서의 聯立住宅의 역사는 한일합병 후 日本人들이 우리나라에 住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데 그 목적은 鐵道建設에 종사하는 勞務者의 宿舍所와 大東亞戰爭(1941~1945) 당시 군수공장과 무기고를 建立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移住 집단 수용시키기 위한 목적과 기타 日本 産業體에 종사하는 職員들의 住居를 위한 形式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形式의 선택요인은 주로 經濟性에 기인된다.

이제에는 2, 4, 6 정도가 一直線으로 聯結된 긴 住宅으로 이러한 聯立住宅을 長室(나가야)이라 불렀다.

해방후 1954年 서울시가 東大門區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에 건립한 2층의 4戶 聯立 住宅團地는 군대막사같은 단조로운 配置形式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주차시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聯立住宅은 같은 時代에 구장위동 신당동 일대에서도 볼 수 있다.

1955年 한미재단 후원으로 設計된 西大門區 행촌동 聯立住宅은 순수 一字形 聯立으로 총 52세대의 비교적 現代的 감각으로 되어 있다.

1956年 베더켈센터의 外國人 宿所로 建立된 체인형 聯立住宅이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성북구 미아리에는 韓國 처음으로 傾斜地 聯立住宅을 建立되었다.

1970년에는 서울시가 철거민을 위한 망원동에 30가구의 聯立住宅을 建立하였고 1975년에는 주택공사가 永洞에 여러 聯立住宅을 建立하였다. 1976年 4月에는 서울시가 성산동에 플랫형 2층 4호 聯立을 建立하였고, 1977년에는 화곡동에 주택공사에서 建立한 순수 一字形과 체인形の 聯立住宅이 있다. 이것은 한세대가 25坪으로 181 세대의 韓國 최초의 大規模 聯立住宅 단지이다.

現在에도 聯立住宅은 하나의 團地로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집장사에 의해 小規模 垵地에 작은 規模로 많이 建設되고 있다. 이러한 聯立住宅들은 외관과 配置方法들이 단조로우며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여 住居環境의 質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聯立住宅에 對한 認識을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聯立住宅은 規模는 작으나 構造가 아파트와 비슷해 生活하기가 편리하고 공사비가 적게 들며 분양가격이 싼 利點 때문에 庶民들 사이에 2年前부터 급격히 인기가 올라 서울의 경우 77년에는 4,255가구가 建築되었으며 78년에는 23배에 해당하는 14,618가구가, 79년에는 이와 비슷한 14,258가구가 許可되었고 올들어 4月末까지만도 3,341 가구의 許可가 나갔다.

그러나 일부 業者들은 建築費를 줄이기 위해 許可당시의 設計를 어기고 값싼 불량자재와 제반규정을 이행치 않고 建立하여 住居環境을 불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50

가구 미만의 聯立住宅은 누구나 建築할 수 있는 現在의 建築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자들의 大部分이 전세방을 전전하다 모처럼 내집을 마련한 庶民層이어서 악덕입자로 인한 이들의 피해는 住居環境의 인 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특이할 사항은 聯立住宅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住宅建設業者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建築法上 地下室은 居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地下室을 住居用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하여 住居環境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第4節 기존 聯立住宅의 聯立形式 및 配置形式

우리나라에 建設된 대부분의 聯立住宅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大建設會社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個人 建設業者에 의해 소규모로 집장사의 형태로 지어져 왔다.

그 결과 垵地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法規가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각종 기준을 맞추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聯立住宅은 聯立形式이 순수 一字型 線狀聯立이며 配置形式은 平行 配置形이다. 대부분의 聯立住宅은 인동간격이 협소하여 일조조건이 나쁘며 벽체의 公有와 소음원에 대한 소음문제도 심각하고 단위주거마다의 프라이버시 유지가 매우 나쁘다.

또한 前庭과 後庭의 분리도 垵地利用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車道와 步行路가 분리되지 못하여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며 오픈 스페이스도 부족하여 근린교제가 일어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현재에도 많은 聯立住宅들이 建設中에 있으나 大部分 一字型 線狀聯立에 平行 配置 形態의 단조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設置計劃

聯立住宅의 配置計劃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들은 일조, 시각적 프라이버시, 밀도 등 다양하다. 이들 要素들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에 따른 밀도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 要素들을 考勵하여 最大 및 最小 住居密度에 對한 標準을 算定한다.

第1節 日照(Sun Light)

日照에 대한 서구의 기준들을 보면 英國은 어떤 특정날에 室内에 주광이 반드시 射入되는 최소시간(minimum period)을 절대적인 관점으로 규정하였다. 비덜란드는 기준을 “알맞은(moderate)”과 “좋은(good)” 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스웨덴은 各室로 射入되는 “평균치(average)”

를 기초로 하도록 하였다.

英國은日照에 대하여 1945년에 B. S. code를 최초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주광의 중요한窓중 반드시 하나가 年中 10個月은 하루중 어느 時間이라도 적어도 1時間은 射入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1月 21일부터 11月 22日 사이에 적어도 하루에 한시간씩은日照가 이루어지도록 된 것이다.

1-1 晝光의 認識

사람들은太陽의 직사광인晝光을 좋아한다는 것이 Manning (1965)의 研究에서 밝혀졌다. 맨체스터의 CIS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작업장소에晝光이 어느 정도의 조명역활을 하는가를 조사하였더니 창원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주광에 대한 요구가 강함을 나타내었다.

즉 창에서 50~70 feet 떨어진 사람들은 주광이 전체 조명의 27% 역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때의 주광의 조명역활은 3%였다. 창에서 16~19 feet 떨어진 사람들은 53% (실제 44%) 창근처에 앉은 사람들은 75% (실제 80%)로 느끼고 있다.

(표 3-1) 사람들이 느끼는 주광의 조명역할

위 치	사람들이 느끼는 전체에 대한 주광의 역할 (%)	실제로 전체조명에 대한 주광의 역할
창으로부터 50~75ft	27	3
" " 16~19ft	53	44
" " 12ft	55	55
창 근 처	75	80

Bitter (1965)는 주부들의 놀랄만한 비율(70%)이晝光없이 조망이 좋은 방 보다 좋은 조망이 없더라도晝光이 들어오는 房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1-2 日照와 인동간격

一般的으로 建築物의 적정 生活環境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동간격이 결정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들 영향 요소中에서 가장 중요한 要素를 기준으로 정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된다. 보통日照가 가장 큰 영향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목해야 할 것은日照條件이 아주 좋아질 수 없는 低層의 聯立住宅일 경우 바짝 접근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低層建築物의 配置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영향도 1위로 보고 인동간격을 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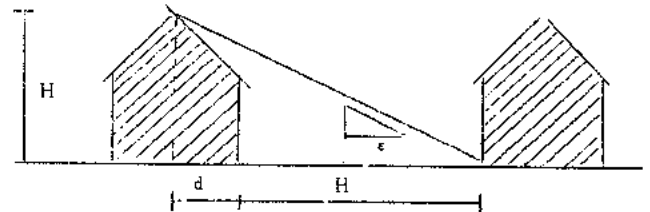
이러한 配置의 기본 要件中 가장 기본 問題인日照條件을 기준으로 인동간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建物은 平面配置로 되어 있고 동지의 하오를 포함하여 4時間의日照를 본다.

(표 3-2) 인동간격 영향요소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
前後	일조, 조망 및 분위기, 프라이버시, 접근로(Access Driveway), 섯백(Set-back)에 따른 여유, 주차장, 녹, 소음, 연소	일조, 조망 및 분위기, 프라이버시, 접근로(Access Driveway) 섯백(Set-back)에 따른 여유, 테라스에 따른 연유, 테라스에 따른 연유, 녹지, 소음, 연소	일조, 조망, 통풍, 프라이버시, 섯백(Set-back)에 따른 여유, 테라스에 따른 여유, 녹지, 놀이터, 주차장, 연소 지
左右	차도×2×인도	차도×2×인도	

자료(建設部,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부리시설기준연구, p. 105)

(그림 3-1)에서 보듯이 인동간격을 L, 전면 建物の, 유효높이를 H라 하면,



(그림 3-1) 건물의 높이에 의한 인동간격 관계도

$$L = H - d$$

$$c = \frac{\cos A}{\tan h}$$

A: 건물 방위각 (건물에 대한 태양 광선의 범위)

h: 태양의 高度

그런데 建物이 正南에서 θ角이고, 東 또는 西에 太陽을 경우 $\epsilon = \frac{\cos(\theta - A)}{\tan h}$ 이고 建物이 南向이고 지반이 南北方向이 δ角으로 경사졌을 때는 $\epsilon = \frac{\cos A}{\tan h + \tan \delta \cdot \cos A}$ 이다.

따라서 서울地方(위도: 북위 37°34')의 동지때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일조를 얻기 위한 인동간격은 $L = \epsilon H = \frac{\cos A}{\tan h} \cdot H = \frac{\cos 150^\circ 11'}{\tan 22^\circ 44'} = 2.042 H$

그러므로 서울地方에서 住居環境에 쾌적한 4時間의日照를 얻으려면 前面 建物높이의 2배에 달하는 인동간격이 있으면 된다.

第2節 프라이버시(Privacy)

2-1 프라이버시의 정의

人間的 정신건강은 私生活이 보호되어지는 기회를 향유할때 유지된다. 그러나 現代의 都市人들은 그 生活에 대부분을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공간이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의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더욱이 單獨住宅에 居住하는 사람들보다도 연립주택의 居住者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현저하다.

이러한 침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된다.

○난입: 영역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
 ○침입: 영역의 境界內에 物理적으로 들어오는 것
 ○오염: 諸特性과 用途에 關係해서 영역을 攪亂하는 것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였는데 現在 一般的으로 많이 통용되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Right of privacy Bill (1970): 個人이 자기자신의 집, 家族, 關係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事業에 對한 強요로부터 保護받을 권리

(2) Rapoport (1970): 선택할 기회가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상태

(3) Margaret Willis (1963): 프라이버시에는 세계의 카테고리(카테고리)가 있는데 첫째, 家庭內에서의 프라이버시 둘째,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프라이버시 셋째, 건너다 보이는 것(over looking)에 따른 프라이버시가 있다.

2-2 프라이버시의 要素

Thomas Markus는 視覺的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① 프라이버시 용어 정의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카테고리 분류하고
- ② 이 카테고리를 要素로 分析하여
- ③ 프라이버시 거리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Markus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건너다 보는 것으로 인한 視覺的 프라이버시
- ② 他人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 ③ 外部世界와의 접촉
- ④ 視覺的인 行動

이 중 ①은 視覺的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절대적인 것이고 ②, ③, ④는 ①의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2-3 프라이버시의 거리

視覺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프라이버시 거리(privacy distance)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거리를 제정하자는 요구는 1963년 스코틀랜드에서 논의 되었다.

이때 제정된 프라이버시 거리는 6ft에서 60ft에 이르기까지 창사이의 각도에 따라 6, 10, 14, 19, 29, 42, 60식으로 거의 log比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준다.

Tutor Walters Committee (1918)를 기초로 제정한 英國과 웨일즈의 권장치는 집사이에 一般的으로 70ft (21m)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유보다는 겨울철 햇빛의 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Markus (1972)가 각 문헌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권장한 프라이버시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표 3-4) 프라이버시 거리의 기준 (20)

항 목	프라이버시 거리
개인 정원의 길이	9 m (30ft)
창과 보도와의 거리	7.5m (25ft)
창과 보행로와의 거리	4.5m (15ft)
마주보는 창사이의 거리	30 m (100ft)
실내음이 전달되지 않기 위한 인동간격	9~12m (30~40ft)
소음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건물의 인접창사이거리	1.8~3 m (6~10ft)

Kevin Lynch (1972)는 視覺적으로 私生活를 침해할 정도로 접근하여 서로 창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유쾌한 것으로 窓과 窓이 22m 이하로 접근된 설계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Markus (1972)는 최소 隣棟象面거리(minimum distance between windows)를 18m로 정하였다. 이것의 산출 근거는 車道폭 7.2m, 步行路 1.8m, 정원길이 3.6m로 보아 $7.2 + (1.8 \times 2) + (3.6 \times 2) = 18m$ 로 산출한 것인데 보통은 70ft (21m) 이상을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第3節 團地의 密度

3-1 住居地域과 密度

都市의 성장에 따라 住居地域은 都市內에서 교외로 확장되고 있다. Burgess의 同心円說에 따르면 都市部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상류주택 지구를 이루며,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하류주택 지구가 많아진다. 이것은 첫째로 기존 住宅地域의 노후화, 密集化로 宅地의 영세화 및 住居環境의 저질화가 초래되는 때문이며, 둘째로 住居用地의 기본적 立地條件은 住居者中 직장에 통근하는 사람이 많을 때 통근시간과 편의를 중요시한 지가에 따르므로 과밀이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밀도는 주거지역내의 諸現象에 영향을 미치므로 밀도로서 생활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으므로 住居環境의 평가와 통제를 위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低密度와 高密度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여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건강, 社會,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高密度 環境은 과밀이나 高層化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따라서 聯立住宅은 적당한 密度로 住宅内外의 生活環境을 조화시켜야 한다.

3-2 住居密度的 概念

(1) 戶數密度(d, 戶/ha)

戶數密度란 住宅戶數를 土地面積으로 나눈 單位土地面積當 住宅戶數를 말한다.

住宅의 平均規模가 分明할 때는 간단히土地와 建物量과의 關係를 나타내며, 人口密度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團地の 規模別 및 住戶形式別 총호수밀도는 (표 3-6)과 같고 공영주택의 戶數 密度는 표(3-7)과 같다.

(표 3-5) 低密度와 高密度의 性格比較

區 分	低密度環境	高密度環境
I. 健康		
1. 給水	오염방지에 좋고 水源 풍부	집단공급시 운반·배관 유리
2. 위생 및 오물	개별적으로 有利·건강 양호	집단수거시는 경제 적
3. 채광, 日射, 空氣 및 소음	有利하나 低層時는 소음	不利하나 寒暑防止에 양호
II. 社会		
1. 私的 개방공간	屋外空間의 多樣한 이용	屋內나 屋上을 共用해야 한
2. 獨立性, 防衛性	독립성에 좋고 방 위 不利	적당한 밀도·設備로 해결
3. 지역시설	비싸고 거리가 멀다	유리하나 過密이면 곤란
III. 技術		
1. 화재 위험	건물은 分離, 消防에 不利	예방비용크고 高層 消防곤란
2. 建築地, 接近	매지의 過大, 接近路 費用	高層化時에 과의의 비용
3. 地盤條件	경량단층의 경우 에 유리	특수공법·배수시설 에 유리
IV. 經濟		
1. 地價, 通勤	外延의이므로 통근에 불리	경제적이나 혼잡이 兪려됨
2. 基本서비스관계	비용이 크고 地域間 차이	高層 高級實物에서는 高價價級建
3. 건축술, 재료, 장비와의 관계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 가능	高級技術을 要할때는 高價

(2) 建蔽率(δ , %)

建蔽率이란 건축면적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건물의 밀집도를 나타내며 각종 建築密度를 算出하는 기초가 된다. 團地の 規模別 및 주택형식별의 총건폐율(표 3-8)과 같으며 層數가 많을수록 주택 1호의 규모가 적을수록 低率임을 알 수 있다.

(3) 容積率(V, %)

容積率이란 건축면적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토지의 高度集約利用의 程度를 나타내며 土地에 對한 建物の 實제의 容量을 가장 精確하게 나타낸다.

團地の 規模別 住戶形式別의 총용적율은 (표 3-9)와 같다.

人口密度 ρ 와 容積率 V와 1人當 바닥면적 f사이의 관계를 $\rho=v/f$ 라 하면 v와 f에 의하여 人口密度 ρ 를정한다.

(4) 人口密度(ρ 人/ha)

標準 總人口密度는 團地面積에 對하여 適正收容人口를

(표 3-6) 住戶形式別 總戶數密度

住 戸 形 式			隣保区	近隣分區	近隣住区	總容積率
集合形式	单元	戸数	(100戸)	(500戸)	(2000戸)	(%)
独立住宅	1	1	16～31	15～28	14～25	
	1	2	26～37	24～38	22～30	
联主住宅	2		60～83	50～65	43～54	
共同住宅	2		76～108	64～85	54～68	43.2～54.5
	3		90～122	74～93	60～73	48.0～58.4
	4		98～130	79～98	64～76	51.2～60.8
	6		110～143	86～105	69～80	55.2～64.0
	8		119～152	92～110	72～83	57.6～66.4
	10		127～159	96～114	75～85	60.0～68.0
	12		133～167	100～118	77～87	61.6～69.6

(표 3-7) 公營住宅의 戶數密度(M. A. U. S. A)

住戶	形式	純戶數密度 (戶/acre)	純戶數密度 (戶/ha)
1층, 2층	獨立住宅	8	19.8
1층	2戶建住宅	14	34.6
1층	連立住宅	15	37.1
2층	連立住宅	24	59.3
2층	共同住宅	36	88.9
3층	共同住宅	50	123.5
4층 이상	共同住宅	50~100	123.5~247.0

(표 3-8) 住戶形式別 總建蔽率(%)

住戶形式					
住戶形式	隣保區	近隣分區	近隣住區		
集合形式	總戶數	(100戶)	(500戶)	(2,000戶)	
獨立住宅	1	10~17	9~16	8~15	
	1	2	15~21	13~19	12~18
聯立住宅	2	17~24	13~20	11~17	
共同住宅	2	22~31	17~25	14~21	
	3	16~24	13~20	10~16	
	4	13~20	10~16	8~13	
	6	10~15	7~12	5~9	
	8	8~12	6~9	4~7	
	10	6~10	5~8	3~6	
	12	5~9	4~7	3~5	

(표 3-9) 住戶形式別 總容積率(%)

住戶形式	隣保區	近隣分區	近隣住區	總人口밀도(人/ha)	
集合形式	總戶數	(500戶)	(500戶)	(2,000戶)	$f_1=20m^2/戶$ $f_2=15m^2/戶$
獨立住宅	1	10~17	9~16	8~15	
	1	2	15~21	13~19	12~18
	2	34~48	26~40	22~34	
	2	44~62	34~50	28~42	140~210 186~280
	3	48~72	37~59	30~48	150~240 200~320
	4	52~78	39~63	31~51	155~255 206~340
	6	57~88	42~69	32~55	160~275 213~366
	8	61~96	44~73	33~58	165~290 220~386
	10	64~101	46~77	34~60	170~300 226~400
	12	67~107	47~80	35~62	175~310 233~413

나타내는 指標이다.

人口密度는 戶數密度에 比例하여 平均層數와 建폐율의 合
수인 容積율에 의해서도 求할 수 있다. 團地의 規模別 住
戶形式別의 總人口密度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住戶別 總人口密度

住戶形式			隣保區	近隣分區	近隣住區
集合住宅	층수	호수	(100戶)	(500戶)	(2,000戶)
独立住宅	1	1	64~124	60~112	56~100
	1	2	108~148	96~152	88~120
聯立住宅	2		240~332	200~260	172~216
	2		304~432	256~340	216~272
共同住宅	3		360~488	296~372	240~272
	4		392~520	316~392	256~302
	6		446~572	344~420	276~320
	8		476~608	368~440	288~322
	10		508~636	384~456	300~340
	12		532~668	400~472	308~348

3-3 適正住居密度

(1) 住居密度의 諸提案

聯立住宅의 物理的 計劃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密度이나 聯立住宅은 開闊 스페이스에 依해 좋은 住
居環境이 左右되므로 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密度가
중요한 問題가 되는 것이다. 여러 學者들이 密度規模에
관한 제안을 보고 適正密度 기준을 설명하려 한다.

① Hans Blumenfeld 提案

1957年 A. S. P. O (The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에서 住居地의 適正密度로 120~600인/ha를 주
장하였다. 이 提案은 아직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Abercrombie 提案

「Great London Plan」을 통해 중심부는 250~375인/ha
그린벨트내는 175~250인/ha 외곽부는 125인/ha 정도를
주장하였다.

③ Golden Lane 提案

충분한 녹지와 開闊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住居
地의 適正密度는 250~375인/ha 정도가 좋다고 주장하였
다.

④ Kevin Lynch 提案

2~10세까지의 아이를 갖은 家口는 50호/ha 이하의 밀
도로 수용되어야 한다. 20戶 이상이 될 때에는 室外空間의
확보와 모든 住居單位에서 綠地에 직접 出入이 곤란하고,
110호/ha의 밀도에서는 사람은 視覺的 沈悶감이나 휴먼
스케일은 상실하게 된다.

200戶/ha에서는 주차, 조경, 레크레이션 空間이 부족
하며 250戶/ha이상에서는 교통에 혼잡을 가져오며 300戶

/ha이상이면 소음의 제거와 프라이버시가 문제되어 生活
環境은 수준이하가 된다

그러나 200戶/ha이상의 密度가 도심부의 특수한 住居
地에는 적용된다고 하였다.

(2) 適正密度

密度에 대한 여러 提案들을 보면 반드시 開闊 스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다. 住居地의 密度와 環境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生活空間속에서 전개되는 공공광장, 가로 공원 등의
開闊 스페이스다.

이러한 住居空間 속에서 우리는 명쾌한 것과 자극 적인
것 및 단조로운 것, 쾌적과 불쾌동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
다.

住宅形式을 密度別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2) 密度別 住宅形式

密 度	住 宅 形 式
低密度 5 ~ 12.5 (戶 / ha)	1~2層의 單獨住宅, 聯立住宅으로 計劃할 수 있는 密度이며 분양주택이 주로 된다.
12.5 ~ 25 (戶 / ha)	2 号, 3 戶 聯立住宅이 주로 된다.
中密度 25 ~ 50 (戶 / ha)	4 号 聯立住宅 Garden APT. 賃貸住宅이 분 양住宅보다 많아진다.
50 ~ 70 (戶 / ha)	2 ~ 3 층의 聯立住宅으로서 地下에 駐車 space를 둔다.
高密度 75 ~ 113 (戶 / ha)	3 ~ 4 층으로 주차 space는 地下에 두며 elevator를 설치한다. 임대住宅이 주로 된다.
113 이상 (戶 / ha)	中高層 APT로서 下部에 人工지반을 조성 하여 廣場과 주차장으로 사용.

다음 표는 밀도와 住居環境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聯立住宅 密度의 한계는 35戶 / acre (87.5戶 / ha) 임
을 알 수 있다.

(표 3-13) 密度別 住居環境의 Level

(單位: 戶/acre)

密度	住 居 環 境 의 Level
15~20	計劃上 바람직한 이상적인 密度이다.
25~28	Land Planning 상 融通性이 감소되고 건축적으로 양호한 計劃을 하기 어렵다.
35	混雜하다.
35~45	美國의 경우 워싱턴 D.C 주변 Project에서는 거의 없다.
45~50	美國의 Texas에 그예가 있으나 混雜하고 住居環 境이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이 密度에 대한 여러 提案이나 住居環境에 따
른 밀도레벨을 볼 때 理想的인 聯立住宅의 적정규모는 이
층으로서 15戶/acre (38戶/ha)가 된다.

第4節 最大 最小 住居密度 規準算出에 對한 考察

住居密度의 規準算出에 影響을 미치는 現行法規, 日照,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最大 및 最小 住居密度에 對한 規準을 算出한다. 여기서 最小라는 것은 現行法規에 따른 $1.25H$ 의 인동간격을 뜻하고 最大라는 것은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22m$ 의 인동간격을 뜻한다. 또 그 중간에 일조를 위한 서울지방 동지 4시간, 일조 $2.0H$ 의 인동간격도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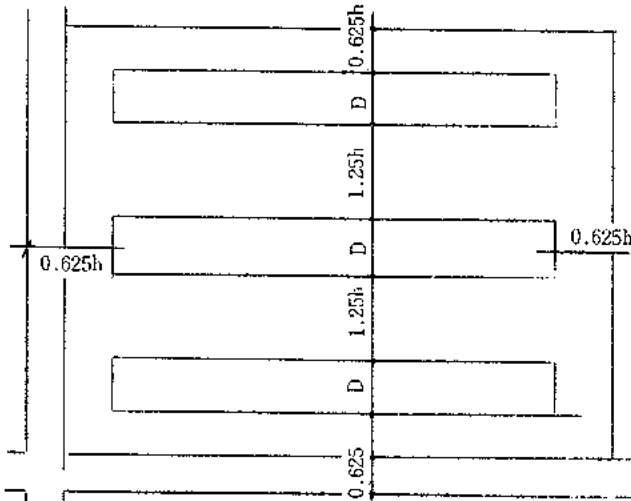
4-1 最小規準으로서 現行法規(住居地域內)

(1) 建築法 施行令

- 施行令 第155條 2項: 건폐율 $5/10 \sim 6/10$ 미만
- 施行令 第159條: 垜地의 최소한도 $90m^2$ 이상
- 施行令 第160條: 용적율 300%
- 施行令 第167條: 日照權 (표-14)

(2) 서울特別市 共同住宅 業務承認 審議基準

- 垜地의 最小面積: 聯立住宅: $2000m^2$ 이상
- 建蔽率: 聯立住宅: 30%
- 容積率: 建物높이의 1.25 배
- 인접垜地와의 거리: 0.625 배 (建物 높이)
- 側面거리: 聯立住宅: $4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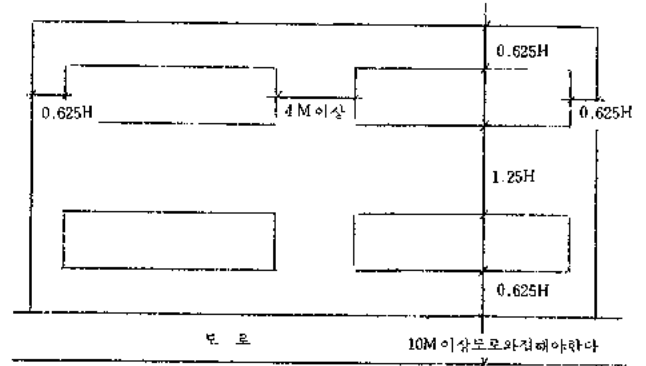
(그림 3-8) 現行法規의 인동간거리

○ 垜地와 道路의 關係: 聯立住宅: $10m$ 이상접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공동주택은 건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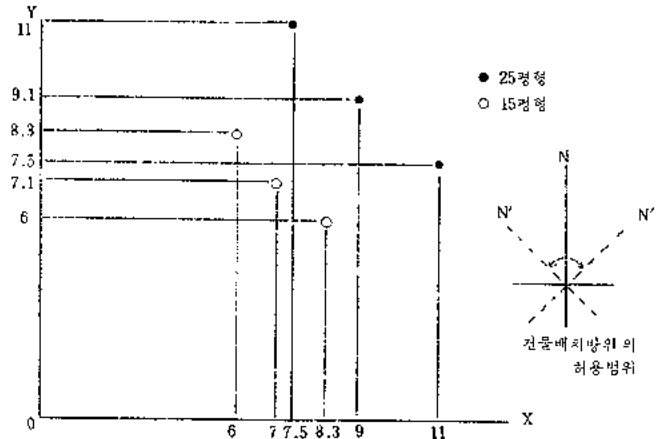
4-2 최대최소 주거밀도 규준산출에 관한 고찰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矩形 住宅平面의 경우만을 고려한다. 건물의 東西長이를 X軸 建物の 南北長이를 Y軸이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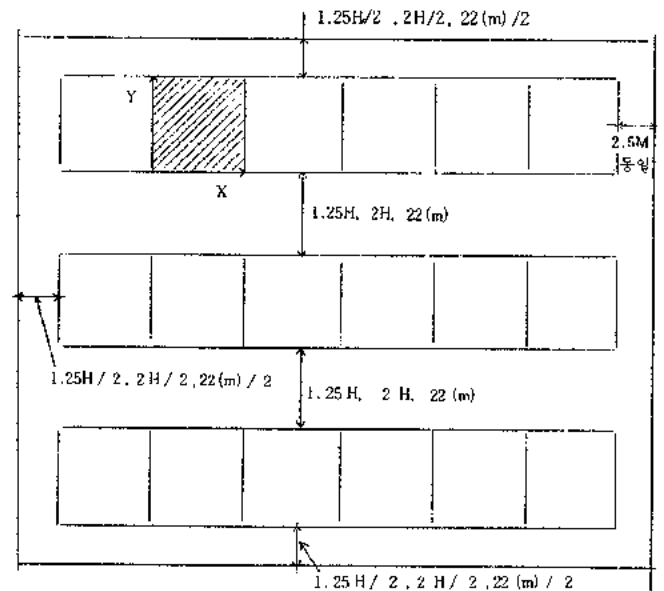
聯立住宅의 戶當 規模를 15坪, 20坪, 25坪 3가지로 보면 X와 Y는 $6 \sim 11m$ 의 범위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림 3-10) 참조 이때 6호 聯立住宅 3棟을 가정하고 건물 높이를 한층의 경우 $3m$ 라 하였다. (표 3-11)



(그림 3-9) 인동거리와 도로조건



(그림 3-10) 단위 평면의 동서 및 남북길이의 범위



(그림 3-11) 6호 연립주택 3동(18세대)의 배치형태 (1 또는 2층의 경우) 소요대지

이러한 가정에서 인동간격을 현행법규에 따른 $1.25H$, 이론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2.0H$, 시각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22m$ 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호수밀도와 단위세대당 소요 대지면적을 비교하였다.

여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 A형은 단위세대의 X, Y, 길이가 같은 경우 B형은 X축 길이보다 Y축 길이가 길 경우, C형은 X축 길이가 Y축 길이보다

긴 경우를 말한다.

① 어떤 規模의 聯立住宅일지라도 단위면적이 동일하면 2.0H의 인동간격을 갖인 것이 1.25H의 인동간격을 갖인 형보다, 인구밀도와 호당 소요대지 면적이 크게 된다.

② 인동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戶當 소요 대지면적을 남북으로 진행 즉 Y축이 긴 B형 보다 X축 Y축이 동일한 형이 더 크며 X축이 긴 C형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단위면적이 동일하고 인동간격이 1.25H와 2H일 때 戶當 소요대지면적을 비교하면 1층 1.25H에서, 1층 2.0H, 2층 1.25 2층 2.0 순으로 커진다.

④ 단일면 이 동일하고 동일한 인동간격일 때의 호당 소요대지 면적은 2층 연립형이 1층 연립형 보다 적다.

⑤ 어떤 규모의 연립주택일지라도 단위면적이 동일하면 1.25H의 인동간격을 가진 것이 2.0H의 인동간격을 가진 것보다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높다.

⑥ 인동간격이 동일한 경우 호수밀도는 동서로 긴 C형, X축 Y축이 같은 A형, 남북으로 긴 B형 순으로 커진다.

⑦ 단위면적이 동일할 때 인동간격이 1.25H일 때와 2.0

H일 때의 호수밀도를 비교하면 2.0H의 1층 연립형, 1.25H의 1층 연립형, 2.0H의 2층연립형, 1.25H의 2층 연립형의 순으로 호수밀도는 커진다.

⑧ 단위면적이 동일하고 동일한 인동간격일 때의 호수밀도는 1층연립형이 2층연립형보다 적다

⑨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22m의 인동간격을 취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연립주택 실정에는 토지이용상 적용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인동간격이 22m일 경우에는 1.25의 약 3배 2.0H의 약 2.5배 정도로 토지이용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3-14) 現行法規에 의한 일조건

방 향	건축물 높이(H)의 한도	
	높이 8 m 초과시	높이 8 m 이하
정남, 정북, 방향 북	$H \leq 2D$	$H \leq 4D$
공동주택, 의료시설의 개구부가 있는 방향	$H \leq 2D$	$H \leq 2D$
기 타 방 향	$H \leq 12 + 1.5D$	

(표 3-15) 인동간격에 따른 戶當 坪地面積・戶數密度・人口密度 比較

(y  : A형 y  : B형 y  : C형)

* 단, 戶當 평균가족수는 5인으로 봄.

聯立型	世帯當規模	型	單位 (東西長)	平 面 (南北長)	인동간격 1.25 H			인동간격 2 H			인동간격 22m		
					대지면적 坪	戶/ha	人/ha	대지면적 坪	戶/ha	人/ha	대지면적 坪	戶/ha	人/ha
	15 坪	A	7.0m ×	7.1m	84.1	119	595	103.7	96	480	259.5	39	195
		B	6.0 ×	8.3	81.3	123	615	98.9	101	505	250.0	40	200
		C	8.3 ×	6.0	88.3	113	565	110.6	90	450	291.0	35	175
1층연립	20 坪	A	1.8 ×	8.1	104.9	95	475	127.2	79	395	311.6	33	165
		B	7.0 ×	9.5	102.6	97	485	122.7	81	405	291.4	35	175
		C	9.5 ×	7.0	110.2	91	455	135.5	74	370	340.8	30	150
	25 坪	A	9.0 ×	9.1	125.3	80	400	149.8	67	336	349.9	29	145
		B	7.5 ×	11.0	121.6	82	410	143.1	70	350	321.8	32	160
		C	11.0 ×	7.5	132.2	76	380	160.9	62	310	390.9	36	130
2층연립 (1.2층 별도세대)	15 坪	A	7.0 ×	7.1	58.7	170	850	80.4	124	620	129.8	78	390
		B	6.0 ×	8.3	55.7	180	900	75.3	132	660	125.0	80	400
		C	8.3 ×	6.0	63.1	158	790	87.5	114	570	145.5	69	345
	20 坪	A	8.1 ×	8.1	72.4	140	700	95.7	104	520	155.8	65	325
		B	7.0 ×	9.5	68.4	146	730	90.5	110	550	145.7	69	345
		C	9.5 ×	7.0	76.5	130	650	103.8	96	480	170.4	59	395
	25 坪	A	9.0 ×	9.1	83.4	120	600	109.9	90	450	175.0	58	290
		B	7.5 ×	11.0	79.1	126	630	102.6	98	490	160.9	63	315
		C	11.0 ×	7.5	90.3	110	550	121.1	82	410	195.5	52	260
2층연립 (1.2층 동일세대)	30 坪	A	7.0 ×	7.1	117.4	85	425	160.8	62	310	259.5	39	195
		B	6.0 ×	8.3	111.3	90	450	150.6	66	330	250.0	40	200
		C	8.3 ×	6.0	126.2	79	395	174.9	57	285	291.0	35	175
	40 坪	A	8.1 ×	8.1	142.7	70	350	191.3	52	260	211.6	33	165
		B	7.0 ×	9.5	136.7	73	365	180.9	55	275	291.4	35	175
		C	9.5 ×	7.0	152.9	65	325	207.5	48	240	340.8	30	150
	50 坪	A	9.0 ×	9.1	166.7	60	300	129.8	45	225	349.9	29	145
		B	7.5 ×	11.0	158.1	63	315	205.1	49	245	321.8	32	160
		C	11.0 ×	7.5	180.7	55	275	242.2	41	205	390.9	26	130

(29페이지 繼續)

고딕建築의 構造에 関하여

金 濟 東
(韓社大學 講師)

1. 序 論

人間이 重力과 대항 하여 싸우면서 風雨寒雲을 막기 위한 空間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 수 많은 建築物을 構築 하였지만 이 建築物 들을 構造의으로 分析하여 大別하면 포스트 앤드 린텔(Post and Lintel)構造物과 캔틸레버(Cantilever) 또는 코오벨(Corbel)構造物, 아아치(Arch)와 보울트(Vault)構造物 및 트러스(Truss)構造物의 4 가지로 分類 할 수 있을것이다.

인간 들이 더 넓고 높은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 방법들을 창안해 냈는데, 어떻게 하면 지붕의 하중을 기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반에 전달 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었다.

예로부터 西洋建築의 主建築材料는 石材였다. 그리이스나 로마시대에는 단지 石材를 쌓아 올려서 그들 자체의 무게에 의한 안정으로 구조물이 지탱하게 하였으나 構造를 잘 연구하여 石材를 쌓기 시작한 것은 돔(Dome) 建築 부터 었다고 할 수 있겠다. 돔(Dome) 建築이 발달하여 보울트(Vault) 構造가 발명되었으며 보울트(Vault)構造가 가장 잘 발달된 시대는 고딕建築 시대라 할 수 있다. 고딕建築은 西洋建築史上 가장 찬란한 건축시대를 이루었던 것으로 建築構造 技術面으로 볼때는 建築史上 획기적인 시대라 할수 있다. 이러한 고딕시대 建築의 構造를 일별한다는 것은 옛시대 건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게 아니고 工學的으로 고찰해 본다는 의미에서 건축 발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본 小考를 쓰는 바이다.

2. 고딕의 語原 및 고딕건축의 발전

Gothique란 말이 맨처음 사용된 것은 화가 라파엘(Raphael)이 국왕 Leon X에게 보내는 글에서 었다. 고딕(Gothique)란 말에 대칭적으로 쓰여진 말로써 경멸적인 야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17~18세기에는 고딕양식은 고트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잘못 알려졌었으나 19세기 부터는 중세건축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뜻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이때

리 태생의 예술사가이며, 건축가로 알려진 비사리(Va-Sari Giargio)가 프랑스의 중세건축문화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서 고트족에서 유래한 고딕이란 말이 새로운 뜻으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고딕건축물이 최초로 세워진것은 성드니(Saint Denis) 수도원(1127~1140) 13세기 중엽부터 성드니를 계속하는 고딕건축운동이 일어 이 운동은 얼마되지 않아 전유유럽으로 전파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초기 고딕건축의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딕건축은 거의 4 세기 동안 걸쳐 발전 계승되었다. 12세기에 생겨서 16세기초까지 계속되었으며 13세기에 가장 융성하였다.

이때 파리(Paris), 랭스(Reims), 아미앵(Amiens) 부루즈(Bourges)의 대부분의 성당이 건축되었다.

3. 石材의 使用과 構造技術의 發達

人間이 건축재료로 석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 한것은 돌멘(Dolmen), 맨히르(Manhir), 스톤 헨지(Stone Henge) 등에서 볼수 있듯이 원시 시대 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단지 석재를 단순 하게 세워놓았다는데 불과한 구조물이라 하겠다.

이집트 시대에는 기계없이 거대한 석재를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석조건축물을 架構式으로 쌓기 시작 하였고, 그리이스 시대에는 정확하게 좌우 균제의 외관을 가지는 架構式構造物을 건축하였다. 로마 시대에는 火山灰와 石灰石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발명하게 되었고 이 구조방법이 로마 시대의 건축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고딕시대 건축은 역사상 다른 어느 시대 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石工 技術에 의하여 성립 되었다. 그 구조법과 細部工作들은 최고도로 완성된 건축양식만이 갖는 명료성을 갖고 있었다.

척두형과 아아치를 출입구·창 등 모든 개구부에 사용하였으며 지붕을 높게 솟아 올리고 하늘을 지향하는 피나클(Pinnacle)尖塔·종각 등을 건축하였다.

4. 고딕建築에 있어서 荷重의 解決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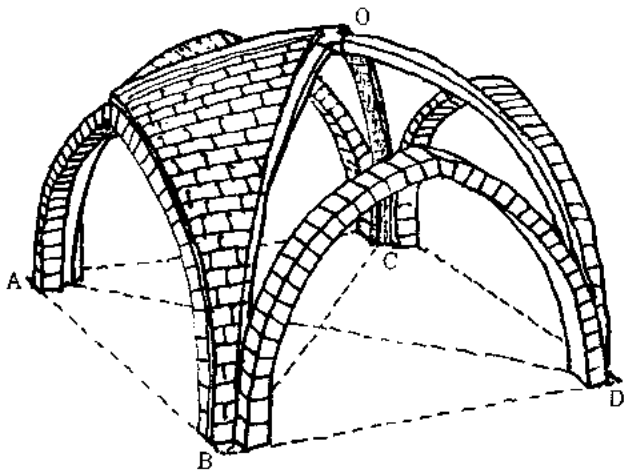
4-1 리브·보울트

모든 건축물은 荷重問題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가 문제였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架構式構造로 해결하였으며, 고딕시대에는 石材를 쌓은 보울트로써 해결 하였다.

보울트는 아아치가 계속되어 半圓筒形의 面構造를 형성한 것이다. 리브·보울트 구조법은 우선 보울트를 구축하기 전에 보울트의 꼭면을 몇개의 리브(Rib)로 분할하여 리브를 먼저 만들고, 리브사이의 面을 얇은 파넬(P-anel)로 덮는 방법이다.

고딕 건축물에서 가장 발전된 수법은 보울트 구조법이라 하겠다. 이것은 로마네스크 시대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특히 고딕건축에 이르러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즉 어떠한 형상의 평면위에도 자유롭게 보울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고딕建築의 리브·보울트(Rib Vault)는 두개의 리브(Rib) AD, BC와 네개의 척두형 아아치 AB, CD, DC, AC로 이루어졌다.

이중 두개의 척두형 아아치는 고딕建築의 측랑인 아일(Aisle)과 內陳인 베이브(Nave)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벽체의 上部에 걸치게 된다.

두개의 사선 아아치 AD와 BC는 O점에서 만난다. 이 점을 끌레프(Clef)라고 한다. 이 끌레프가 리브의 견고성을 유지한다. 리브·보울트의 탁월성은 가벼움에 있다. 리브간의 간격을 무거운 石材 대신 얇은 石材를 파넬(P-anel)式으로 덮은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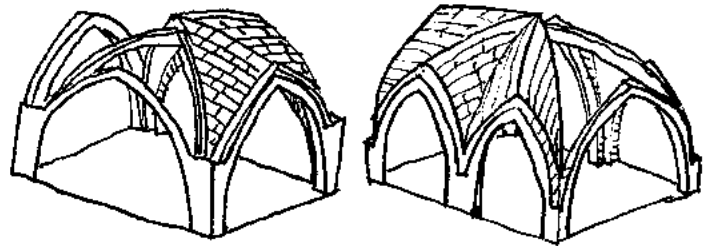
척두형 아아치와 리브에 의해 분산된 하중은 A, B, C, D 네 點으로 집약되어 기둥을 통해서 지반으로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한 건축물의 모든 리브·보울트는 하중 문제가 독립적으로 되며 가벼워진다. 고딕 건축가들의 이러한 하중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한 발명은 혁신을 가져왔다.

보울트의 가벼움은 기둥굵기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고딕건축에서 벽체는 하중을 받지 않는 장막벽으로 되었다.

4-2 정사각평면 위의 6분 보울트

규모가 큰 성당을 지으려면 성당 내부의 천정고도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內陣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므로 리브(Rib)를 하나 더 추가하여 6분 보울트를 사용하였다.



4분보울트

6분보울트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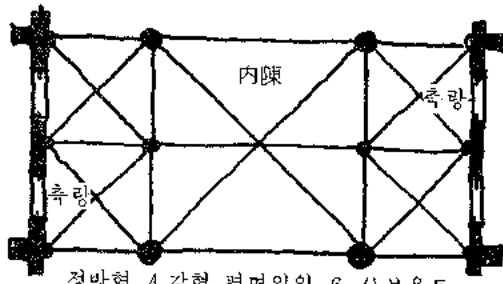
18세기의 파리(Paris) 라옹(Laon), 부르즈(Boorges) 스와송(Soisson)의 성당에 사용되었다. 6분 보울트는 리브보울트(Rib Vault)에 또다른 한개의 리브(Rib)가 추가됨으로써 보울트(Vault)를 6등분 하게 된다. 이것은 보울트의 하중을 더 분산시키는 이점은 있으나 보울트의 하중을 똑같이 6등분 하는게 아니므로 기둥의 굵기가 서로 달라진다. 실내에서 보면 내진(Nave)과 측랑(Aisle) 사이의 열주가 굵기가 서로 다르면 조화가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천정부분의 채광창들은 이 보울트의 축과 일치하지 않아 의장상으로도 조화가 되지 않는 결점이 있다.

4-3 장방형평면 위에 세운 보울트

정사각형 평면위의 6분 보울트의 결점들은 장방형 평면위의 보울트로써 해결된다. 보울트의 하중은 똑같이 4등분 함으로써 기둥의 굵기가 같아지며 채광과 보울트의 축과 연결되는 기둥과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즉 보울트를 6등분 하지 않고 평면을 변형 시킴으로써 6등분 보울트 구조와 같이 높은 내부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內陣의 폭을 줄이지 않고 동시에 지붕의 하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內陣의 길이를 줄여서 지붕 하중의 감소 문제를 해결 했다.



정방형 4 각형 평면위의 6 분보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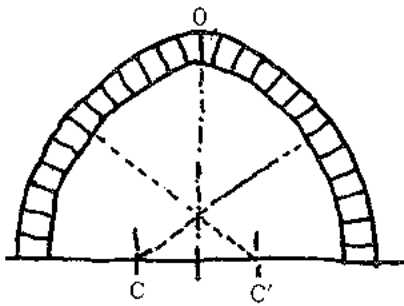


장방형 4 각형평면위의 4 분보울트

(그림 3)

4-4 尖頭形 아아치

(그림 4)의 첨두형 아아치는 서로 다른 중심을 가지는 반지름이 같은 두개의 원호를 따라 홍예형 석재를 서로 맞물리게 쌓으므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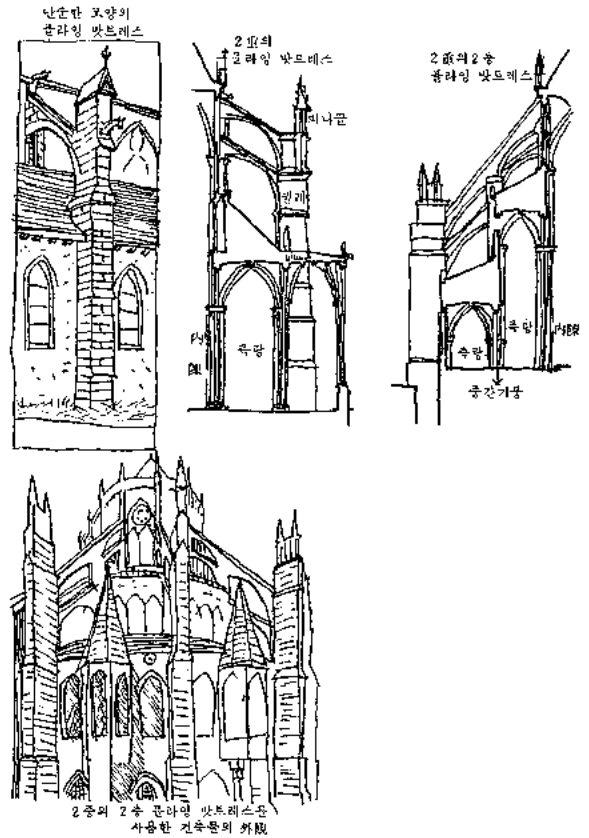
첨두형아치는 반원형아치 보다 더 좋은점이 있다.

반원형아치에서는 중심부분의 석재 (Clef 佛, Key 英)가 미끄러져 내려올려고 하나, 첨두형 아아치에서는 두개의 클레프 (Clef)가 서로 견고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게 되어있다.

5. FLYING BUTRESS (그림5)

내진(Nave)과 측랑(Alsle)의 사이와 같이 벽체 하부의 아치로 지지한 곳은 Flying Butress의 구조법을 사용하여 그 횡력을 바깥쪽의 Butress 에 전달 시켰다. Flying Butress 구조는 측랑의 지붕보다 높게 측랑 바깥쪽에 Butress를 만들고 측랑의 지붕 上部 공중에서 내진의 보울트의 하중이 집중하는 곳에서 부터 바깥쪽 바트레스(Butress)로 弓形의 아아치(Arch)를 구축해서 내진의 보울트(Vault)로부터 오는 橫力を 바깥쪽의 바트레스(Butress)에 전하게 하여 그 橫力を 지지 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는 두부분으로 되어 있다. 켈레(Culee)라고 불리우는 조적조 벽체와 한개 또는 수개의 아아치(Arch)로 되어 있다. 아치는 내진으로 부터의 횡력을 켈레(Culee)에 전달한다. 건축물이 낮을때는 플라잉바트레스(Flying Butress)는 간단하나 성당처럼 큰 구조물 일때는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는 2층으로 되어있다. 만일 2重으로 되어 있을때는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는 이층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中間) 기둥에 의해 2重으로 되어있다.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의 역할은 리브(Rib)의 하중의 횡력을 처리할 뿐 만 아니라 지붕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처리하는 물받침의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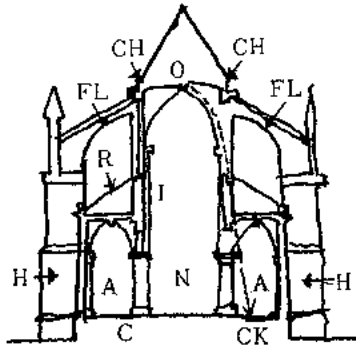


(그림 5)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 없이는 내진을 아주 높이 쌓을 수 없었으며, 보울트(Vault)의 횡력을 담당함으로써 기둥은 더욱더 가늘어지게 되었다. 기둥에 연결시켜 기둥옆으로 플라잉 바트레스(Flying Butress)를 설치함으로써 측랑보다 높이 솟아있는 내진의 외벽 부분에 채광창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켈레(Culee) 위에는 뾰족탑(Pinnacle)을 설치하여 고딕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이 뾰족탑(Pinnacle)은 외장효과면 보다는 뾰족탑(Pinnacle)이 없으면 켈레(Culee)가 기울어질 염려가 있어 構造的인 문제 해결 때문에 뾰족탑(Pinnacle)을 만들었다고 볼수가 있다.

内陣의 보울트의 하중이 집중하는곳에 기둥을 세워 지붕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시켰다.

Rib를 기둥의 柱頭 부분 위에 걸쳐 놓던가 또는 Rib를 계속 연장시켜 본기둥에 접한 束式 기둥으로 만들어서 지붕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시킨 방법도 사용 하였으며 후기 고딕 건축에 가서는 Rib를 기둥에 묻어 버리는 기법도 사용 하였다. 이러한 기법의 발전은 내부 공간의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 기둥의 굵기를 가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고딕 성당의 단면도

F. L=플라잉 바트레스

A: 측랑 N: 内陣

H: 높이

O: 아치자 정점

CH:水路

R: 측랑의 지붕

O. K: 보울트의 횡력

이상과 같이 고딕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살펴 보았다. 고딕건축의 구조법인 리브 보울트(Rib Vault)는 건축 구조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킨 결과인 보울트(Vault)의 경량화는 기둥의 직경이 많이 가늘어져서 건축물 내부공간의 답답함을 감소시켜 주었으므로 성당건축물의 可視면적을 넓혀 주었다.

고딕건축은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딕건축에 있어서는 구조문제가 주요 문제였으며 외장 문제는 2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딕건축의 구조는 Form Follows structure라는 말을 낳게 했다. 건축물의 構造문제를 합리적이고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고딕건축의 독특한 외관형태가 결정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딕건축에 있어서는 평면과 構造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려고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6분 보울트의 결점을 제거 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은 내부공간을 그대로 확보하면서 내진의 폭은 변경없이 내진의 길이를 줄여서 즉 평면의 변경으로써 보울트의 하중을 똑같은 비율로 경감시켜서 같은 굵기의 기둥으로써 지붕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케 한 방법에서 볼 수 있다.

끝으로 기초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의 곤란 때문에 고찰을 해볼 수 없었으며 아마 독립기초 일것으로 짐작 되나 거대한 규모의 조적식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구조법이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

會員建築設計作品展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그릇을 연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배님, 어른들을 모시고 건축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전시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셔서 본전시회를 빛내주시기를 바라오며 젊은 건축인들의 앞날에 인도자가 되어 주실것을 기원합니다.

장소: 대륙빌딩 지하다방(전주) 4-2593 3-3040

기간: 1980. 11. 21~12. 20

개전: 1980. 11. 21 오후 4시 정각

후원: 대한건축사협회 전북지부

유립건축연구소 전주시 고사동 1가29의1
2-5964, 6-4619

1980. 11.

유립건축연구소장 유 철 갑
임 동 윤 율립

1980年度 協会賞 受賞

(本協会 創立第15周年記念)

審査委員会

日時: 1980. 9. 11(1次) 10. 10(2次) 10. 20(3次)

場所: 本協会 会議室

委員長: 金斗燮 本協会 第12代 会長

委員: 姜明求 本協会 第4代 会長

李圭福 本協会 第8代 会長

李海成 建築家協会 会長

金正秀 延大教授

李璟會 本協会 編纂委員(延大教授)

尹道根 本協会 編纂委員(弘大教授)



◎ 協会大賞을 授賞하는 李起範 所長

審査方式

作品 및 論文 共に 本協会에서 発行되고 있는 会誌 “建築士”에 1979. 11~1980. 9 月까지의 期間中 寄稿掲載된 것을 審査対象 原則으로 하고 作品部門은 住居와 非住居로 区分, 凡例에 따라 本会大賞은 非住居에 局限 選定하기로 하였다.

決選審査入賞作

◎ 作品

大賞: 鷺梁津教会 (李起範・都市建築)

優秀賞: 住宅 (俞景哲・綜合建築)

優秀賞: 病院 (尹承重・元都市建築)

奨励賞: 立地 (黃一仁・綜合環境一建)

入選: 病院 (金宗根・汎興建築)

入選: 빌딩 (金大魯・韓美合同建築)

入選: 社屋 (金錫澈・金錫澈建築)

入選: 庁舎 (金正湜・正林建築)

◎ 論文

優秀賞: 建築材料의 熱伝導 特性과 実験
(尹在振・国立建設研究所)

奨励賞: 재미로 읽는 構造 (李昌男・세 構造研究所)

以上과 같은 内訳으로 選定된 作品 및 論文은 80年10月30日 市内 프라자호텔에서 開催된 本協会 第15回 定期總會場에서 副賞과 함께 受賞되었다.

◎ 優秀賞을 授賞하는 俞景哲 所長



◎ 優秀賞을 授賞하는 尹承重 所長



第5回 協會賞 審査評

金 斗 燮

建築士協會賞施賞制度가 創設되고 올해로 다섯돌을 맞는다. 協會賞은 會誌 “建築士”에 실린 會員의 作品中 竣工이 된것을 対象으로 해마다 審査委員會를 構成 嚴選하여 施賞하여왔다. 一般적으로 會員들이 自己의 作品을 會誌에 紹介함을 꺼리는 傾向때문에 作品의 提出이 不振하여 會員作品紹介欄을 배꾸기 爲한 執行部의 苦衷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陰路를 打開하고 會誌를 보다 充實하게 發展시키기 爲한 方便으로 協會賞 審査対象作品을 會誌에 실린 作品으로 制限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每月 5內至 6點의 作品을 紹介해 나가는데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編輯 刊行하고 있는 現實이 아쉬워 이 機會에 會員여러분의 보다 積極的인 參與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해까지는 協會賞施賞을 爲한 明文化된 規定도 없어 그때마다 委員會에서 審査方法, 施賞範圍等을 前例에 따라 協議하여 受賞作을 選定하여 왔으나 이 制度는 앞으로繼續되는 年例 行事임을 減案하여 지난 第17回 理事會議에서 論議, 協會賞施賞規定을 制定 施行키로 決議됨으로서, 올해부터는 名実共に 協會賞施賞制度가 本軌道에 올랐다고 하겠다.

올해도 例年과 같이 理事會議에서 새로 制定한 規定에 따라 有能한 大學教授任들을 審査要員으로 委嘱하여 7人으로 審査委員會를 構成하고 지난 10月 8日 第1回 審査委員會를 갔었다. 첫 委員會에서는 作品部門을 委員 1人當 優秀하다고 認定하는 作品 8點을 嚴選하여 推薦키로 하고 論文部門의 審査는 教授委員 3人(李海成, 尹道根, 李琮會)으로 小委員會를 構成 1人當 優秀論文 2編씩을 嚴選 推薦하여 次期 委員會에서 審査키로 하였다.

10月10日 第2回 審査委員會에서 委員들이 推薦한 作品을 集計한 바 非住居에서 金宗根, 李起範, 尹承重, 黃一仁, 金正湜, 金大魯, 金錫澈의 7個 作品이 住居에서는 俞景哲, 權祥雲의 2個作品이 候補作品으로 入賞圈안에 들었고, 當該會員에게 別途의 展示可能한 正式作品提

出을 通報한 바 權祥雲 會員을 除外한 8個作品이 出品되어 10月 20日 第三回 審査委員會를 열었다. 提出된 것으로 出品을 爲하여 平常業務를 全閉하고 努力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作品, 寫眞 편집등 훌륭한 솜씨에 委員全員이 感歎하여 讚詞를 아끼지 않았고, 優勢를 가리키기에 苦心하는 눈치였다.

住居部門은 權祥雲 會員의 作品 未提出로 棄權으로 看做 俞景哲會員의 Y氏 住宅이 單獨出品 되어 自動 優秀作品으로 決定되었고, 非住居部門은 3次에 걸친 無記名 投票로 受賞作 3點을 가려내고 다시 裝勵賞, 大賞, 優秀賞의 順으로 投票한 結果, 裝勵賞에는 黃一仁의 호텔 서울가든, 優秀賞에는 尹承重의 釜山 白病院, 榮譽의 大賞은 李起範의 노량진 신성 교회가 各各 차지했다.

例年에 比하면 올해에는 住居의 優秀作品이 눈에 띄이게 줄은 反面 非住居에서는 受賞作品外에도 이에 못지 않는 優秀作品들이 많았으나 數의 制限때문에 入賞 시키지 못한것을 아쉽게 生覺한다. 아울러 審査過程에서 느낀所感으로는 出品된 作品을 하나하나 分析檢討하고 討論을 거쳐 拔點으로 決定하지 못하고 주어진 與件과 時間의 制限 關係로 不得已委員들의 主觀的 判斷에 依한 多數決原則에 따른 無記名 投票로 當選시킴으로서 水準높은 훌륭한 作品들이 탈락되는 矛盾을 內含 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못내 아쉽게 生覺하며 審査의 어려움을 再三 느꼈다.

次回부터는 새 執行部에서 보다 나은 方法을 模索하여 審査后 余音이 없도록 施行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

論文部門은 學術面으로 보아 優秀論文이 많았으나 建築士業務와의 連関性 또는 會員에게 直接 도움이 되는 論文이 受賞 対象에 올라 優秀賞에 建設研究所에 勤務하는 尹在振氏의 “建築材料의 熱伝導 特性과 實驗”이 獎勵賞에는 李昌男 會員의 “재미로 읽는 構造”가 題目 그대로 재미있게 꾸며지고 알기쉽게 풀이한 論文으로 各各 受賞작으로 決定 되었다. ■

優秀賞 (論文) 尹 在振 (國立建築研究所)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졸업
-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 건축부
- 국립건설연구소장 표창
- 국립건설연구소건축재료시험 강사
- 일본 건설성 건축연구소 기술연수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受賞所感

자신에게 이렇게 크나큰 상을 내려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더욱이 건축사 여러분께는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축재료의 열전도특성과 실험”에 관한 것으로서…….

建築材料의 熱伝導 特性과 實驗

그렇지만, 건축재료시험은 건축재료의 기계적성질, 물리적성질, 화학적성질 등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실체(实体)가 곧 재료라는 관점에서 볼때 건축재료시험은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는 물론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품질관리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미흡한 저에게 격에 맞지 않은 큰상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奨励賞 (論文) 李 昌男 (세 構造研究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졸업
- 서울공대 대학원 건축과 석사학위
- 공군시설 장교
- 현대건설(주) 입사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구조부
- 건축사 면허증 취득
- 기술사(건축시공) 면허증 취득
- 기술사(건축구조) 면허증 취득
- 현재 건축구조 설계 계산

受賞所感

전혀 뜻밖의 연락을 받고 어색함과 부끄러움의 뒤 범벅된 마음으로 상타러 갔었습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때 머리에 눌러쓴 모자, 멋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이 자랑스럽다거나 감격스러워서 그러한건 물론 아닙니다. “구조”라는 일 자체가 무슨 상타는 것과는 거리가 먼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유명인사는 그당시 하나밖에 없던 제일 한강교를 쳐다볼 때마다 내노라하고 버티고 선 아취보다는 그 아취를 차가운 물속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기초에 마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내용고 자랑할게 못되는가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다리뼈와 해골의 생김을 상상해야 하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때문입니다. 본인은 어떤 건물이건 그 뼈대가 노출된 상태일때가 더 정겹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가마니나 그 천덕꾸러기, 건물의 뼈다귀 말입니다.

재미로 읽는 構造

현상설계가 있을때마다 구조부문에 관한 자문을 한 것이 한두번 아닙니다. 완성된 건축설계 작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상이 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품제작에 보탬을 주었다고 생각되는것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어쩌다 실수로라도 현상설계의 당선작으로 뽑혔다거나 상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려주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시집가는 주인공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젖은 손을 치맛자락에 닦아대는 하녀의 심정으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잘되면 아무 소리 없고 어쩌다 발코니 난간에 실금이라도 가면 가여히 물어뜯기우고야 마는 고달픈 젖은손에 상이 주어졌습니다. 본인은 이 상의 등급이나 크기 같은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 자체에도 털끝만큼의 고마움 같은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 시상해주신분들께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마음속 깊이 감사히 생각하는 사항은 건축인들의 무관심 속에 팽개쳐졌다싶던 구조분야가 조금씩이나마 시선을 받게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김치국 마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일니다.

재미도 없는 “재미로 읽는 구조”를 읽고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과 서투른 원고를 활자화 시키느라 애쓰신 분들께 이 상을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쓸모없이 영원히 구조물 속에 매장되고 마는 귀중한 자산(구조재료, 노력, 시간)을 전져내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앞으로도 기회 있는대로 “재미로 읽는 구조”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풍전산업주식회사 건축부 근무
- 피정의 센타 신축설계, 감리
- 타워 호텔 감독
- 상업은행본점 감독
- 도시건축공사 대표
- 동방상사주식회사 본점 신축설계
- 대한석탄공사 여의도본사 신축지명현상설계 1 등 당선, 설계, 감리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매매업체대단위화 신축설계,

受賞所感

결코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으며 高度의 情報가 要求되지도 않는 소박한 이 作品을 제출할때 전혀 심사위원이나 당낙을 의식하지 않고 제출한것이 없으므로 의외에도 大韓建築士協會·作品大賞의 榮光을 受賞하게된대에 대하여 當惑과 긴장감을 숨길수없었으나 우선 審査委員 및 建築士協會諸賢께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짧은 설계기간으로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고 苦斗한 설계실 멤버와 이 受賞의 기쁨을 나누고자한다. 여지껏 우리가 설계한것중 가장 최악의 垆地 條件이었으므로 이점이 當選으로 連結될줄은 전혀 예상치 않았었던것이다. 처음에 垆地의 形態에 접하는 순간 기능은 형태를 낳는다라든가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라는 기초적인 이론마저 한낱 구차스런 美辭麗句로 느낄정도의 複雜한 地形이었으나 조형과 기능의 變化와 統一性을 찾는다는 그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실제로 지어진 建物을 보니 教会側의 제한된 予算으로 꼭 使用하고 싶었던 材料에 制約을 받았던점과 完成慾求에 처한 時間的制限이 못내 아쉬운 느낌도 든다.

人間的要求에 依하여 創造되어야할 空間이 흔히 建築主의 오만과 편견에 依해서 오리엔테이션이 滑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점을 設得을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것을 信賴받을수 있게 努力하고 使命感을 기꺼히 짊어지는 過程이 또한 本設計 못지않은 比重의 作業임을 왕왕 우리는 경험한다.

기획담당: 김 동 길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량진동

대지면적: 703.8m²

구 조: 원근콘크리트조

鷺梁津教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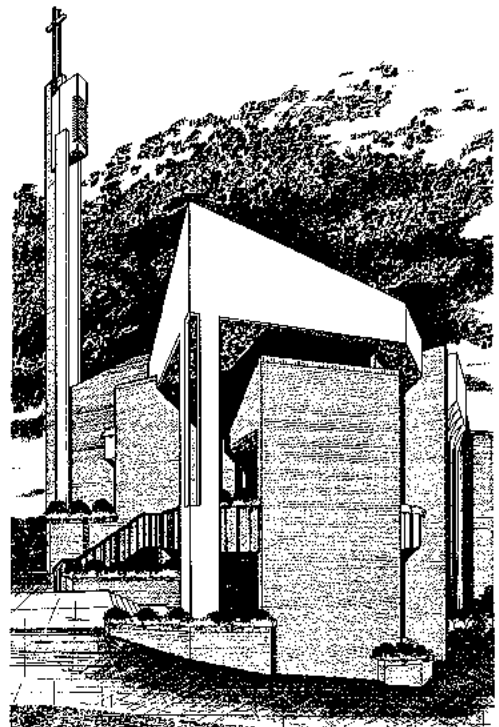
建築이란 空間과 機能을 찾기以前에 人間的인 空間이티가 우선하여야 하므로 이번 教会側에서의 우리가 表現하고 싶은 作業에 越權行爲가 없었던 점과 방관만도 하지 않았든 이점은 참으로 좋았다고 기억한다.

賞이 갖고있는 意味란 激勵과 刺克이 담겨있으나 그것이 오로지 始作일뿐이며 더 훌륭한 作品을 낳기爲한 策적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더욱 人間完成에 소홀하지 않으며 量的인 發展보다 質的인 向上에 積極的이어야되겠고 學問的姿勢를 잃지않으므로해서, 항상 信賴받는 建築人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設計概要

작은 대지, 경사가 심한 인접도로, 불규칙적인 지형 및 대지의 높낮이, 불규칙하게 나열된 주위의 보잘것 없는 주택군들, 이러한 불균형 투성이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 기능 조형미를 갈구하기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허지만 무질서 속에서 형성되는 가능성 있는 작은 줄기를 찾으면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동서로 이루어지는 기본축 좁은 대지내에서 어쭙로치 되는 과정의 인간과 불규칙성의 조화, 도로의 심한 경사에 의한 어쭙로치 동선의 수직분리 또한 만남, 조형의 복잡속에 통일성 교회본연의 대화와 자분한 공간구성 무질서한 주위 환경과 조형미의 호흡.....

이러한 난제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 하여 보았다.
(1980年 3月号 参照)



優秀賞 (作品)

俞 景哲 (綜合建築設計)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종합건축연구소 근무
- 삼육건축연구소 대표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장식미술과 강사
- 일본 J. I. A. 오오사카 건축제 참석
- 호주 U. I. A. 시드니 총회 참석
- 미주 A. I. A. 시카고 총회 참석
- 구주지구 건축제 전학
- (주) 종합건축설계 사무소 공동대표

受賞所感

흔히들 창작은 보방의 母胎로 이어져 이룩된다고들 한다.

賞을 위해 작품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이번에 優秀作으로 선정된 裏面에는 나의 미흡함을 채찍하는것으로 받아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宅 건물면적: 1층 110m²
 2층 40m²
 지층 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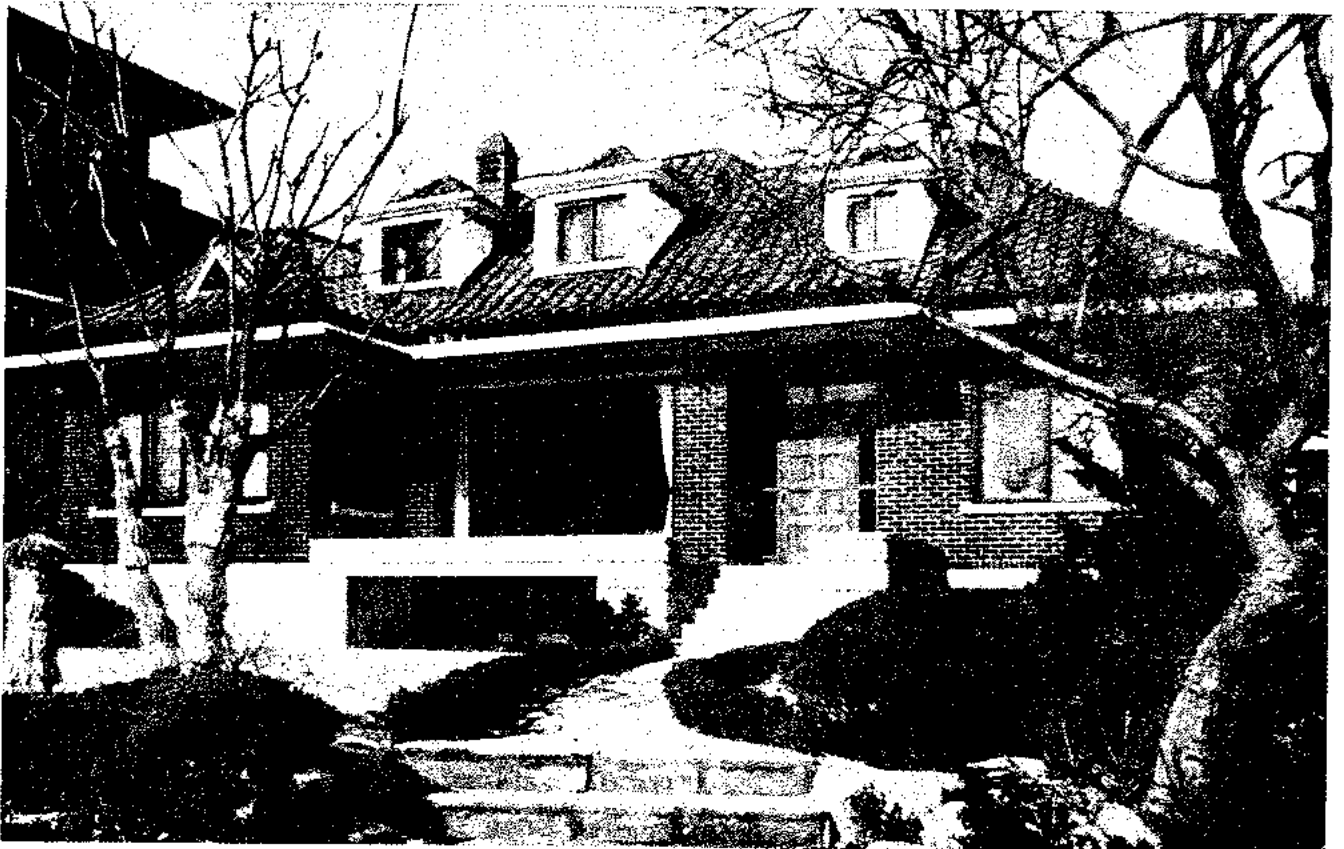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건축사지 창간 이래 가끔 다듬어지지 못한 나의拙作들을 실어온 蠻勇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심사에 同參하지 않은 보다 훌륭하고 참된 他會員의 作品들이 앞으로는 다 같이 밝은 햇빛아래 우리들 앞에 展示될 날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設計概要

근래 우리 사회도 서구의 양식주택으로 건축 패턴 이크에 바뀌어져가고 있다. 익스테리어가 바뀌면 인테리어도 따라가야 하듯 고유했던 주거생활 양식에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Y씨택은 노모를 모신 3세대가 가능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가며 대가족의 단란을 1층 화이버 프레이스 주위와 식당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락방에는 예술하는 딸의 아프리에와 온실을 겸한 다용도실을 꾸몄다. 근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건축주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장차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1층 지붕을 52°로 경사지었고 지하실에는 축열조 설치장소를 마련하였다. (1980年 1月號 参照)



優秀賞 (作品)

尹 承重 (元都市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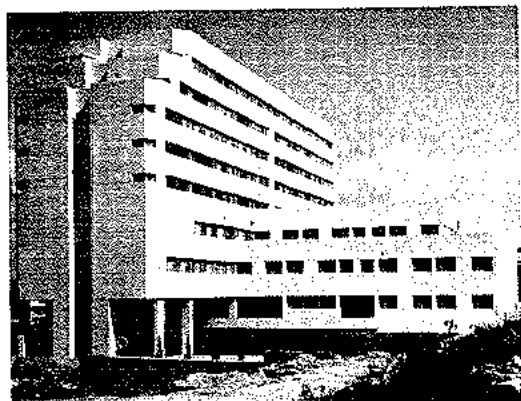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김수근건축연구소 수석디자이너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도시계획부장
- 원도시건축연구소 소장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한국건축학회 이사
- 부산 피닉스 호텔
- 태평양건설 본사('78 건축가 협회상)
- 한일은행 본점
- 대한화재보험 본사
- 한일은행 연수원('79 건축가 협회상)
- 오우션 호텔
- 성균관대학 수원 캠퍼스

受賞所感

인제의대 부산 백병원이 “협회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결과가 되도록 높게 평가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가들의 평소 작품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성취를 바르게 평가하여 기록에 남기는 “협회상”과 같은 제도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1년간 협회지에 게재 된 작품만으로 심사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 “협회상”의 의의를 반감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겸손하게 숨은 노력을 찾아내서 바르게 평가해 주는데 더 큰 뜻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病 院

대지위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개금동
대지면적: 12,092m²
건축면적: 3,099m²
연 면 적: 20,462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

건축가의 좋은 건축을 향한 작업은 “상”을 받을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또 자신있게 스스로 내용을 만든게 재가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권위를 더하여 건축제가 함께 기뻐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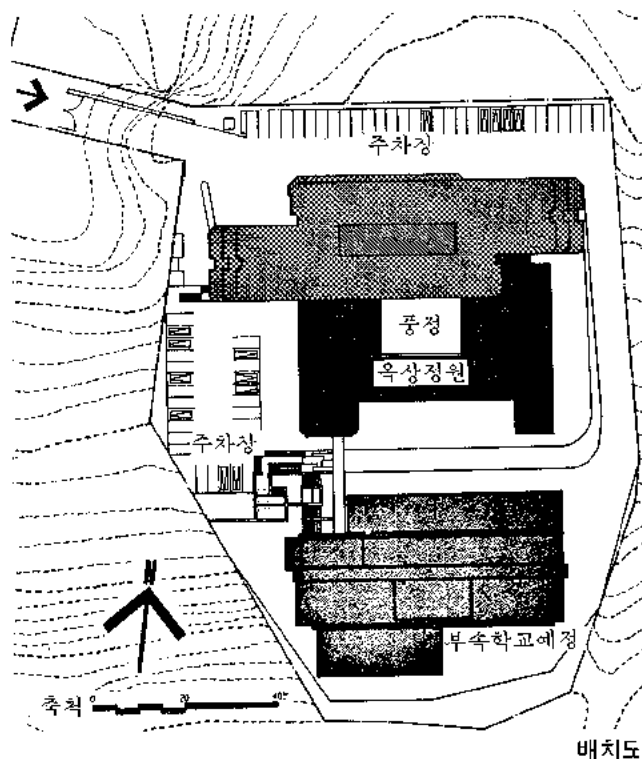
■ 設計概要

이 병원은 설계당시 서울 백병원과 함께 진료 전문 종합병원으로 출발하였으나, 후에 인제의대가 신설되어 부속병원으로 되었다. 따라서 480병상 규모의 진료기능을 주로 갖도록 설계되었으나 점차 교육, 연구기능이 추가되도록 변모 될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은 매년 발전하는 진료기기 및 일체가 되어 고도로 능률적인 기능이 일차로 요구된다. 매우 복합적인 여러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일과 변화하는 요구에 그때 그때 대처하도록 가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 계획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불건강한 몸으로 찾아오는 환자와 생활하는 환자들에게 밝고 건강한 공간을 보여 주려는데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병원은 주거지역으로 둘러 쌓인 산록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능한대로 자연 광선과 바람을 잘 활용하도록 배려하였다.

(1980年 8月号 参照)



獎勵賞 (作品)

黃 一 仁 (綜合環境一建)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건축공학과 졸업
- 공군본부 시설국(공군중위)
- 무애건축연구소 근무
- 한일은행 본점 신축본부 근무
- 단국 대학교 건설본부 근무
- 건원사 건축연구소 대표
- 일본 센루트 호텔 체인 초청으로 일본 건축계시찰
- U. I. A. (멕시코 대회)참석 및 미주 건축계 실시
- 종합환경 연구소 일전으로 통합
- 현 이화여대 강사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1962. 10. 국전 건축부 특선 문교부 장관상 수상
- KIST영빈관 및 기숙사(담당)
-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교사 및 기숙사(담당)
- 포항종합제철 외인 주택지구 마스타플랜 및 신축설계(담당)
-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 한국 어린이회관 신축설계(담당)
- 한일은행 본점 설계
- 단국대학교 영동 캠퍼스 마스타 플랜
- 울산공대교수 아파트 및 학생회관
- 서울가든호텔
- 천호상업고등학교
- 반월공업단지 복지회관
- 한미산업 인천공장 동 공장 다수
- 부산 P씨택, 영동 L씨택 등 주택 및 아파트 다수
- 1978. 11 '78년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受賞所感

협회가 그간 건축사지를 매개로 작품이나 글을 통한 회원간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므로써 회원간의 동료 의식을 고취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건축계 단체의 잡지들중 협회의 성격에 맞추어 실무적인 면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다른 잡지와 구별되는 면모를 유지해 왔고 잡지의 체제나 내용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어 온것을 회원의 한사람으로 경하한다.

호 텔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연면적 26,540m²/지하 2 층
지상15층 / 기준층1,175m²

다만 듣기에는 아직도 매월 원고의 부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다.

건축계는 지난 70년대의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국내에서 눈부시게 활약하여 왔고, 우리의 회원수도 2,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간 작품 활동의 양으로 추정하여 볼때 이러한 현상은 건축사지가 아직도 회원들의 협조를 크게 얻지 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상이란 결코 행위의 목적이 될수는 없으나 이러한 협회의 행사가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어 건축사지도 외국의 상업건축지들 처럼 좋은 건축작품으로 대부분의 지면이 채워지는 「볼만한」잡지가 되기 바란다.

본인의 이번 수상도 오직 다른 회원들의 검양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정진토록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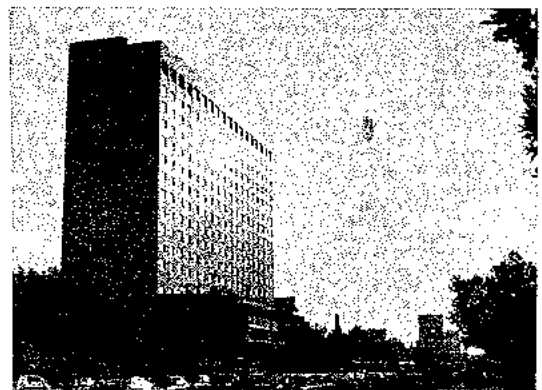
■ 設計概要

서울 가든은 도심지 호텔로서 업무용 여행객을 주고객으로 하는 영업방침 아래 설계 의뢰된 건물이다.

호텔의 이미지가 "서울적인 것"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두 가지 설계 원칙을 정하고 계획이 시작되었다. 호텔 건축은 상업 건축의 대표적인 것이어서 내외장을 막론하고 모든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지는 "가변적 장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호텔의 분위기가 그 건물이 위치한 지방의 칼터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는 마감 재료의 대부분을 서울산으로 하고 소도구의 디자인 까지 "로컬리티"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이 호텔의 위치는 주위 경관이 별로 없고 대지가 협소하여 건물의 내외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

로비로 부터 커피숄 및 그릴에 이르기까지 스페이스의 하이여라키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베이저 스페이스로써의 로비는 커피숄에 대한 외부가 되고 커피숄은 그릴의 바깥이 되어 서로가 자족토록 하고 가능한 많은 인공정원을 설치하여 이러한 대지 조건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했다. (1979年 11月号 参照)



入 選 (作品)

金 正 湜 (正林建築)

庁 舎

대지면적 : 28,954m² (8,774평)

건축면적 : 3,052m² (925평)

연 면 적 : 10,068m² (3,051평)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 진입부의 중앙부 홀은, 로타리의 광활한 공간감과 홀내 부공간 감간의 스케일상 현격한 전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간감을 확보하고, 홀 후면시야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홀 깊이감을 후면 조정녹대까지 연장시키려 했다.

청사 정면 광장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향후 여전에 따라 보행자 전용 광장으로 공원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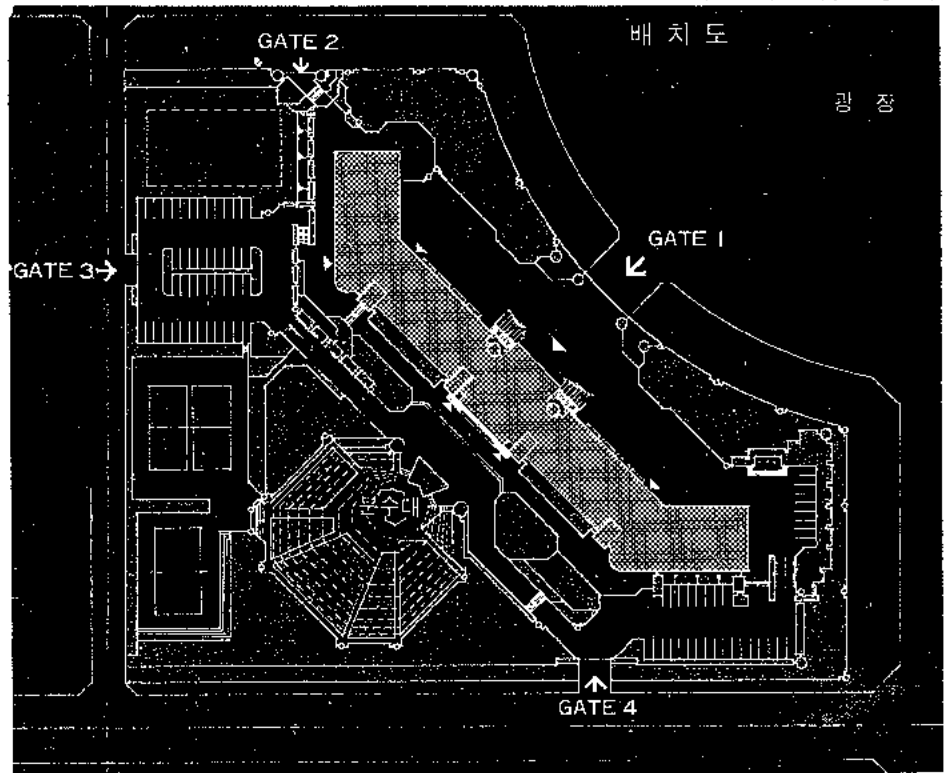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청사부지는 창원 신도시 중심축의 로타리(직경 350m)에 면한 1개 Block으로 도시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 놓인다.

건물전체 Volume계획은 대민 접근용이도, Image, 각 기능의 Zoning, Skyline등 주위조건을 감안하여 지층화를 원칙으로 했고, 로타리에 연하여 펼쳐지는 Panoramic View에 응하여, 집중형보다 선형으로 전개시켰다. 또 볼륨 전체의 선형성에 대해 Unity를 주기위해 중앙부를 집중적형태, 수직성으로써 Dominant하게 처리시켰다.

시청으로서의 전면 Facade는 하나의 고유한 변화하지 않는 Image는, (Symbol 기호)로서 시민에게 정착되길 바라고 따라서 수직 방향의 증축을 지향하고, 사적 성격인 건물 후면부에서 증축이 이루어짐을 전제하였다.

(1980年 4月号 参照)





病 院 所 在 地 : 서울特別市 江南區 盤浦洞
 設計 및 監理 : 韓一技術研究所 (機械設備)
 星都電設研究所 (電氣通信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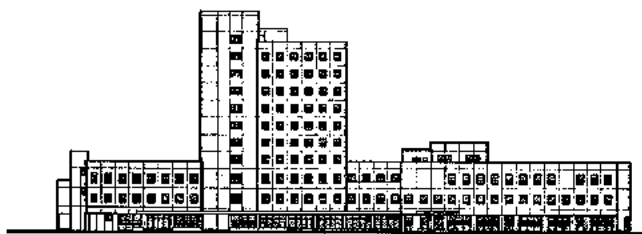
■ 設立趣旨 및 目的

國民醫療의 目標은 모든 國民에게 良質의 医療을 넓고 고르게 배부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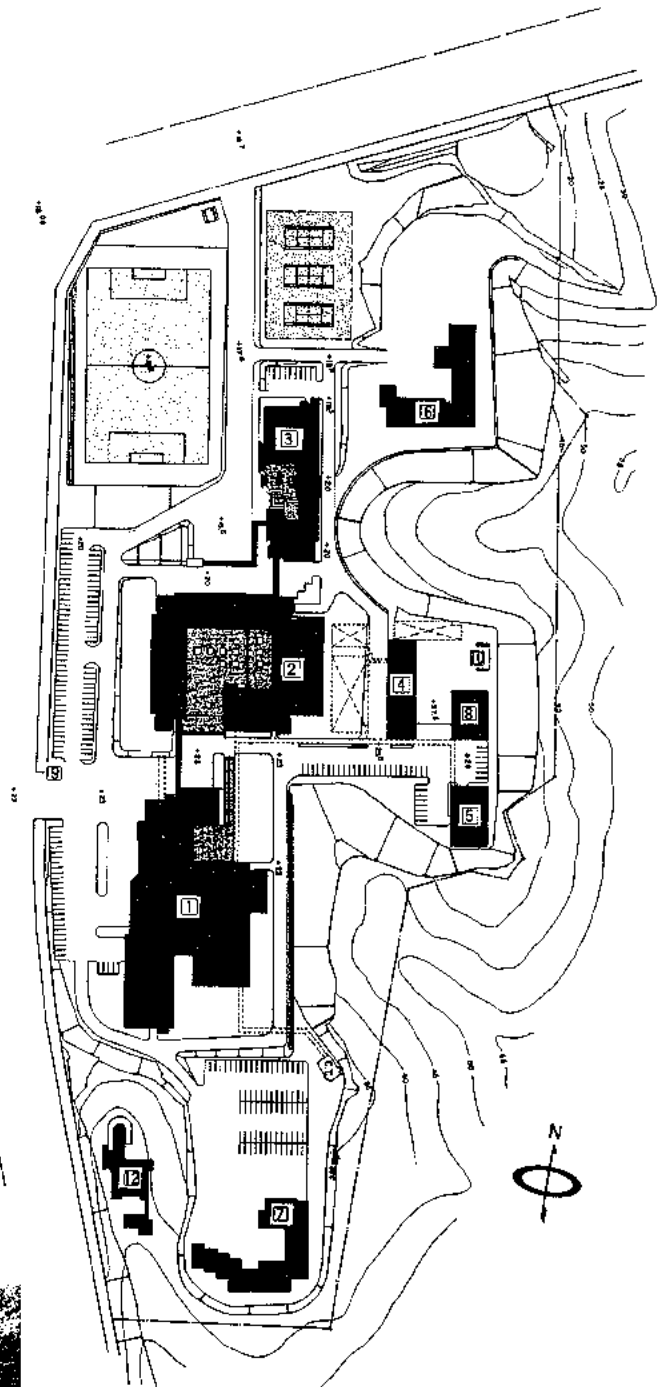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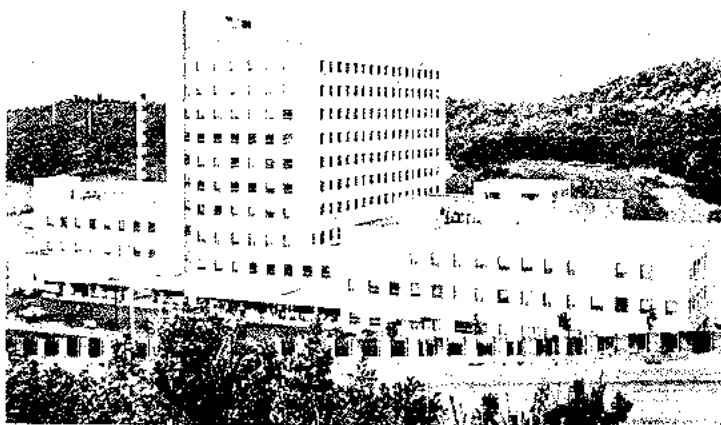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社會의 環境은 醫療人과 施設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反面, 地方都市와 農漁村은 病院 또는 診療所가 있더라도 有能한 醫療人의 確保가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을 解決하는데는 地域社會 醫學을 研究하고 實踐할 수 있는 醫療人을 養成하여 組織的이고 有機的인 運營을 할 수 있는 機關의 設立이 要請되고 있다.

이같은 時代的 要請에 따라 韓國天主敎難持財團이 建立한 本地域社會 綜合醫學 center는 專門診療所와 研究部 및 醫學教育部의 機構을 두고 있으며 中心으로 國內 各處에 所在하는 Catholic系 醫療機關이 必要로 하는 要員을 養成配置하고 計劃인 技術訓練과 情報交換을 行함에 그 設立目的을 達한 醫療機關으로 江南 聖母病院은 이 綜合醫學 center機構中의 專門診療部이다.

(1980年 9月号 参照)



정면도



배치도

- | | |
|---------|---------|
| ① 병원 | ⑦ 간호원숙사 |
| ② 의과대학 | ⑧ 동물사 |
| ③ 학생회관 | ⑨ 수위실 |
| ④ 파워프렌트 | ⑩ 옥외변전소 |
| ⑤ 근조부 | ⑪ 수위실 |
| ⑥ 학생숙사 | ⑫ 성당 |

入 選 (作品)

金 大魯 (韓美合同建築)



빌딩

대지면적 : 5,094.9m² (1,543.91평)
건축면적 : 1,534.10m² (469.88평)
연면적 : 31,334.54m² (9,495.32평)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7층

-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작품 1등상 수상
-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구 청구대학) 건축과졸업
- 한양공대 대학원 건축과 석사학위 수료
-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기사보 임명
- 일급건축사 면허증 취득
- 대한민국 정부파견 화란국 델후트 공대에서 조립건축 연구 및 영국,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벨지움, 불란서, 이태리, 터어키, 파키스탄, 각국 건축전학
- 한양공대 건축과 및 서울시 교육원 공무원 강사 역임
- 유엔공업 개발기구 (UNIOO) 초청 네마야코 코펜하겐에서 공업자재 세미나 한국대표 참석 및 홍콩, 태국, 필리핀 각국 건축전학
- 서울특별시청 종로구청 건축과장
- 한성프리트브(주) 설계실장
- 일본국 대성건설(주) 초청 동 연구소에서 조립건축 연구
- 한성프리트브(주) 사임
- 한미건축 기술공사 자영
- 기술사(시공) 면허증 취득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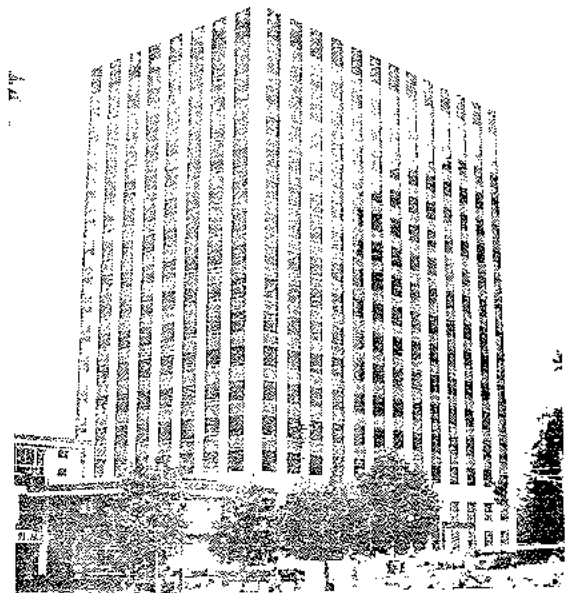
모듈스케일 (Module scale) 을 3.8m로 하여 기둥 및 보의 스패를 계획하고 평면계획은 코어 시스템 (core system) 을 채택하여 기능및 동선을 합리화 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건물의 4면의 외관은 동일한 규격의 Bronze창을 설치하여 적절한 자연채광과 균일한 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장은 P.C. 카텐일이며, 넓은 광장에 녹지대를 설치하여 인위적인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건물면적의 비원, 종묘 등의 고적과 잘 조화되도록 외관 색채등에 깊은 배려를 했다. 사무실의 평면기능을 위주로 고려하여 10.80m의 장스팬을 채택하여 하중의 일부를 기둥대신 코어의 시어월이 부담토록 하고 구조체는 23층으로 증축가능토록 설계했다. (1980年 8月 号 参照)

受賞所感

입선된 소감으로써 첫째 여러 회원들에게 미안함을 금할수 없다. 회지에 발표하지 않은 수 많은 우수한 작품이 있는데도 졸작인 본인의 것이 입선 되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 마련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하 여러 임원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 영광을 설계에 동참한 여러 직원들과 건축주에게 돌리고 싶다.

설계상의 기능·동선·조형미·기타 구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은 작품에 대하여 입선시켜 준 것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명령으로 알고 가일층 공부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져 한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住 宅

대지면적: 528m²

연 면 적: 181,99m²

면 적: 1 층: 96.04m²

2 층: 35.94m²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삼육건축연구소 근무
- 합동사무소 신신건축연구소 대표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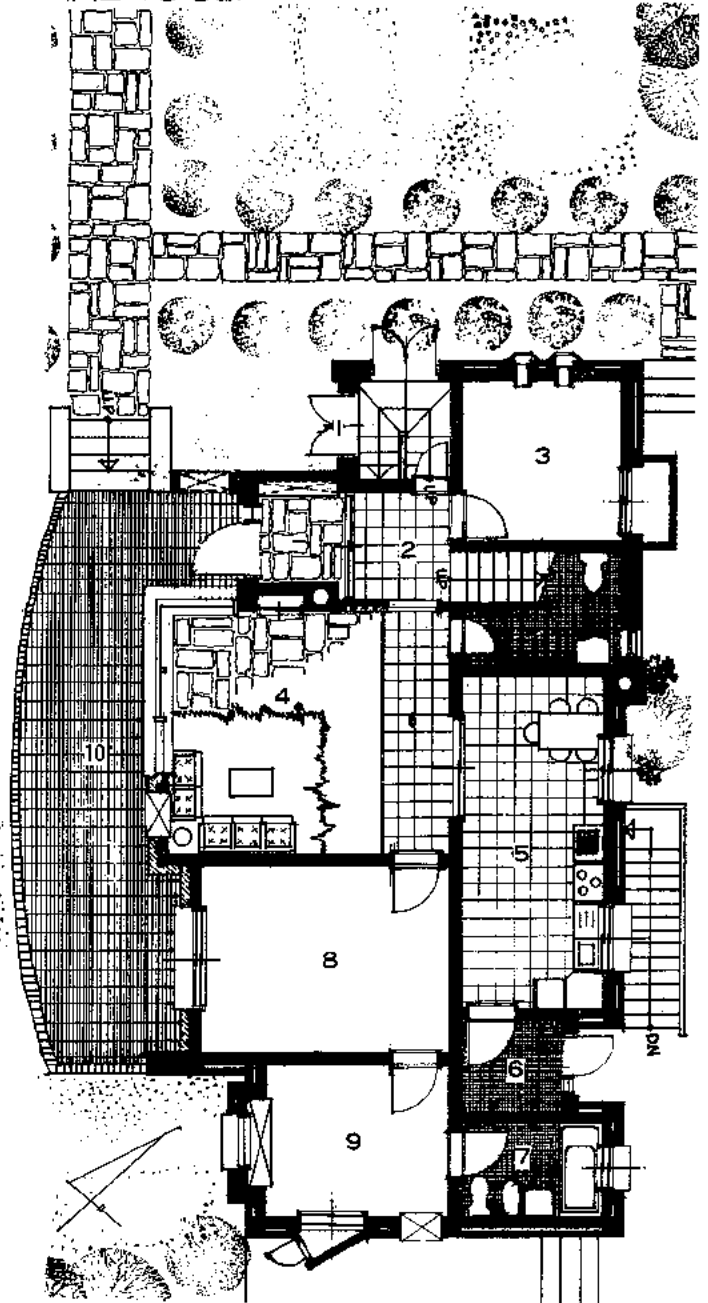
대지실적을 나갔을 때 서쪽이기는 하나 공원화된 능이 대문 옆으로 널리 펼쳐져 있어 신선한 내용을 맡으며 외형을 착상케 한 것 같다.

제한된 면적에서 되도록 동선을 줄여 활용공간을 살리려 하니 올망졸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민스럽다. 그래서 계단실과 2층거실 천정은 박공식으로 처리하여 Open 을 시켜 답답함을 덜어주려 했고, 아취와 사각창, 그리고 화단을 매체시켜 조형미에 신경을 쓰고 싶었다. 거실 바닥은 통로점 걸터 앉을 수 있도록 마루원목과 돌을 사용했으며 외부로부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내부로 유치시켜 보았다.

계획은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념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싶다. (1979년 12月号 参照)



배치도 1층 평면도



- ① 현 관
- ② 홀
- ③ 방
- ④ 거 실
- ⑤ 부엌·식당
- ⑥ 다용도실
- ⑦ 욕 실
- ⑧ 안 방
- ⑨ 서 재
- ⑩ 테라스

入 選 (作品)

金 錫 澈 (金錫澈建築)

社 屋

연 면 적 : 30,976.23m²

기준층면적 : 1,450.76m²

건 폐 율 : 30.27%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設計概要

도시 간선도로변의 고층건물로서 세가지의 의도가 있었다.

① 도로변에 연하는 도시기능을 지하1층-지상5층 까지로, 입체화 한다.

② 각 움직임과 수평의 움직임, 작업공간과 이동공간의 상대적 위계를 형상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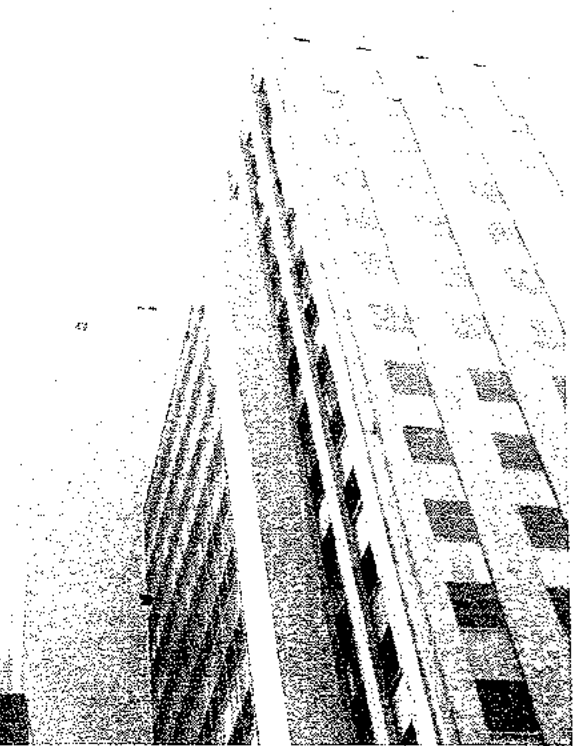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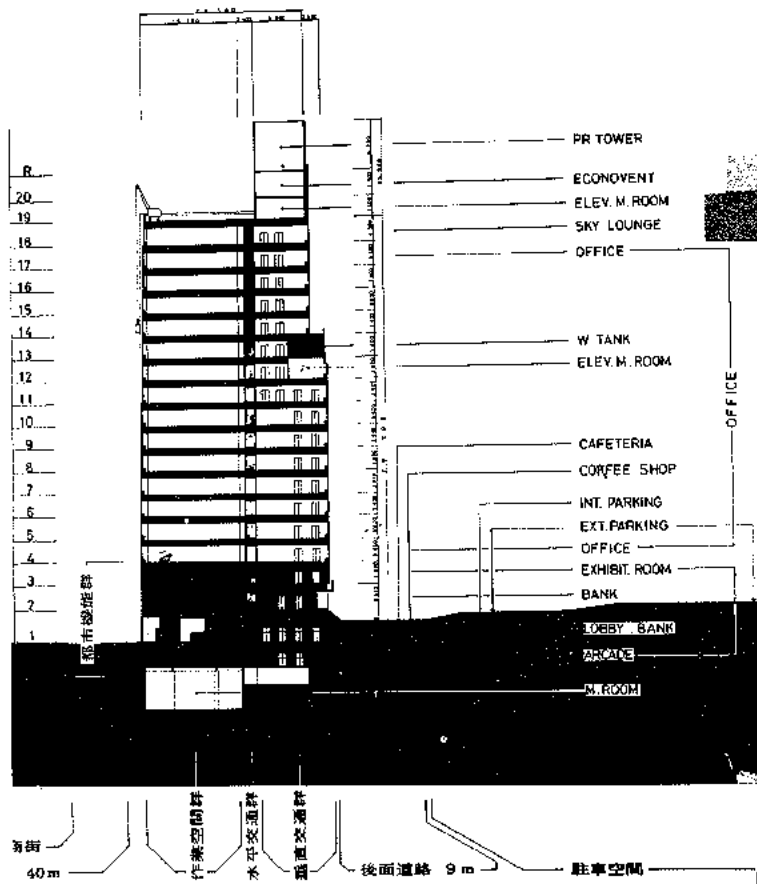
③ 건물의 입체감을 줄인다.

마치 병풍같이 도시의 한 분계로서 입지케한다. 상층부로 연속되어 가면서 채감되는 창의 정진적 전개나 기둥의 접힘은 그러한 의도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워지는 도중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집단참여의 자취들이 중요한 기조를 다들 자기들화 하였다. 5층까지의 도로화는 허가단계에서 무산되었고 기능군의 분절과 위계화는 설비체계와 구조 방식의 혼돈중에 일산되고 채감되던 캐스팅 알루미늄이었던 외관이 직립의 타일로 바뀌어지면서 도시적 전개의 형비는 우선 모양부터가 다른것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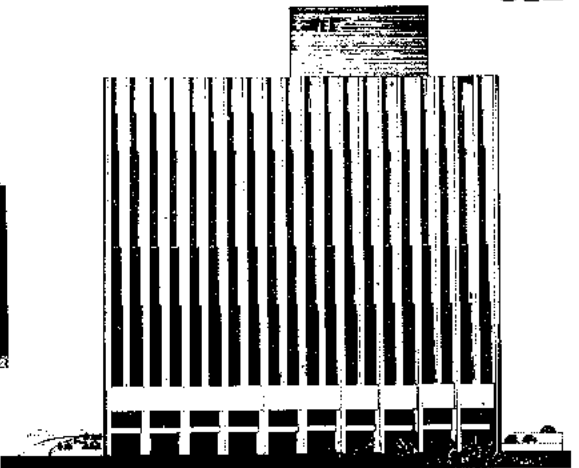
건축가는 생각해내고 그리는 안에는 물론 그것을 의도대로 구현케하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일에도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아직 프로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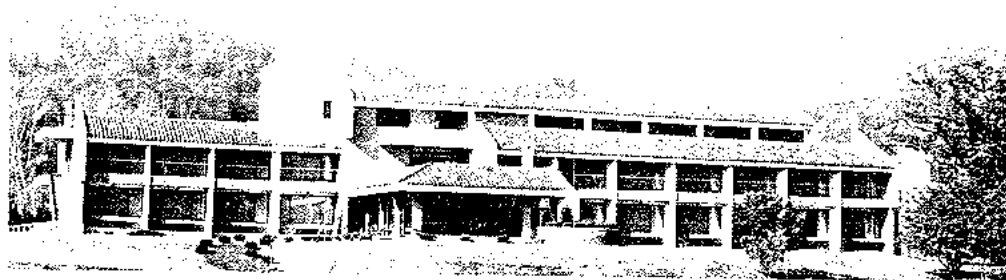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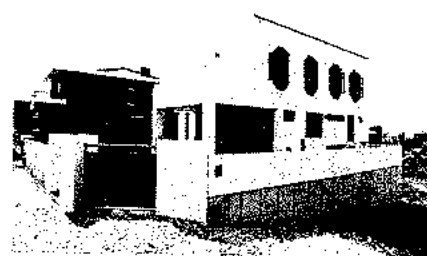
(1980年 9月号 参照)



주단면도

정면도





住宅 / 崔昌奎 ☐

住宅 / 朴東熙 ☐

☐ 空型 / 朴奎定



崔昌勳

(新進建築研究所)

종식이네 집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412.1m²

건축면적: 122.0m²

면적: 280.03m²

지상층수: 2층

지하층수: 1층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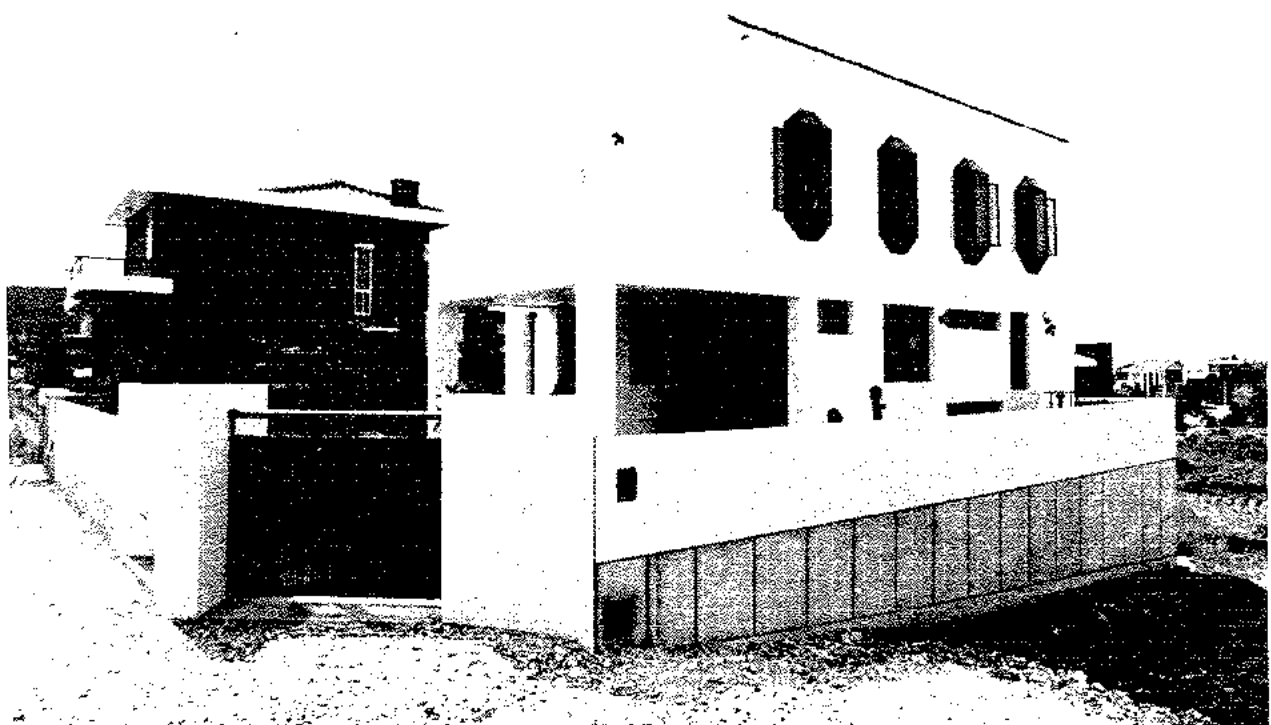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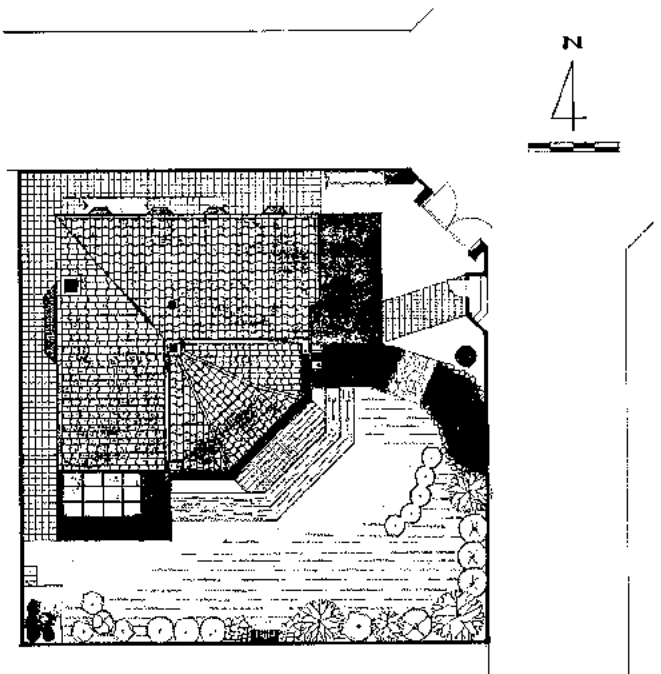
都市内住宅으로는 比較的 地대가 큰 편이나 正方形에 가까운 地는 對角으로 分割해서 東南向을 正面으로 했다. 모름지기 創作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造形이나 建物内에 새로운 秩序를 導入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周圍의 新開發地區로서의 流行性的인 造形이나 材料 및 大門의 類似性을 避해서 外部는 全白色의 타일로 하고 赤瓦를 이었다. 특히 江南地區에만 施行되고 있는 理解할 수 없는 官의 指示인 집을 形態의 制限을 可及的 離脫해 보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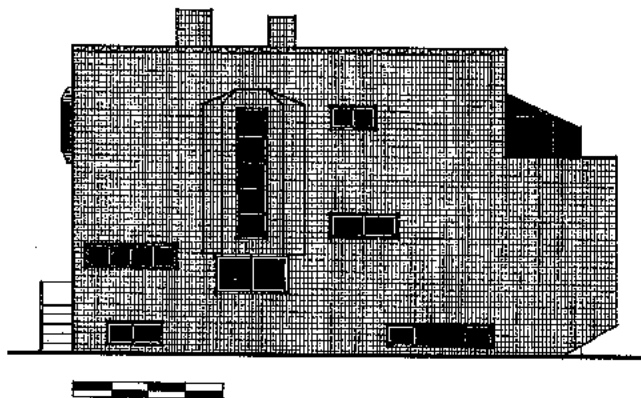
이 建物은 某銀行家의 住宅이지만 平面, 立面, 材料 使用 等に 建築主가 全幅的으로 設計者의 意圖를 받아드려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内部의 壁紙等의 紋樣이나 色調, 庭園의 一部分은 그렇지 못했다. 遠景은 意圖的으로 住宅답지 않은 住宅으로 했다. 이것은 우리 社會에서 住宅이 그 主人의 經濟力의 誇示나 社會的 地位의 階級章 같은 傾向이 있으나 이것을 避하기 爲해서이다. 住宅은 어디까지나 그 家族들의 보금자리이지 展示物이나 宣傳物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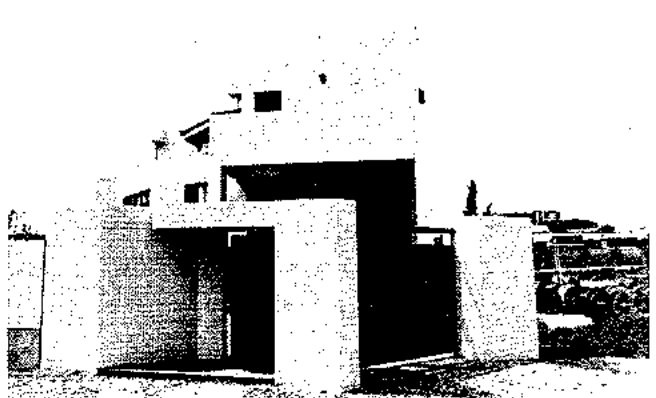
이 建物이 完成(真意의)되기에는 二·三年 더 經過해야 할 것이다. 잔디나 樹木 및 内部의 未完의 部分이 許多하기 때문이다.

배치도 및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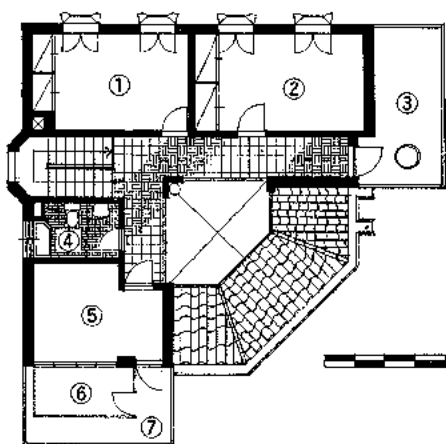




(上) 정면도 (下) 배면도



(上) 동남측 입면 (下) 동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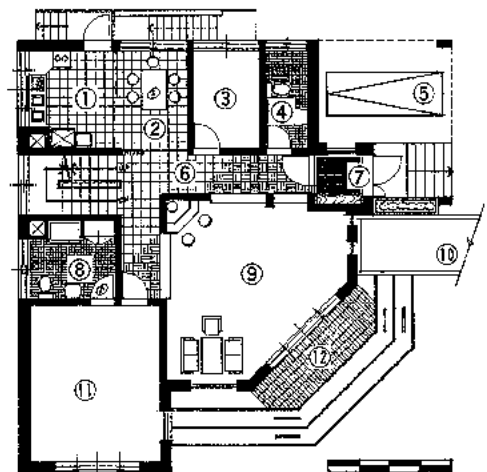


2 층평면도

- ① 침실
- ② 침실
- ③ 발코니
- ④ 화장실
- ⑤ 서재
- ⑥ 온실
- ⑦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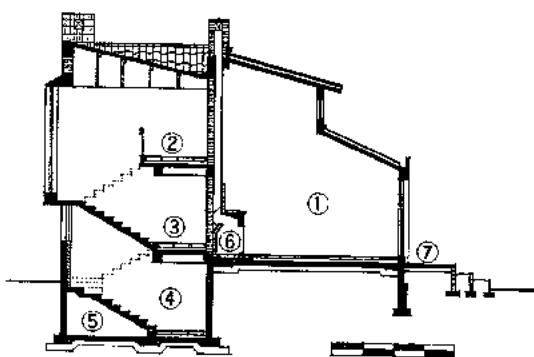
1 층평면도

- ① 주방
- ② 식당
- ③ 침실
- ④ 욕실
- ⑤ 차고
- ⑥ 복도
- ⑦ 현관
- ⑧ 욕실
- ⑨ 거실
- ⑩ 연못
- ⑪ 주인침실
- ⑫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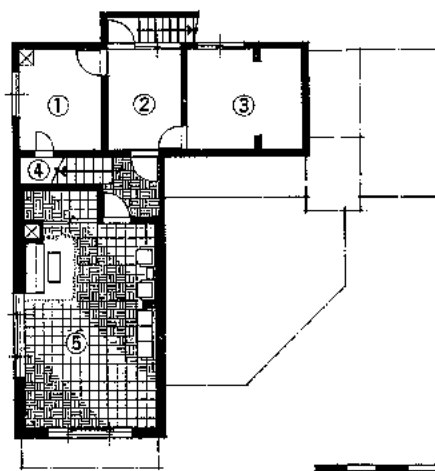
단면도

- ① 거실
- ② 복도
- ③ 복도
- ④ 휴
- ⑤ 창고
- ⑥ 벽난로
- ⑦ 테라스



지 층
평면도

- ① 보일러실
- ② 다용도실
- ③ 창고
- ④ 창고
- ⑤ 가족실





朴奎定
(中央綜合建築 朴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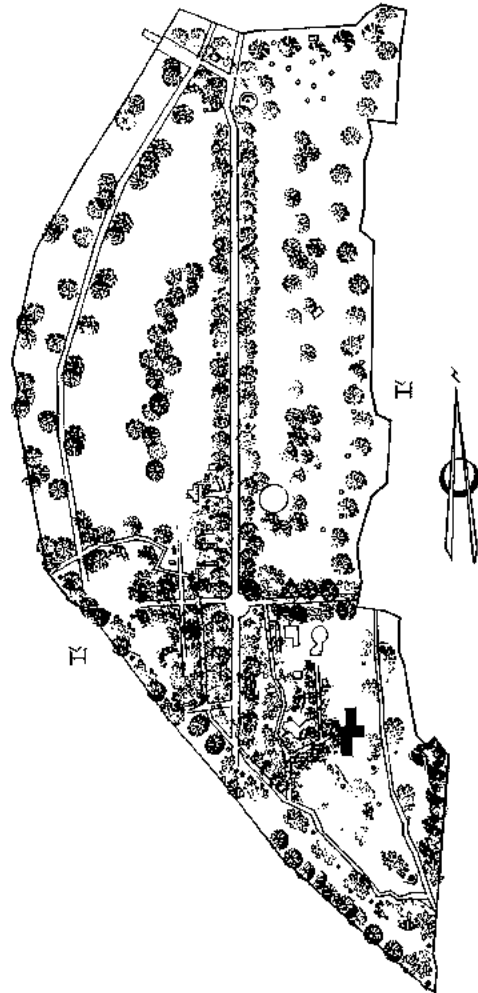
리포-트 호텔 建物位置: 江原道 春城郡 平面 芳荷里 198
(남이섬유원지) 地積面積: 383,295m²
建築面積: 816.00m²
延面積: 1,845.84m²
客室: 40客室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로 地下1層 地上3層

배치도

■ 計設概要

서울에서 2시간여거리 맑은 물과 산과 수목 잔디·남여노소 누구나 찾기를 즐기는 유원지.

복잡한 자기 생활에서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자기 집은 아닐지라도 따뜻함과 정다움이 자기집과 같이 느낄수 있는 곳. 그래서 자기를 재 定호할 수 있다면... 창밖의 느낌을 실내에서도 지속하고 싶고 옥상에 四面을 觀望할 수 있는 場所와 2層客室의 발코니는 어른대로, 어린이대로 자기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찾아오는 客을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目的物에 熱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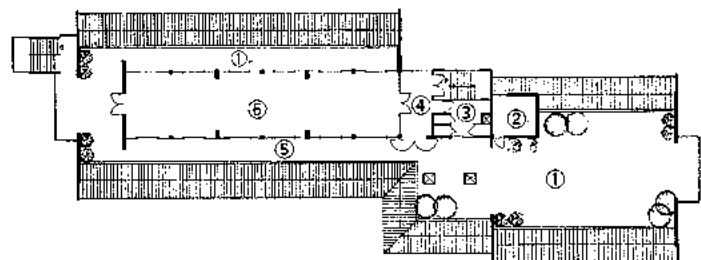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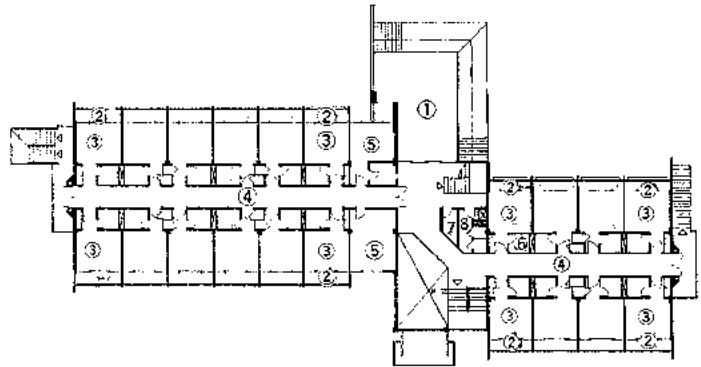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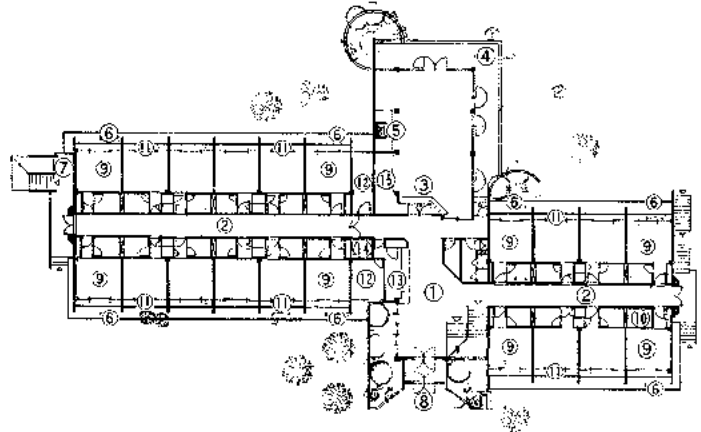


(上) 뒷면전경
(下) 객실외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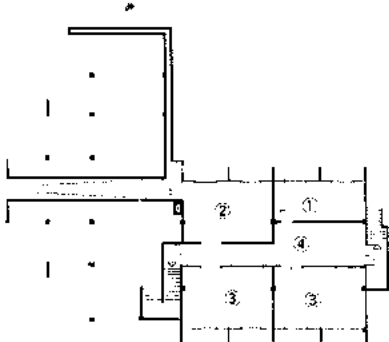


(上) 1층평면도 (中) 2층평면도 (下) 3층평면도

- | | | |
|----------|---------|--------|
| ① 현관로비 | ① 전망대 | ① 전망대 |
| ② 복도 | ② 베란다 | ② 물탱크실 |
| ③ 커피·숍 | ③ 양실 객실 | ③ 화장실 |
| ④ 테라스 | ④ 복도 | ④ 복도 |
| ⑤ 화덕 | ⑤ 종업원실 | ⑤ 전망대 |
| ⑥ 화단 | ⑥ 욕실 | ⑥ 세미나룸 |
| ⑦ 옥외계단 | ⑦ 창고 | |
| ⑧ 현관 | ⑧ 화장실 | |
| ⑨ 한실 운동방 | | |
| ⑩ 욕실 | | |
| ⑪ 화분받침 | | |
| ⑫ 종업원실 | | |
| ⑬ 후론드 | | |
| ⑭ 교환대 | | |
| ⑮ 카운타 | | |



지하층 평면도 ① 종업원실 ③ 창고
② 보일러실 ④ 복도





朴 東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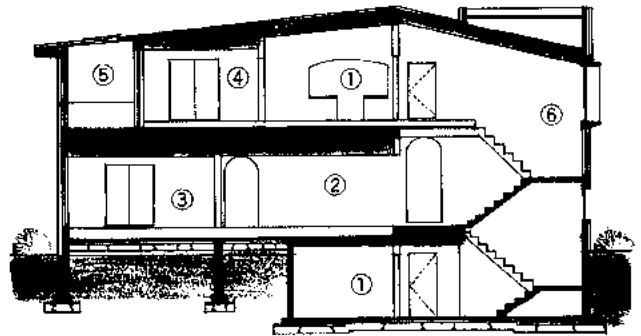
(東南建築綜合技術公社)

住 宅 소 재 지 : 동작구 동작동
 계획담당 : 신 정남 지층 : 79m²
 규 모 : 대지면적 : 471.1m² 1 층 : 160m²
 건축면적 : 160m² 2 층 : 120m²
 연 면 적 : 387m² 차고 : 28m²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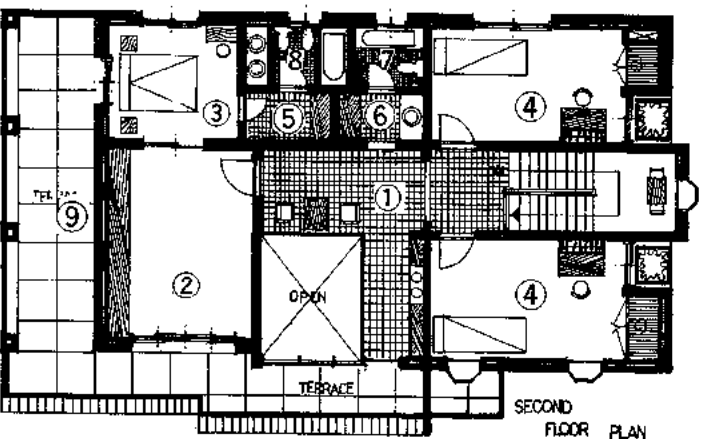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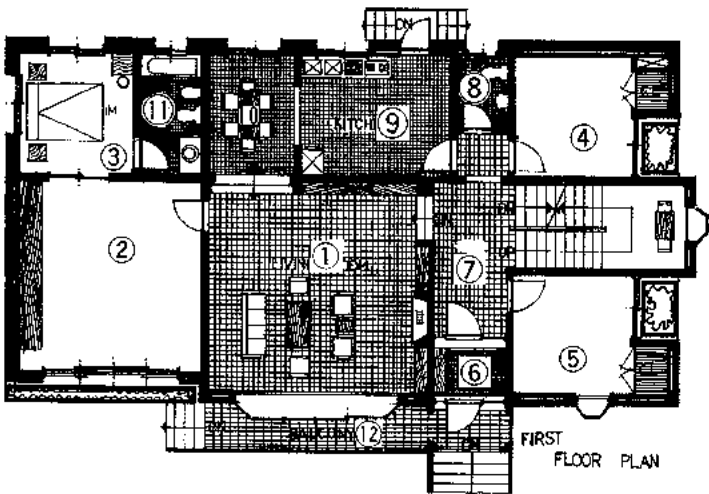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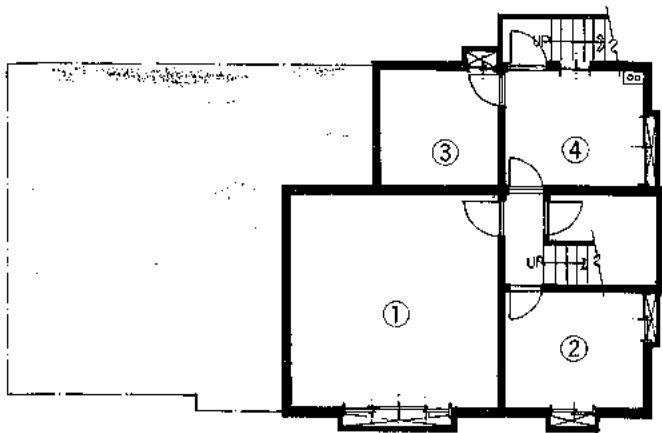
남서측에 경사진 산 북측인접선에 돌로 쌓인 축대 대지의 높낮이등 모든 여건이 불규칙적인 가운데서 하나의 공간과 조형의미를 창조해 내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생활공간과 자연공간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지를 수평 분리하되로서 하나의 형태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외관은 주위의 환경과 대조적으로 너무 육중한 감을 피하기 위해서 남측면에서는 오지벽돌로 아취의 타원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빛의 흐름이 포근히 감싸 주도록 하였으며 정면에서는 유리창틀을 돌출시키므로써 좀더 유머스럽고 고전적인 멋이 흐르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도로측 창말에는 화단의 설치와 계단실에는 수직으로 불박이창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실의 배치는 기능의 동선분리에 신경을 쓰므로써 이층에서는 아들과 딸들만의 생활공간을 일층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벽난로를 설치함으로써 훈훈한 정감이 서리게 하였으며 지하실에는 건축주 자신의 사업상의 관계로 홈-바를 설치하게 됨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의 호흡이 일치하였음을 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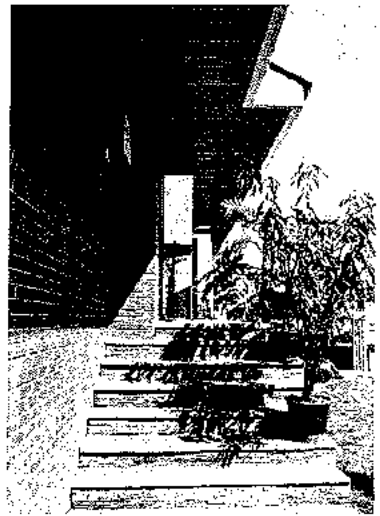


단면도 ① 홀 ③ 안방 ⑤ 아들방
 ② 거실 ④ 테라스 ⑥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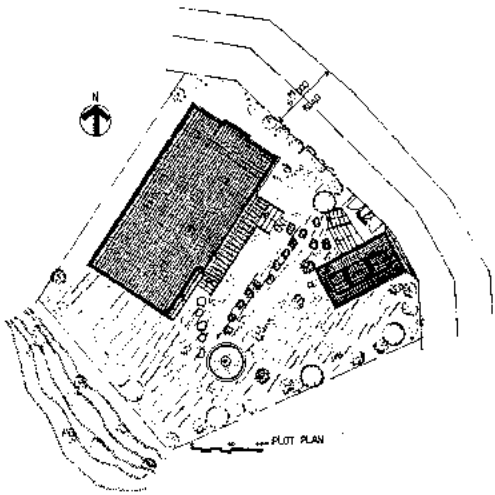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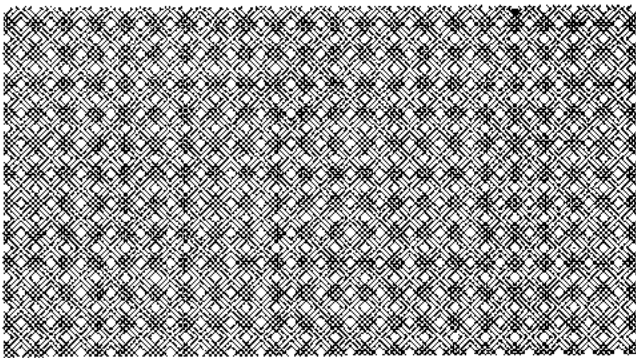
(上) 테라스
(下)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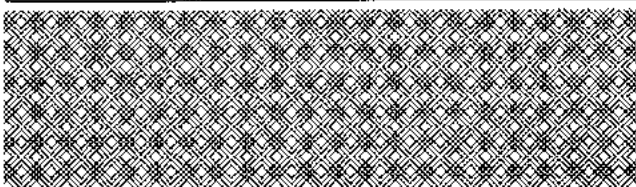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上) 1층 평면도 (中) 2층 평면도 (下)

- | | | |
|--------|--------|--------|
| ① 휴 썬 | ① 거실 | ① 이층홀 |
| ② 다용도실 | ② 주인방 | ② 아들방 |
| ③ 지하실 | ③ 주인침실 | ③ 아들침실 |
| ④ 보일러실 | ④ 가정부방 | ④ 공부방 |
| | ⑤ 손님방 | ⑤ 옷실 |
| | ⑥ 현관 | ⑥ 세면실 |
| | ⑦ 현관홀 | ⑦ 욕실 |
| | ⑧ 화장실 | ⑧ 욕실 |
| | ⑨ 부엌 | ⑨ 테라스 |
| | ⑩ 식당 | |
| | ⑪ 욕실 | |
| | ⑫ 발코니 | |





建築行政相談



1980. 10. 1 ~ 10. 31



相談時間: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相談電話: 72-7653, 7685

—— 施行令에 관한 事項 ——

문 1 : 주택의 지하실에 있어서 지면에서 얼마나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답 : 지하실 천정높이의 2/3 이상이 지표면 이하에 묻혀야 합니다.

문 2 : 합동건축 사무소에서 아파트 감리를 할수 있습니까?

답 : 아파트의 감리는 종합설계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문 3 : 4 종 미관지구 1층인데 건축선에서 3m 후퇴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인데 2층 증축이 가능합니까?

답 : 기존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은 3m 후퇴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존건물이 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문 4 : 연립주택은 몇층까지를 말합니까?

5층건물도 연립주택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답 : 연립주택은 3층까지만 지을수 있고 5층인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봅니다.

문 5 : 공업지역내 기존공장에 수위실을 증축할수 있습니까?

답 : 공장시설이나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가능합니다.

문 6 : 상업지역에서 예식장허가가 가능합니까?

답 : 건축법상으로 가능하나 서울시 방침상 잠정적으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문 7 : 교회도 준공미필 건물특별조치대상에 포함됩니까?

답 : 비주거용 건물은 본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8 : 건축사 연대 책임제로 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 : 국무총리 훈령 제 8 호에 의거 76. 12월에 서울 시내 일부 및 77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9 : 건축허가를 받은후 얼마기간내에 착공을 하여야 합니까?

답 : 착공기간은 명시한것은 없으나 1년이내에는 착공을 하여야 허가 취소를 받지 않습니다.

문10 : 건축 연면적이 3,000 m² 이상이고 바닥면적도 1,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시장)을 계획 중인데 8m, 6m, 6m 등 3면이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건축선에서 얼마씩 떨어져 건축해야 하나?

답 : 건축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3m에 1,000m² 초과마다 1m를 가산한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면 됩니다.

문11 : 일조권 완화규정은 지상에 보도된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 :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12 : 도로확장으로 매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건축할수 있습니까?

답 : 서울시의 경우 확장도로변경비 지침에 의거 도로 폭에 따라 잠정적으로 가건축을 허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법 제53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이 개정되면 완화가 할수가 있습니다.

문13 : 지역지구가 결정되지 않은 지방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전폐율은 얼마로 하여야 됩니까?

답 : 전폐율은 6/10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문14 : 사립국민학교를 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층수 제한은 얼마입니까?

답 : 건축법상 학교 건축물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은 없으며 가로 형태 제한을 할수 있는 전폐율 용적을 높이 제한 일조건 등을 적용합니다.

문15 :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입니까? 승인입니까?

답 : 5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승인사항입니다.

문16 : 충신로(사육신로 앞)변 25평 대지에 건축할수 있는 지요. (2종미관도로변 확장도로) 지상보도에는 가능.

답 : 2종미관 지구내임으로 현행규정상은 대지최소면적 330m²의 5/10이상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완화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17 : 주거지역에서 16m 도로측변이 4m 도로인 경우 가각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 8m이하도로에서만 가각 정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18 : 건물유지 관리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 준공검사후 매 2년에 한번씩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케하여 변경된 건축물의 구조 설비등의 도서를 작성하여 구청 건축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19 :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이 사업승인제도로 바뀌었는데 사실입니까?

답 : 50세대 미만 연립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서 사업 승인제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문20 : 주차장 면적산정시 주차장 설치 부분을 포함하여 주차갯수를 산정합니까?

답 : 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된 면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합니다.

문21 : 주거지역내 시장을 건축하려하는데 가능 합니까?

답 : 건축법상에는 주거지역내에서는 시장이 불가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장시설 용지로 결정고시 되면 가능합니다.

문22 : 대지 38평 건물 15평 단층에 2층 5평을 증축 할수 있습니까?

답 : 일조권 및 대지안의 공지법에 적합하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23 : 3층 연립주택에서 채광을 받지않는 부분의 대량 벽까지의 인동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 채광을 받지 않는 대량부의 인동거리는 6m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문24 : 대지 54평에 건축할수가 있습니까? 종로지역은 주거지역이며 4층을 건축 하려고 합니다.

답 : 대지 54평에 건축할수가 있으며 전폐율 50% 용적을 250%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여야하며 층수에 대해서는 실제서에 건축면적 연면적 일조권에 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25 : 경사로의 구배는 얼마로 해야 하며 계단 참 난간 등의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경사도가 1/8이하로 해야하며, 일반 계단에 관한 참 난간등의 규정을 경사로에 적용하며 근거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 20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문26 : 주거전용지역내 차고를 건축할수 있습니까?

답 : 주거전용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인 차고는 50m² 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27 :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공장용도의 건축물인데 외

벽에 단열재를 사용해야 인니까?

답 : 건축법 시행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에도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단열재의 두께는 시행규칙 법률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28 : 연면적이 약 500평방미터인 창고 건물인데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합니까?

답 : 6m 이상 떨어져서 건축해야 합니다.

—— 建築条例에 관한 事項 ——

(서울特別市)

문1 : 신설동에서 고층으로 사무실 건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주차대수 산정기준과 대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Car-Lift를 사용코자하는데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주차대수 산정방법은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의 업무시설이므로 연면적에 대해 150m² 당 1대분으로 산출하시면 되며 산출된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옥외주차장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Car-lift는 대지 이용율을 높이는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주차 이용율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최소한 주차수요가 많은데서의 행정청에서는 가급적 Ramp-Way로 처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Car-Lift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문2 :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얼마전 대지 면적의 제한이 조정되었다는데 일반지역은 어떻게 변경 됐습니까?

답 : 일반지역은 250평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녹지지역은 1,200m² 이내 풍치지구도 현재는 1,200m² 이내는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문3 : 강남지역의 상업지역인데 전폐율도 아직은 50%입니다.

답 : 상업지역(강남지구)에서는 60%로 완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4 : 1종 미관지구 후퇴와 전면 대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습니까?

답 : 주차장 설치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문5 : 연립주택 4세대 건축시도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0.625배를 띄우니까?

답 : 높이의 0.625배를 띄우셔야 합니다.

문6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계단을 설치할수 있으며 주차장도 가능 합니까?

답 :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계단등을 설치할수 없으며 주차장 규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주차는 가능합니다.

문7 : 장안평 준주거지역내 주차장 옥내의 비율 및 면적비는 얼마입니까?

답 : 옥내의 비율은 연면적 10,000m² 이상일 경우 50%이고 주차장 면적의 비율은 없습니다.

문8 : 2종 미관지구로서 50m 도로변 주거지역인데 1층 목욕탕 2,3층 여관 건축이 가능 합니까?

답 : 주거지역에서는 여관 건축을 할수 없으며 다만 준공한 대중 목욕탕은 가능합니다.

문9 :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때 주차장 설치기준은 얼마입니까?

답 : 종합병원이 아니므로 250m² 당 1대입니다.

문10 : 예식장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예식장 허가시 주차장 시설기준이 다르다는데 어떠한지요.

답 : 도심 5Km 밖에서는 예식장허가가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기준은 주차장 법상 연면적 150m² 당 1대이나 예식장은 66m² 당 1대의 비율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11 :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구분 해도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답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으며 주차장 정비지구의 예서는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어 기준이 용도별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문12 : 강남주거지역 전폐율 및 용적율은 현재 얼마입니까?

답 : 전폐율 50%, 용적율 300%입니다.

문13 : 미관지구 조례중 대지면적전물규모 소정거리 등이 개정된 내용이 어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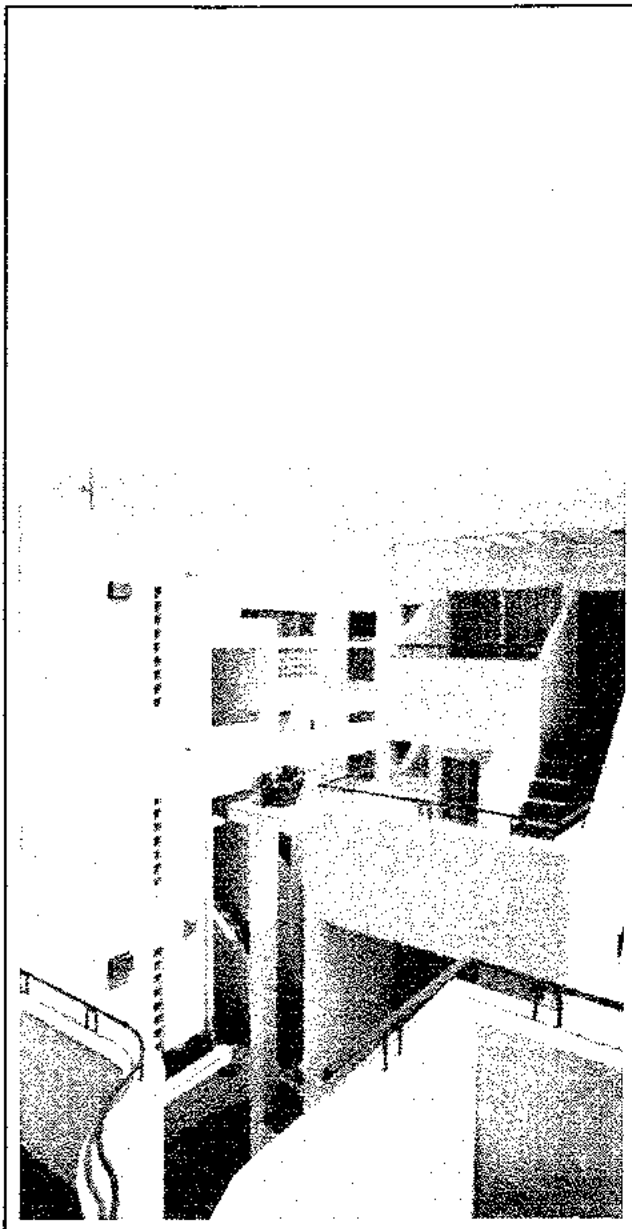
답 : 개정된 내용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변경되었으나 소정 거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문14 : 대지 100평에 연립주택을 지을수 있습니까?

답 : 주거지역의 경우 1세대당 25평을 기준으로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

月間建築情報

1980. 10. 16~11. 15



都市公園설치·施設基準 마련——전철부

어린이公園 450평이상, 都市自然公園 30만평이상

전철부는 10월16일, 어린이公園의 면적을 최소 450평, 都市自然公園은 30만평이상이 되도록 都市公園法施行規則을 공포했다.

都市区域에 설치하는 都市公園면적은 원칙적으로 인구 1인당 1.8평이상이 되도록 했고, 어린이公園은 유치거리 250m이내, 면적은 450평이상, 近隣公園은 유치거리 1,000m이내, 면적은 용도에 따라 3,000평에서 3만평 이상으로 했다.

또한 都市自然公園과 墓地公園은 土地의 자연조건 및 역사적 의의를 살릴수 있게 30만평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公園은 利用者가 쉽게 다닐 수 있게 3면 이상이 道路에 접하도록 규정했다.

大企業 申告土地 4億4,291万坪

建物は 1,021万坪——재무부 집계

10월16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大企業 및 企業人 소유 不動産申告는 마감일인 10월15일까지 1,216개 対象業체중 1,198개 업체가 신고를 완료, 98.5%의 실적을 보였다. 신고된 不動産의 규모는 土地 442,912,000평 建物 10,212,000평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이번 신고내용을 분석, 非業務用 처분촉진등 財務構造改善作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신고된 企業別 不動産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보장할것이며 非業務用 不動産처분에 있어도 강제보다는 자진매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大企業申告土地중 個人소유는 1億1千万坪

建物は 61万9千坪——은행감독원 집계

9·27조치에 따라 10월15일자로 신고 마감된 大企業 및 企業人 소유 不動産가운데 企業主·大株主 및 直系尊卑屬등 개인소유 土地는 무려 1억1,163만평으로 전체 신고토지의 25.2%에 달한것으로 집계되었다.

10월17일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申告된 土地 442,912,000평 중 企業所有는 전체의 74.8%인 331,273,000평, 個人 1,209명의 所有分은 111,639,000평으로 집계되었다.

建物の 경우는 전체 申告分 10,212,000평중 企業所有는 9,593,000평, 個人所有는 619,000평으로 밝혀졌다.

個人명의 부동산중 土地 29,495,000평 (신고분의 26.4%) 과 建物 6,000평은 자진처분할것으로 이번에 신고되었다.

서울시 未竣工건축물 규제—過怠料징수 條例

규모와 위배정도에 따라 8만~30만원

서울시는 10월17일, 50평 이하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竣工未畢 既存建築物 정리에 관한 過怠料基準 및 徵收條例」를 확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과태료는 住宅의 延面積을 기준 建蔽率위배의 경우(容積率의 경우도 같음) 超過建蔽率이 ▲10% 미만일때는, 45평이상 주택은 20만원, 35평이상은 15만원, 25평이상은 10만원이며, ▲10~20%일때는, 25만원·20만원·15만원, ▲20% 이상은 30만원·25만원·20만원 등이다.

높이제한 위배의 경우는 超過比率로, 소정거리 위배의 경

우는 未達比率로 따져 ▲10% 미만일때는, 45명 이상 5만원, 35명 이상 4만원, 25명 이상 3만원, ▲10~20%일때는, 15만원·12만원·9만원, ▲20%이상은 20만원·16만원·12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했다.

이밖에도 기타규정을 어겨 준공미필된 건축물은 연번적에 따라 10만원·9만원·8만원씩의 과태료를 내면 강제해수도 독 규정했다.

서울시는 '81년 1월 4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申告를 받아 과태료 징수절차를 거쳐 일괄 강제해수하기로 했다.

釜山地下鉄 1号線, 10月20日 起工

총연장 22.5km, 2,650원 들여 85년完工

300만 釜山市民의 숙원인 釜山地下鉄 1号線 建築工事 起工式이 10월20일 시공현장에서 거행됐다.

西区 九德運動場-忠武洞-市庁-西面로터리-楊亭로터리-연산로터리-教大앞 東萊區久瑞洞을 잇는 길이 22.5km의 釜山地下鉄 1号線은 총공사비 2,650억원을 들여, 오는 '85년까지 3 단계로 건설된다.

또 地下鉄 1号線중 15.8km는 地下로, 6.7km는 地上으로 건설하고, 구간 내에 정류장 2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大都市圈整備法을 제정하기로

国土의 균형발전, 人口分散촉진책

정부는 国土의 균형있는 발전과 人口分散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大都市圈整備法을 제정할 방침이다. 10월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전국의 大都市圈整備와 新都市開發·人口誘発地域의 이전 등 광범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全國의 大都市圈을 개발용도와 전망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 整備促進地域·開發誘導地域·開發規制地域·環境保全地域 등으로 나누어 国土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 12개都心再開發地區 해제

철거대상·不良·無許建物 陽性化등도

서울시는 10월20일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했다. 최사장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기 위해 都市計劃이란 公益과 住民의 私益이 조화되는 측면에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都心再開發事業 개선...75년경부터 都心再開發事業 予定地區로 묶여온 宗廟·長沙·觀水·鍾路5街·光熙·西界·麻浦·箕井지역등 8개地域 6만여명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법적으로 地區指定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치로만 建築行為가 통제돼온 곳이다.

또 시내 32개 都心再開發地域중 지정되지 2년이 넘도록 事業計劃이 결정되지못한 明洞2街·新門路2街·南大門路5街·逢萊洞지역등 4개지역을 해제 조치했다.

▲再開發地域 改·補修 허용...再開發事業地區내에서 일제통제돼오던 改·補修行為도 사업시행에까지 改·補修할 수 있게 했다. 즉 △有許建物은 改補修는 물론 増·改築 및 用途變更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無許建物은 기존건물의 면적 범위내에서 改補修는 허용하나 増·改築은 통제, △재개발지역내의 각종 無許業所중 등록대상 업종(

理美容·簡易酒店·飲食店·助産所·藥局·연탄판매소)을 양성화.

▲不良住宅...불량주택 재개발대상 총 227개 지구 약 13만호 중 적법한 私有地위에 있는 양호한 有許建物이 들어서있는 지역은 해제된다. 또 공공시설이 완비되고 건물개량은 요치않으나 國公有地에 있기때문에 地籍이 未整理상태로 돼있는 지역은, 개인에 불하, 地籍整理후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한다. 이경우 해방되는 것은 약 4~5만동.

이밖에 양성화 및 현지개발사업지구로 장기간 竣工未畢된 건물(약 26,00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심의후 합법화한다.

▲無許可建物...고지대에 위치한 98개 철거지역내의 약 3만여동중 이미 도시계획상 公園·綠地로 결정된 지역이라도 保存價值가 없는 公園·綠地는 과감히 풀며 철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시는 금년말까지 98개지역을 정밀 현장답사, 공원·녹지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가려낸다.

騒音規制基準을 새로 정하기로 —서울시

버스중점·학교·병원등 64개소 실태조사

서울시는 현행 環境保全法에 공장소음(허용치 45 데시벨)에 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뿐, 자동차 소음이나 敎會 종소리·電波商 소음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10월20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市内버스終點·學校·病院 등 64개소에 대한 騒音實態調査를 韓國標準研究所에 用役,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정한 騒音規制基準을 토대로 騒音規制地域을 새로 지정하는 한편 소음 發生源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環境保全法의 보완을 정부에 진의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美國環境庁의 조사방식에 따라 소음자동측정기로 대상지점 주변의 소음을 1시간 단위로 24시간 측정, 이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과 주변지형을 함께 조사해 이 수치를 컴퓨터로 처리키로 했다.

조사대상 지점은 학교(초·중·고·대)44개소, 병원 10개소, 아파트 4개지구 및 버스중점 6개소 등이다.

觀光호텔新築 극히 부진, 목표의 26%

경제불황 장기화 영향등으로

10월21일 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완공예정이었던 호텔은 전국 25개에 3,397실이었으나, 10월말현재 완공된 호텔은 겨우 9개 호텔 896실로 26%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觀光호텔 건설부진은 外來觀光客이 대폭 줄어, 관광시즌인 10월에 들어서도 1일평균 입국자수가 3,087명으로 작년동기 3,842명에 비해 80.4%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제불황의 장기화, 9·10월의 콜레라 발생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觀光外貨收入増進도 목표의 3억2천만달러의 67%에 머물고, 觀光호텔利用率도 損益分岐点인 56%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올해 觀光振興基金 130억원을 배정했는데 호텔建築에 충분한 보조가 못되고 있으며, 業界는 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500萬戶 長期住宅計劃의 細部計劃 지연

부처간 財源調達등에 異見 대립으로

오는 91년까지 500만호를 건설키로한 長期住宅建設에 필요한 財源調達方案과 建築景氣 부양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 등 관계당국간에 異見이 심해 細部轉行 計劃作成이 지연되고 있다.

10월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國民投資基金의 住宅資金으로의 일부 轉用분제를 둘러싸고 건설부는 그 基金의 一定率을 住宅資金으로 쓸 수 있도록 國民投資基金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는 이 基金의 대부분이 이미 重化學投資에 투입돼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이 基金의 需要가 막대하기 때문에 住宅資金으로의 轉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住宅借款의 導入에 있어서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이의 導入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商業借款의 導入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재무부는 住宅借款 導入擴大에 따른 通貨增發을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美觀地區 建築規制 완화

最小宅地面積의 1/2 넘으면 심의후 허가

10월 24일 서울시는 현행 建築條例를 개정, 현재 美觀地區 내에서 最小宅地面積이 제 1종 美觀地區는 200평, 제 2·3종 지구는 190평, 제 4종 지구는 60평, 제 5종 지구는 75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宅地의 위치 또는 특성으로 보아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最小面積의 절반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住宅등 建築許可를 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서울시의 건축허가요건 완화조치는 빈터로 놓고 있는 땅을 규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데,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 보다는 앞으로 시행될 都市計劃 예정지 등에서 특히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最小宅地面積 미달로 竣工未畢된 경우

주변 林野·田·畝으로 보충하면 救済해

서울시는 10월25일 宅地面積 50평 미만의 住宅중 “宅” 이외의 地目으로 돼 있는 土地를 확보해 건축법상의 最小宅地面積을 갖출 수 있는 住宅에 대해 기존대지를 포함 최고 50평까지 形質變更 허가결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宅地로 地目變更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江北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27평 미만인 住宅도 地目이 畝·田·林野 등으로 되어있는 인근 土地를 확보하면 27~50평까지 대지를 갖출 수 있어 竣工檢査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江南地域의 대지면적 50평미만의 住宅도 이같은 절차로 50평까지의 宅地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地目이 畝·田·林野 등인 토지를 사실상 宅地로 사용하고 있는 住宅은 이 조치로 宅地로 地目變更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많은 小住宅들의 最小宅地面積규정에 미달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登記도 할 수 없어 財産權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100평 미만의 小筆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事業地, 공공건축물의 敷지에 대해서는 土地形質變更

度許可申請서에 내게 돼있는 工事予置金(평당 500원)을 면제키로 했다.

6개군 81년에 市로 昇格예정

人口 50만 이상 市는 指定市로 - 내무부

내무부는 81년에 人口 5만 이상의 18개 군중 6개 군을 市로 승격하고 서울 九老区 溫水洞 등 6개 지역의 市·道·面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人口 50만 이상의 市에 대해서는 財政自立度등을 고려, 8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指定市로 정해 道の 지휘·감독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28개 市·郡의 경계와 39개 郡·面의 경계도 연차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내무부가 10월25일 마련한 81년도 市 昇格 대상 6개군은 ▲所下邑(경기始興郡), ▲金海邑(경남 金海郡), ▲井州邑(전북 井邑郡), ▲西歸浦邑(제주), ▲公州邑(인접지 일부 편입·충남), ▲羅州邑(榮山浦편입·전남) 등이다.

住公아파트 서울地域 建設을 再開

鐵山里 등 후보지 물색중, 모두 分讓用만

10월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수도권 인구억제 및 택지난과 관련 금년사업을 마지막으로 서울 地域에서는 더 이상 住公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으나, 서울 地域의 住宅不足率이 42%나 되고 公共住宅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주택난이 더 심화될 실정이기때문에 81년도 住公아파트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번두리인 京畿道始興郡 鐵山里 등 3~4 개소에 후보지를 물색중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地域에 건설된 住公賃貸아파트가 投資財源 회수를 위해 대부분 1년후에는 分讓되는 모순을 시정키 위해 처음부터 賃貸用은 건설하지 않고 모두 分讓用만 건설키로 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團地에 運動場 설치케

문교부-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여가선용 방안

문교부는 10월29일 임시제도의 개혁으로 여가선용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업에서도 사원의 복지향상 및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하는 등본가 증가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선탄지에 166㎡(50평)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1000 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운동장을 테니스장 2면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것을 골자로 하는 「體育活動을 통한 靑少年余暇善用方案」을 마련 발표하였다.

舊工을 고의로 지연하면 建築許可 取消

악덕地主 空閑地稅 탈세행위 막기 위해

10월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부 악덕 土地所有者들이 建築許可를 받은 토지는 空閑地稅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 建築物를 건축할 의사도 없으면서 일부러 建築許可만 받아놓고 工事着手期間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脱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장기간 着工 하지 않을 때에는 建築許可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工事着手期間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었다.

人口 및 住宅센서스 10/30~11/8 실시

人口21개항목, 住宅11개항목 조사

금년도 人口 및 住宅센서스가 10월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센서스는 우선 10월30~31일 양일간 조사원들에 의한 家口 確認·調査區 설정 등 준비작업을 끝내고, 11월 1일부터 本調査에 착수하여 ▲人口에 관한 21개 항목, ▲住宅에 관한 1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경제기획원 이번조사를 위해 약 6만명의 조사원을 투입, 전국을 11만개의 소지역으로 분할하고 이를 다시 11만개의 調査區로 나누어 정밀지도를 작성했으며 약 1,100만장의 調査票와 40여종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서울주위에 15~30만 小衛星都市 건설

全대통령지시 晝室綜合運動場 83년까지 完工

全대통령은 10월3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서울시도의 人口集中현상은 전술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 따라서 交通網을 확충근대화해서 人口 15만~30만 정도의 小衛星都市를 건설하는 문제를 장기계획을 세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학교·우수교수·중앙관공서 등을 지방 소산시켜 人口를 줄이는 문제의 검토, △都市計劃은 한 번 확정하면 변경하지말것, △86년 완공예정인 서울人公園 완공복표를 늦추더라도 晝室綜合運動場을 예정대로 83년말까지 완공할것, △市内 小規模公公園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도록 할것, △유아교육의 일환으로 영세민 거주지역에 치중해서 어린이집을 지어 나가도록 할것 등을 지시했다.

서울 주변 小衛星都市 구체적으로 검토

건설부——서울서 電鉄 1시간 地域에

정부는 서울주변에 人口 15~30만의 衛星都市를 건설토록 하라는 全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 주변의 邑·面 소재를 위성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1월 3일 建設部 관계자는 새로운 衛星都市 후보지로는 서울 都心에서 電鉄로 1시간내(약 60km)의 거리이고 이미 생활환경이 어느정도 갖춰져있는 邑 面 소재지가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다.

서울 綠地地域 地価 크게 下落

企業不動産申告·宅地法 제정등 영향

大企業소유 不動産申告, 宅地開發促進法 제정등에 영향을 받아 서울의 綠地地域의 地価가 크게 下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매가가액의 하락과 함께 賣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江南區內 南部循環道路邊 이남 浦二洞등의 경우, 自然綠地地域은 50m도로 예정선 주변 商街 후보지가 지난 1월의 평당 18~20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떨어져 呼價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住宅후보지는 평당 12~13만원하던것이 거의 반값인 6~7만원선에서 呼價되고 있으며, 京釜高速道路邊에 가까운 곳에서는 평당 6만원 이하의 賣物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自然綠地地域의 賣物은 300~800평짜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 하락에도 원매자가 없어 거래는 좀처럼 성립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共同住宅등 建築材料

KS표시품 사용의무화 品用 확정

정부는 아파트·연립주택의 날림공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표시품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11월 6일 건설부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KS건축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라왕베니어합판, ▲수도용 아연도 강판,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 ▲우마용 소형 스위치류, ▲콘센트 및 플러그 등이다.

李財務·經濟治性化對策을 발표

在庫金融/金利引下/與信공급/雇傭확대등

11월 8일 李 재무부장관은, 침체상태에 빠진 경기의 부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골자의 재정금융대책의 시행을 발표했다.

▲銀行 預貸金利 引下: 예금 21.9%→19.5%, 대출 22%→20% 등.

▲通貨·與信供給 확대: 80年 總通貨增加率 25%→27.8%, 4/4분기 國內與信공급 2,700억원 확대가능.

▲特別消費稅 時限附 引下: 家電製品· 소형自動車등 대폭 인하(6개월간)

▲健全企業 資金支援 확대: 健全企業들이 在庫증가로 경영난에 빠진 경우 기존대출 상환연기 등 지원. 신규자금지원(1,000억원 계획)

▲在庫販売 需要者 金融: 내구소비재와 鉄筋등 原資材 資本財, 승용차등의 수요자에 대해 80年中 300~500억원을 할부 금융으로 지원.

▲보일리代替資金 지원: 노후 보일리 代替資金 2,000억원금융 지원.

▲企業의 非業務用 不動産 매입: 土地開發公社 土地債券 年內 500억원, 81年 2,000억원으로 매입하여 財務構造 개선유도 등.

▲公共投資 확대로 雇傭확대: 내년 予算에 책정된 公共事業을 年初 앞당겨 早期執行, 조달청 未支拂債權 약 170억원 조기지불.

아파트地區 開發基本計劃 뒤, 開發에 착수토록

건설부,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개정 방침

11월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파트의 量的 건설에만 치중한 결과 아파트團地의 생활환경이 삭막해지고 景觀을 고려않은 건물의 배치등으로 주거환경은 획일적으로 왜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에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을 개정하여 시장·군수는 아파트地區 指定의 告示가 있는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地區의 構成 및 土地利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配置·建蔽率·容積率·높이·隣棟거리·道路와의 關係, ▲街路網·綠地空間·公共處理施設 등 기타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사항 ▲開發事業의 施行計劃에 관한 사항 등 아파트地區 開發基本計劃을 수립하고난 뒤에 개발에 착수토록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建築法施行令 대폭 개정

정부는 11월1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0,062호)

을 공포 이날로부터 시행 하였다. 이 개정령은 1962년 제정후 13번개의 개정으로서 광범위한 조항에 걸친 대폭적 개정이다. ("改正令 全文"별항 本誌 75page. 참조)

서울시, 都市가스를 暖房용으로 보급계획

年内 示範아파트의 成果를 보아 확대

서울시는 11월 3일 증설된 시영 都市가스工場이 1日 15만 m³ (중전 5만 m³)를 생산하게 된 데다 大韓都市가스도 5만 m³를 생산하는 등 量産체제를 갖추어, 난방용으로 都市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江南區瑞草洞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96호분을 모두 都市가스난방으로 설비하여, 경제성과 안전도 및 열효율성 등을 검사한 후, 성과가 좋으면 都市가스 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취사용 각종연료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5인가족을 기준으로 1개월당, 연탄 6,900원, LPG 14,025원, 石油 9,090원, 전기 11,574원 都市가스는 6,350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해가 전혀 없고 값싼 都市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東西高速道路 路線확정, 84년 완공예정

達成玉浦→高靈→陝川→居川→咸陽→南原→淳昌→潭陽 171.5km

정부는 11월 13일 東西高速道路 (大邱~光州, 171.5km)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 1,995억원 (81년 기준가치, 조사업제비 35억원 별도)을 투입 81년 10월 착공 84년 9월에 준공하게 될 이 고속도로는, 用地는 4車線을 마련하지만 우선 2車線만 시공한다. 이것이 완성되면 주행시간은 현재의 5시간에서 2시간30분대로 단축된다.

건설부가 圖上計劃을 마치고 확정된 바에 의하면 慶北 達成郡 玉浦面의 邱馬高速道路를 시발점으로해, 慶北高靈·慶南陝川郡治蠟面·居川·咸陽·全北 南原·淳昌등지를 통과해 全南潭陽에서 湖南高速道路 支線에 연결된다.

건설부는 東西高速道路에 9개소의 出入施設 (인터체인지)과 24km의 登坂車線 (화물자동차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기 위한 3車線)을 마련하는 한편 3개소의 터널 (총 2.1km)을 뚫고 100m이상의 긴 교량 18개 (총 4.5km)를 놓는다.

出入施設 9개소는 玉浦·高靈·海印寺입구·居川·咸陽·智異山입구 (南原郡 引月面)·南原·淳昌·潭陽으로 확정했으나 인터체인지로 할것인지 간이시설로 할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KS표시 鉄筋사용 義務化 是正을 촉구

鉄鋼工協·需給차질 中小製品 販路막혀

11월 13일 韓國鉄鋼工業協同組合에 따르면, 당국이 공동주택등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축자재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非KS표시품이라도 工業振興庁 검사합격품이면 공동주택등은 물론 공공건물과 調達官需購買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당국에 건의했다.

동조합은 鉄筋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150만톤중 中小企業 제품비중이 6%, 大企業 非KS표시품이 3%를 차지하고 있는데 KS표시품 사용을 의무화하면 中小企業은 도산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또, KS표시허가에는 平電炉施設을 갖추게 되어 있어 小型圧延施設만을 갖춘 中小企業들이 KS표시허가를 받

을 수 없는 실정이나 工業振興庁에서 수시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KS에 합격되는것은 동등하게 인정,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非KS표시품이지만 수출점사의 합격으로 KS표시품과 같이 수출도, 지난해에는 6,500 (210만달러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렸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16개 科學技術研究機關 통합조정

8개 大單位 研究所로 조정——과학기술처

정부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 部廳에 분산되어있던 1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과학기술처로 이관, 8개 研究所로 綜合調整하는 「研究開發體制整備와 運營改善方案」을 11월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합조정되는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재의 16개 정부출연 연구소).

▲韓國科學技術院 (한국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소·해양개발연구소).

▲韓國에너지研究所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핵연료공단).

▲韓國動力資源研究所 (한국자원개발연구소·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韓國標準研究所

▲韓國機械研究所 (한국기계금속연구소·한국선박연구소).

▲韓國電氣通信研究所 (한국전자기술연구소·한국 전기기기시험연구소·한국통신기술연구소)

▲韓國化學研究所

▲韓國入蔘煙草研究所 (고려인삼연구소·한국연초연구소).

首都圈 觀光地 30개지역개발, 246억 들어

81년에 우선 34억원 들어 5개지역 개발

11월 13일 교통부에 따르면 學生 및 勤勞靑少年의 운동시설과 야영장, 가족단위의 1日觀光用 施設이 부족한것을 해결하기 위해, 81년부터 85년까지 246억 5천만원 들어 30여개소의 수도권 관광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계획을 우선 1차연도인 81년에 정부지원, 14억원과 觀光振興開發基金 6억 5천만원, 地方費 14억원등 모두 34억 5천만원을 들여 서울近郊 1日觀光地 5개지역을 선정, 靑少年 전용 野營場과 綠地空間 (잔디운동장)·靑少年會館·휴게실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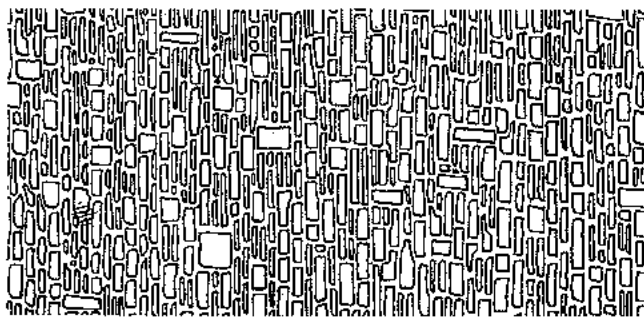
우리나라 共同住宅비율 10%선에 육박

4년간 증가주택 51만호중 단독주택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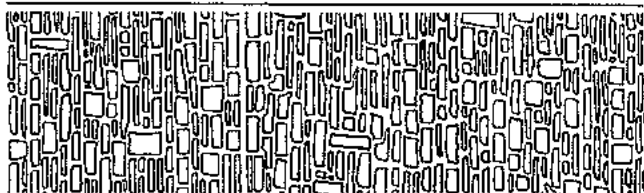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택중 聯立住宅·아파트의 비율은 75년말의 4.1%에서 지난 79년의 9.4%로 크게 늘어나 10%선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5년 총주택수 4,903,000호중 연립주택 89,000호 (1.8%), 아파트 113,600호 (2.3%)등 공동주택의 비율은 4.1%에 달했으나, 지난 79년에는 총 주택수 5,416,000호중 공동주택이 509,000호 (9.4%)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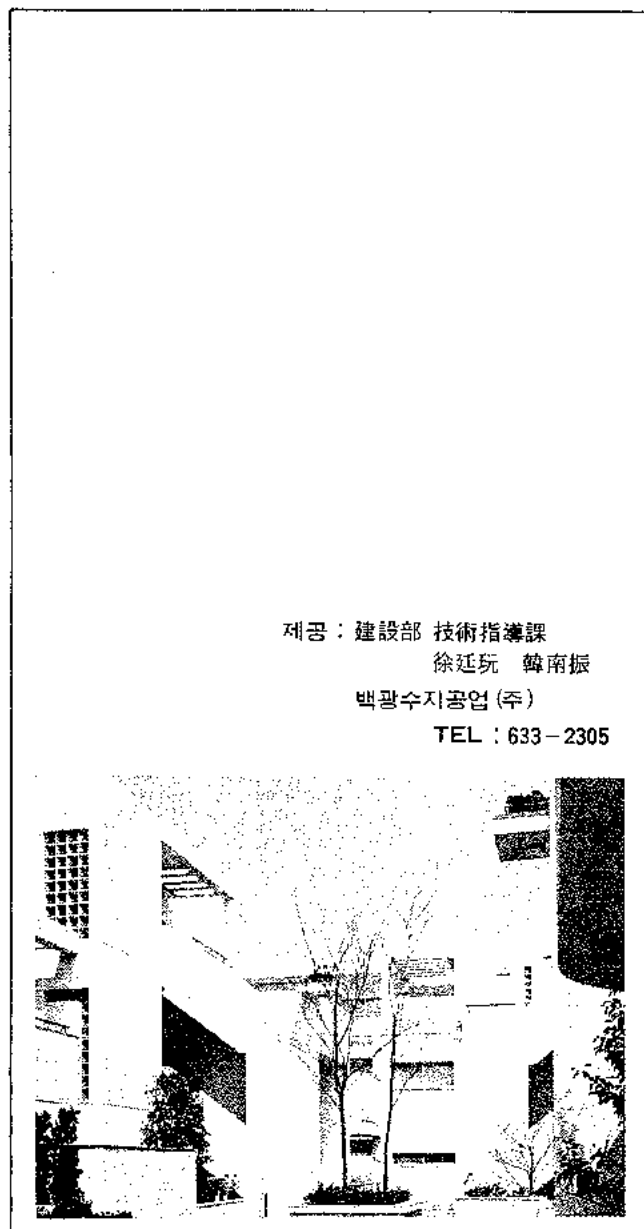
특히 지난 4년간 증가 주택수 501,300호중 단독주택이 40.3%, 연립주택 14.2%, 아파트가 45.4%를 점유했다. ■



優秀建築資材



(시리즈) [I]



제공 : 建設部 技術指導課
徐廷玩 韓南振
백광수지공업(주)
TEL : 633-2305

註 : 今号부터 게재되는 優秀建築資材 시리즈는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지난 8월14일부터 15일간 建設部主催로 열린 第2回 建築資材展示會 결과를 연재수 록합니다.

건축자재 전시회 종합보고

“건설부가 주최한 제2회 건축자재 전시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종로구 연건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78년 제1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건설부장관을 비롯하여 각계 고위인사가 개회식에 참석하여 개관테이프를 끊었으며 연일 많은 관람자(15,000여명)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많은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참가하여 우수한 자재를 선보여 국내 건축 및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자재의 품질향상과 우량 건축자재의 선택사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본 전시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소개하므로써 건축자재개발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건축설계자나 직접 집을 짓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바이다.”

※ 여기소개한 자재의 데이터는 작업회에서 제출한 카다북 및 기타 자료임을 밝혀 둔다.

I. 전시회 전체개요 소개

1. 전시회 집행계획 및 목적

금번 제2회 건축자재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500여 건축자재 생산업체에게 2회에 걸쳐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전시장소, 전시기간, 소요坪수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회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전시회는 건축공사 전공정에 걸친 우수건축자재를 선정하여 일반국민 및 관계인에게 관람시켜 우량건축자재를 선택 사용케하므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생산업체로 하여금 우수한 건축자재의 생산의욕을 제하여 해외시장개척의 기반을 조성케하며, 특히 옥외에 단열재 전시관을 설치하여 단열재의 특성, 효과,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홍보하여 모든 건축물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므로써 에너지 소비절약에 기여하고자 78년도 제1회 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한데이어 제2회 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2. 출품업체 및 출품자재 품목내용

이번 건축자재 전시회에 출품한 업체수는 68개로서 총 183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부문별 출품현황 및 각 업체별 주요출품자재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표 1) 부문별 출품 현황

부 문 별	출품업체수	출품품목수
구조재 부문	12	17
내외장재 부문	17	36
창호재 부문	15	27
단열재 및 방수재 부문	14	23
냉난방 기자재 부문	9	18
급수위생 설비재 부문	16	40
전기 설비재 부문	5	22
계	68	183

3. 출품업체 의견현황

3-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매년 실시 예정인 건축자재 전시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시회에 관한 희망사항(여론)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업체 및 방법

전시회 참가업체인 68개업체에게 설문서를 송부하여 출품업체에서 기록하여 회신하는 방법을 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여기서는 주요사항만을 골라 소개한다.

(3) 조사기간

80. 9. 5 ~ 9. 20 (16일간)

3-2 조사사항 분석

(1) 전시기간

전시회 개최기간은 1개월이 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일로 27.5%, 15일이 25%이며, 기타 7.5%로 대부분업체가 장기간 전시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시장소

장 소	비 율(%)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종로)	22.5
한국종합전시장 (영동)	7.5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여의도)	62.5
기 타	7.5

출품업체 대다수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인 여의도 및 종로등을 전시회 장소로 선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회 개최시기

전시회 개최시기는 관람에 편리하고 계절적으로 춥거나 더운 날씨를 피하여 3~4월이 53.6%, 5~6월 및 9~10월이 각 20%, 기타 2.4%로 나타난 것을 보면 년초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 해년도에 판매실적의 극대화에 노력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4) 부스배정에 대하여

전시장 업체별 부스 배정은 추첨을 해야 한다는 85%로 가장 많고, 주최측 임의배정 및 기타는 15%로 전시장내에서도 보다 넓은 장소에 전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시회 출품동기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 동기를 분류하여본 결과 일반인에게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것이 87.5%로 가장 많고, 선전 및 시상을 받기 위한것은 각 5%, 기타 2.5%로 출품업체마다 생산제품의 홍보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출품성과

전시회에 출품하여 얻은성과를 분석하여보면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다가 10.2%, 일반인의 큰관심을 끌었다가 59%, 보통이다가 28.2%, 기타 2.6%로 전시회 출품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았으므로 매년 전시회의 개최를 원하고 있고 자재의 질적향상에 노력하여 판매촉진을 위한차기전시회에 출품한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단열재 전시내용

이번 전시회에 단열재를 출품한 회사는 6개업체였으며 단열성능을 주 특성으로 하는 구조재를 생산하는 회사도 3개사나 있었다.

이를 업체별 제품별로 보면(표 1)과 같으나, 제품의 성능면에 있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데이터등이 결여되어 있는것이 많아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표 1) 단열재출품현황

구 분	업 체 별	제 품 별	전 시 내 용
발포수지계	백광수지공업(주)	스티러폼	●전본품, 시공방법, 효과분석.
	(주) 대룡	우레아폼	●단열재선택방법, 단열효과
무기섬유질계	동일공업사	표이론	●전본품
	(주) 금강	암면, 유리면 시리카	●전본품, 시공방법, 효과분석.
무기질계	한국인슈로공업(주)	인슈로화인	●전본품
	(주) 남해공업사	질 석	●전 본 품

따라서 여기서 소개하는것은 공인된 제품의 성능등이 아니고 각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팜프렛이나 기타 자료에 의한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3) 특성

- ① 화재시 불꽃이 일지않고 용해되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자기소화성 (自己消火性) 이며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미세한 독립기포를 무수히 내장하고 있어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표 2) 단열성능 및 열적성질

구분 종류	밀도 (g/cm ³)	열 전 도 율 (Kcal/mh°C)	내열성
1 호 품	0.030	0.028	80
2 호 품	0.025	0.031	
3 호 품	0.020	0.032	
4 호 품	0.016	0.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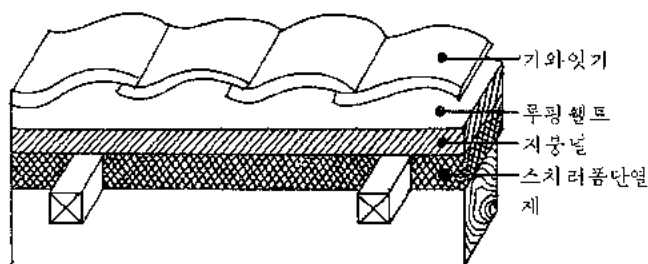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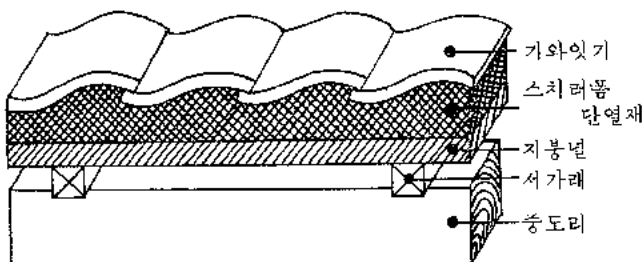
- ③ 무게가 보통목재의 약 1/20정도로 가벼울뿐만 아니라 압축에 대한 복원률이 비교적 높음.

(표 3) 복원률 및 강도

구분 종류	복원률 (%)	압축강도 (kg/cm ²)	굴곡강도 (kg/cm ²)	인장강도 (kg/cm ²)
1 호 품	96	2.3	3.5	6.0
2 호 품	97	1.6	3.0	5.3
3 호 품	97	1.1	2.5	4.5
4 호 품	97	0.6	2.0	3.2
비 고	복원률은 두께의 10%를 압축하는 힘으로 연속 20회를 가했을때,			

(5) 단열시공예

(그림 1) ① 저붕단열



- ④ 재료의 성질 및 구조상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수 및 방습의 효과가 있다.

(표 4) 방수·방습성

구분 종류	흡 수 율 (g/100cm ²)	수증기투과율	수증기투과 저 항 개 스
1 호 품	0.13	0.6	170
2 호 품	0.14	0.8	140
3 호 품	0.16	1.0	130
4 호 품	0.17	1.2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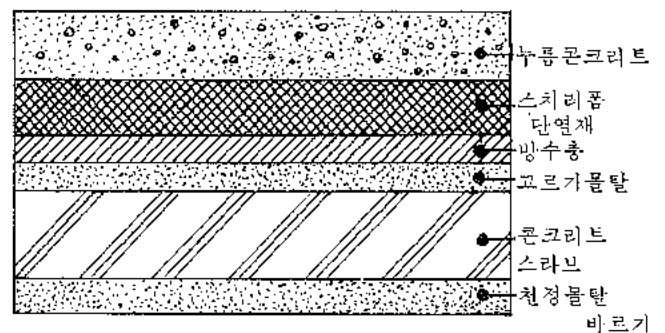
- ⑤ 돌이나 갈, 전열선등으로 쉽게 자를 수 있으며 접착제나 못으로 고정하기가 쉬워 재반공사의 시공이 용이하다.
- ⑥ 산, 알칼리에는 강하지만 석유류, 알콜류 이외의 유기용제에는 약하므로 접착제나 도료등의 도포시는 유의하여야 한다.

(4) 제품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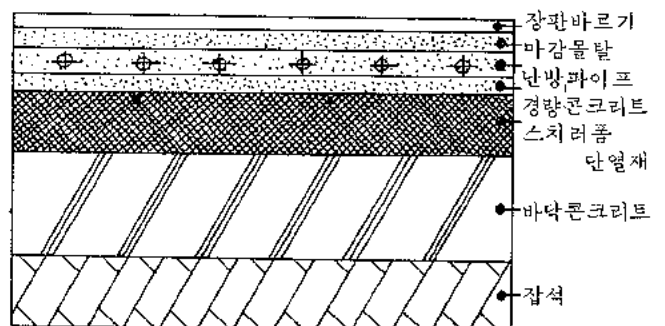
스티리폼은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으로서 공업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수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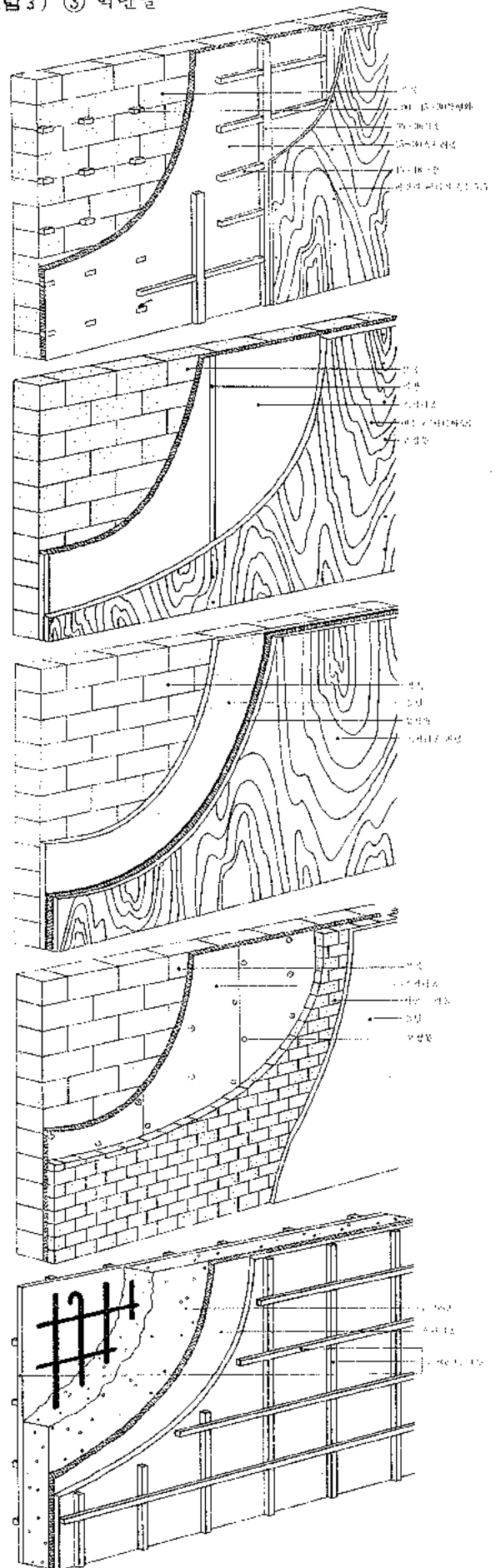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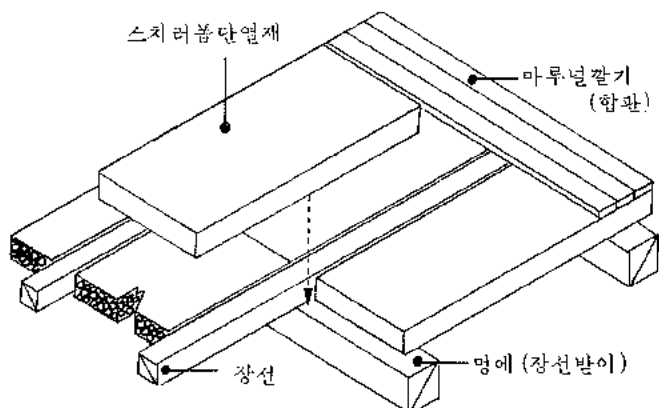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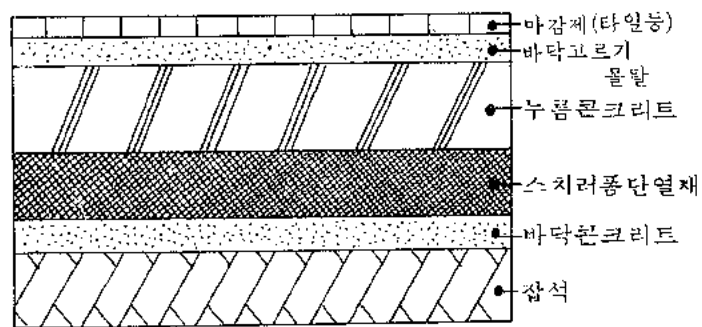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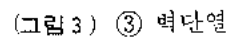
(표 5) 종류별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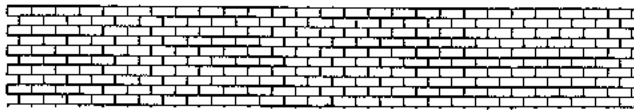
종 류	밀도 (g/cm ³)	두께 (mm)	길이×폭 (mm)
1 호 품	0.030	25, 30, 40	600×600, 900×600
2 호 품	0.025	56, 60, 70	1800×900, 2000×1000
3 호 품	0.020	100	3600×900, 5400×900.
4 호 품	0.016		



② 바닥단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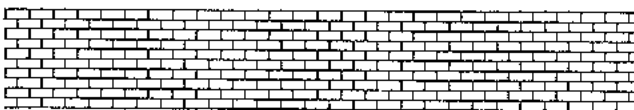


◎ 大統領令 第10062号

建築法施行令 中 改正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80년 11월 12일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중 “중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를 “중전과”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토지.

제4조 제1항 본문중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전단중 “(동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의 3 제4호”를 “제6조의 3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 후단중 “(재개발지구에 한한다)”를 “(재개발구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미관지구 기타 이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미관지구·특정 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공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용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서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의 제목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공사감리론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에 있어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장차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2조 제1항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를 “기숙사”로 하고, 동항의 표중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장 제3절 제21조 다음에 “제4절 건축재료”와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건축재료

제22조 (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 10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0에 기재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제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제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8조의 2 중 “관람집회시설”을 “숙박시설·공연장”으로 한다.

제112조 제 1 항중 “3,000평방미터”를 “6,0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 제 3 항 및 제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5 항을 삭제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 개구부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장 제 2 절 내지 제 4 절에 규정하는 건축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 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제118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 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 제12항중 “새마을공장” 다음에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삽입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공원 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의 2 (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5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 2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 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6조중 “제155조”를 “제155조의 3”으로 한다.

제158조 본문중 “법 제39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를 “법 제39조 제 1 항 제 6 호”로 한다.

제164조중 “또는 제 2 조 제 5 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를 삭제한다.

제165조 중 “법 제41조 제 1 항 및 제163조”를 “법 제41조제 1 항 및 제 4 항과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1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각 부분을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및 제 3 조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신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 까지

의 수평거리의 2 배(높이 8 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 배)이하

2. 공동주택 또는 기숙 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 배이하

제168조의 2 제 1 항제 1 호중 “공장”을 “공해공장”으로, “6미터”를 “6 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 3 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연립주택을 제외 한다)”로 한다.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한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4 미터 이상

제168조의 2 제 2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미터)

구 분	외벽각부분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정북방향의수평거리	외벽각부분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직각방향의수평거리	저마끝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직각방향의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안의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주거지역안의건축물	-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자연녹지지역또는생산녹지지역안의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이상	3.0이상

제169조 제 1 항중 “법 제42조 제 3 항”을 “법 제42조 제 4 항”로 한다.

제169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 2 (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 제 1 항 제 4 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 월의 범위안에서 1 회안에 한하여 그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제171 조 제 4 항중 제 5 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 6 호 및 제 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작성

7. 미관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 6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17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 2 (용도변경)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1. 부표 각항 각호(제 4 항 각호 및 제 5 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간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 4 항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인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계획결정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용도의 경우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 한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에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창고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 ④ 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법 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및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중건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것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전폐율: 10분의 9 이하

나. 용적율: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여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별표 1] 내지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 내지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전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복지·공급처티시설 기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별표 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

②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③ 근린공공시설

④ 종교시설(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 노유자시설

⑥ 국민학교

[별표 2]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격리병원

② 사설강습소

③ 일반업무시설(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숙박시설(여관 및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⑤ 판매시설

⑥ 위락시설

- ⑦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 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 ⑧ 동물원
- ⑨ 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 ⑩ 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 창고를 제외한다)
- ⑪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 ⑫ 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 ⑬ 자동차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 ⑭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 ⑮ 진애 및 오물처리장
- ⑯ 촬영소
- ⑰ 묘지관련시설

[별표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격리병원
- ② 위락시설
- ③ 관람장
- ④ 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 ⑥ 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 ⑦ 자동차관련시설(차고·세차장 및 자동차운전교육장을 제외한다)
- ⑧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 ⑨ 진애 및 오물처리장
- ⑩ 묘지관련시설

[별표 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격리병원
- ②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 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 ④ 폐차장
- ⑤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잔이도제장을 제외한다)
- ⑥ 진애 및 오물처리장
- ⑦ 묘지관련시설

[별표 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근린생활시설
- ② 근린공공시설
- ③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 ④ 공 장
- ⑤ 창고시설

- 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⑦ 운수시설
- ⑧ 자동차관련시설
- ⑨ 진애 및 오물처리장
- ⑩ 군사시설

[별표 6]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 ② 노유자시설
- ③ 의료시설(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병원을 제외한다)
- ④ 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⑤ 운동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⑥ 숙박시설
- ⑦ 판매시설
- ⑧ 위락시설
- ⑨ 공연장·관람장

[별표 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 ② 격리병원
- ③ 위락시설
- ④ 관람장
- ⑤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연지·매연 및 악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 ⑥ 위험물제조소

[별표 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 ②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 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③ 근린공공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노유자시설
- ⑥ 의료시설
- ⑦ 교육 및 연구시설(시설강습소를 제외한다)
- ⑧ 운동시설
- ⑨ 공공업무시설
- ⑩ 관광숙박시설
- ⑪ 관람집회시설
- ⑫ 전시시설
- ⑬ 도정공장·식품공장
- ⑭ 농산물보관창고
- ⑮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 ⑯ 철도역사·공항 시설·해운시설
- ⑰ 동물관련시설
- ⑱ 교정시설
- ⑲ 군사시설
- ⑳ 통신·촬영시설
- ㉑ 묘지관련시설
- ㉒ 관광휴게시설

[별표 9]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
- ②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③ 근린공공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 ⑥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시설
- ⑦ 동식물원
- ⑧ 도정공장·식품공장·공해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 생산의품 가공공장
- 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
- ⑩ 동물관련시설
- ⑪ 군사시설
- ⑫ 방송국·전신전화국
- ⑬ 관광휴게시설
- ⑭ 제 1 항 내지 제 13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별표 10]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등 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구분	품명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1. 포틀랜드시멘트
	2. 래디믹스트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4. 나왕 베니어 코어합판
	5. 수도용 아연도강판
	6. 입입용 비닐절연전선
	7.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8. 콘센트 및 플러그
(2) 건설부장관이 인정하여야 하는 건축재료	1. 보충벽돌(소성벽돌)
	2. 시멘트벽돌
	3. 시멘트블록
	4. 시멘트기와
	5. 스페트기와

[부 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 ①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농 관
- ②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아파트
- ③ 기숙사
- ④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
 3. 이용원·미용원·공중목욕장(공동탕에 한한다)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동물병원.
 5. 정구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헬스클럽·프린트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와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방아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미만인 것.
 8. 거원·당구장·탁구장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인 것.
 9. 사진관·표구점·에너지교습소·독서실·장 의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⑤ 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주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⑥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교회·성당·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장: 수도원·수녀원·사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⑦ 노유자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유치원·양로원·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⑧ 의료시설
 1. 병 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격리병원: 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⑨ 교육 및 연구시설
 1. 학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사설강습소(에너지교습소·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측정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 ⑩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개기하는 것.

 1.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팅·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⑪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⑫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영관·여인숙·하숙·여관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모텔·유우도호스텔

⑬ 판매시설

1. 백화점

2. 시장 : 수퍼마켓(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장·도매시장·경매장·공판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상점 :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매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 4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9 호에 개기하는 용도중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⑭ 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부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3. 공중목욕장(공중탕을 제외한다)

4. 안마시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유키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전기업소

⑮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⑯ 전시시설

1.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에 유사한 것.

2.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⑰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개기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⑱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개기하는 것.

1. 창고

2. 하역장

⑲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총포화약류 난속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개기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2. 위험물제조소

3. 위험물저장소

4. 위험물취급소

⑳ 운수시설

1. 시내버스터미널

2. 시외버스터미널

3. 화물자동차터미널

4. 철도역사

5. 공항시설

6. 해운시설

㉑ 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

2. 세차장

3. 폐차장

4. 자동차점사장

5. 자동차매매장

6. 자동차부속상

7. 자동차운전교습장

㉒ 동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

2. 부화장

3. 가축시장

4. 도살장

㉓ 전애 및 오물처리장

㉔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경성·보호·교육·보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㉕ 군사시설

㉖ 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촬영소

㉗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

3. 묘지부수건축물

㉘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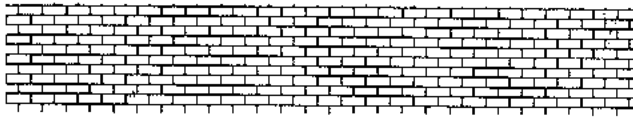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전망탑

5. 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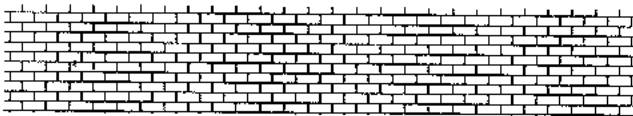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건축물.



◎ 건설부령 제275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0년 10월15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시설: 관상용 식수대 및 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폭포·동릉·정석·장경다리
2. 휴양시설: 야외박자·야유회장·야영장
3. 유흥시설: 시소·정글집·사다리타기·수평순환회전차·경사순환회전차·수직순환회전차·노노레일·삭도·도섭지주유지·낚시터
4. 운동시설(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야구장·축구장·농구장·배구장·육상경기장·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한다)·스케이트장·조정장·철봉·평행봉
5. 교양시설: 도서관·온실·교육용 야외극장·과학전시관 전체 또는 기상 관측시설·기념비와 고분·성적·교육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하 “유적능”이라 한다.)
6. 편의시설: 우체통·공중전화통화실·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약국·유우드호텔·수하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수세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정호·암거·수문·호안옹벽.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시설.

제3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25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50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1,00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세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조화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7. 묘지공원의 경우에는 경숙한 장소로서 장래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각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획,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오락계획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를 위한 녹지채움등 도시의 녹지공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 도시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급격한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축물)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

치할 수 있는 전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 면적을 말한다)의 당해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전폐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폐율은 당해 도시공원의 이용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린공원인 때에 한하여 당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조려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100분의 5까지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교양시설과 유적 등의 설치와 복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조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로 하고,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하며, 이중 장외자·그네·미끄럼틀·사장·정글짐 및 번소는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3.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육외휴양·오락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육외휴양·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외관이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다수인의 적극적인 이용에 공하는 공원시설이어서는 아니된다.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신나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중 산책장장애·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희시설의 종류등)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은 다수인의 이용에 적합한 유희시설로서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는 수직순환회전차·경사순

환회전차·수평순환회전차로 하고, 운동시설은 절벽·평행봉 또는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 이외의 시설로 하며, 교양시설은 기념비·유적 등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이외의 시설로 한다.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공원: 60퍼센트
2. 근린공원: 40퍼센트
3. 도시자연공원: 20퍼센트
4. 묘지공원: 20퍼센트

② 다음 각호에 계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유희시설중 수평순환회전차·경사순환회전차 및 수직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인 경우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편익시설중 매점과 대중음식점: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 편익시설중 유우드호텔: 1,00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제4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한한다)

③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우드호텔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대중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대중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 도시주변의 바깥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 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이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주거전용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의 될 수 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 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지면적을(녹지면적

에 대한 식물 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배연·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당해 원인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손흥·시선유도·지표재공 등을 감안하여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지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등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시설등이 녹지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휘할 수 있어 따로 녹지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접속될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공원대장) ① 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 별지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대장은 당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원조서
2. 공사설계서
3.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4.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5.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6.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7.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8. 도시공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②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원조서
2. 공사설계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12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기간
5. 점용장소 및 면적
6. 점용목적물의 구조
7. 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8.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9. 원상회복의 방법

제13조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서 등) ① 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양도·양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권리·의무의 내용
4. 양도·양수의 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 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상속한 권리·의무의 내용
4. 상속연월일

③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발기인으로부 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승계인인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4. 승계한 권리·의무의 내용
5. 법인설립연월일

④ 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 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피승계인과 승계인인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승계한 권리·의무의 내용
4. 법인합병연월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신고 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고방법)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판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 간신문에 의한 공고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의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 원대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로부터 6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 지]

도시공원대장작성기준

1.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2. 도시공원의 위치
3.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5. 도시공원의 연혁

- 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나. 조정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다. 도시공원사업의 결정 및 지가 또는 시행허가연월일
- 라.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마.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바. 기타 참고사항

6.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 하여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 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연면적)
-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라.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단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등 의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등의 형태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당해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기타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 마.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바. 관리방법
- 사.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 아.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자. 공원시설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 하여는 당해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8.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배유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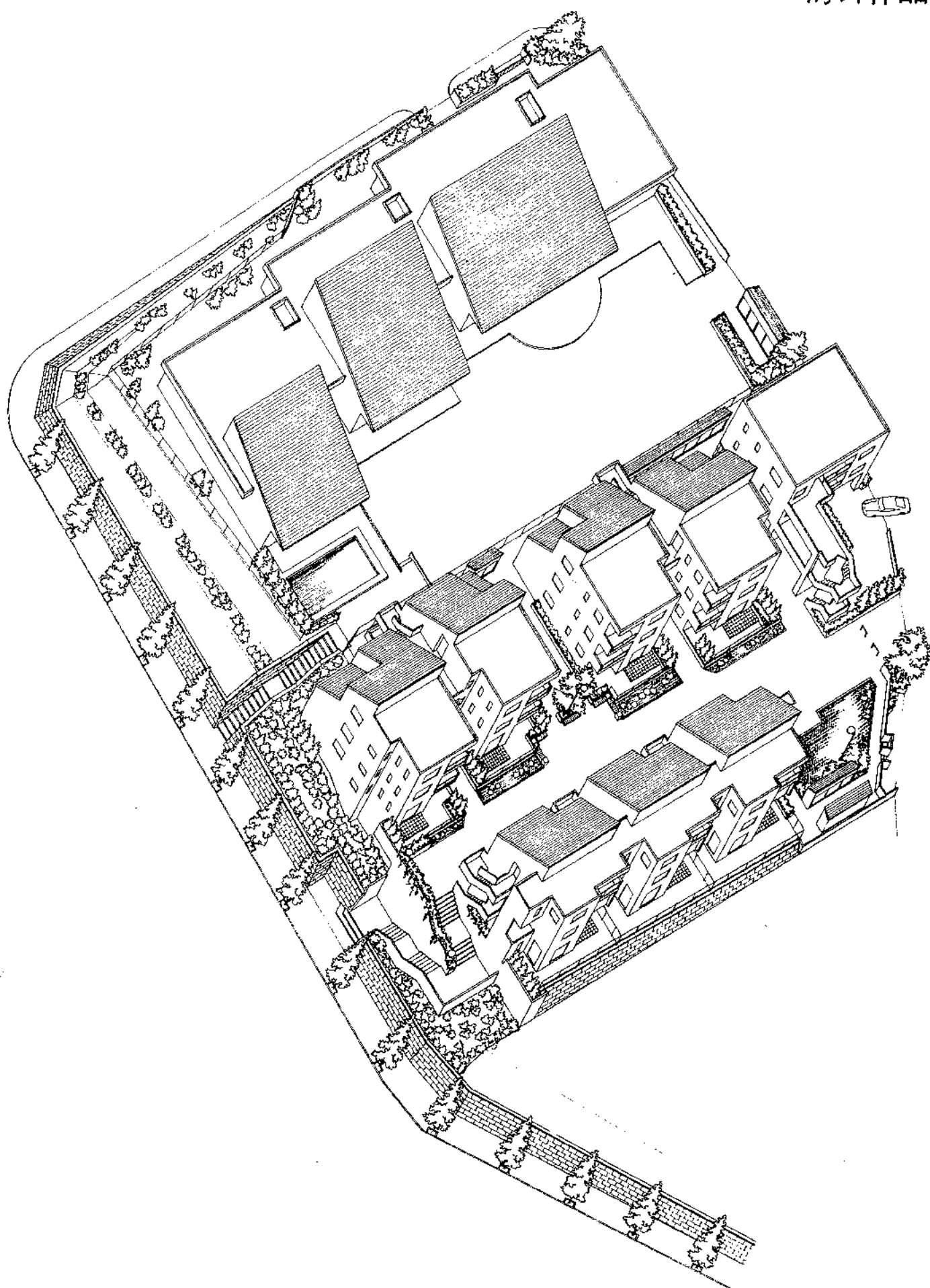
9.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의 합계와 당해 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10.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라.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 면적 (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 형태 의 시설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 마.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바. 점용기간(점용허가년월일임을 포함한다)

11. 도면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 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기재하는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 가. 도시공원의 경계
- 나.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 라. 점용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크레스트 集合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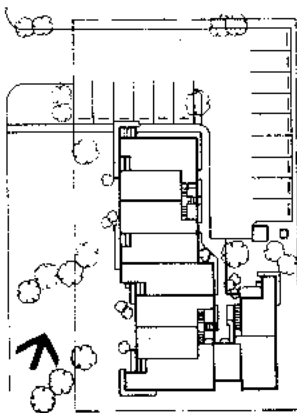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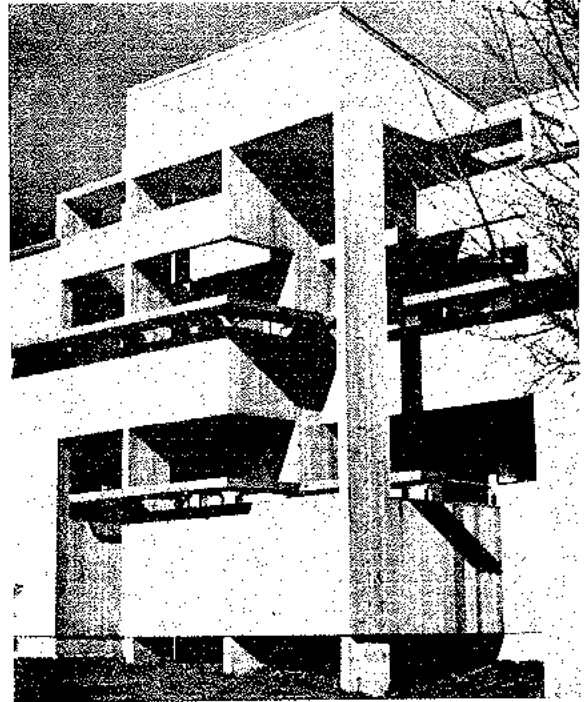
設 計 : Robert Foote, Jr. & William Wilson
 開 發 主 體 : Ronald Steinke

構 造 · 規 模 : 木 造, 2 層, 10戸
 敷 地 : 約 0.2/ha
 所 在 地 : St. Helens, Orego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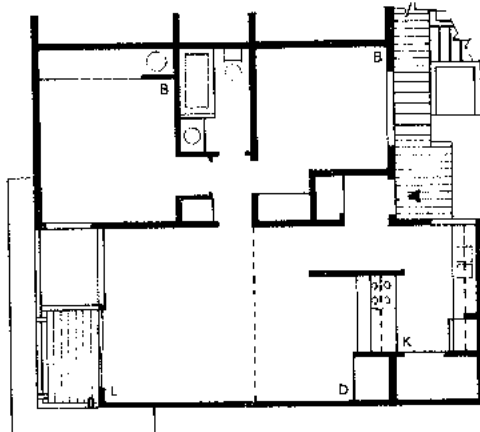
敷地는 街路의 中心에서 2街区 떨어진 袋小路狀 街路에 있다. 높이 2.7m의 岩石이 敷地內를 傾斜지게 흩어져 있어서 이를 除去하기 爲한 費用도 많다는 等으로, 設計者는 그것을 디자인 形態로서 利用키로 하였다. 그 때문에 10戸의 뉴니트가 岩石의 周圍에 놓여, 1層에의 엔드랜스는 背後의 岩盤上에 取해져 있다. (斷面圖 參照) 跳躍이 열린 敷地 西側의 屋外空間은 居住者들에게 屋外活動 場所로 使用되고 同時에 道路와의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接하는 建物の 西面은, 水平材의 洗練된 디자인을 갖는 프리-즈 소레유가 彫形한 깊은 表情을 나타내고 있다.

中流所得者居住의 質向上 때문에, 聯邦政府의 助成金을 받고 있으나, 그로 因하여 住戸規模도 1寢室型 58.5m² 2寢室型 72.9m²으로 限界가 定해 있다. 單位圖面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規模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廻轉이 없는 設計法으로 快適한 居住環境을 實現하고 있는것 같다. 甲板部分의 幅 60cm의 間隔은, 各居住者가 各己의 個性을 살릴수 있는 植栽나 彫刻陳列의 場所로서 役割을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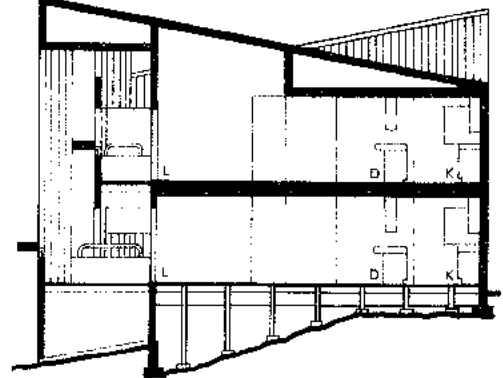
유니트群은 傳統的인 木造로서 콘크리트의 기초를 갖고, 外壁은 西洋杉木의 合板을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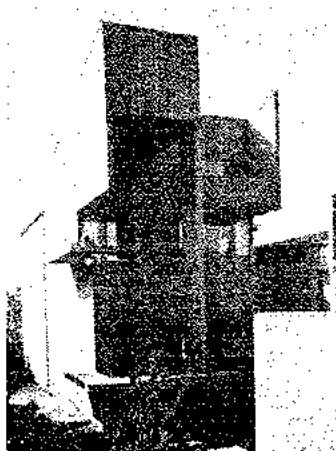
側面圖 1/1000



單位圖 1/200



斷面圖 1/200



바티너트 힐 곤도미냐 集合住宅

設 計 : Design Five

開 発 主 体 : Great Eastern Building Company, Inc.

構 造 · 規 模 : 콘크리트 블록조, 3층 48戸

敷 地 : 40.4 / ha

所 在 地 : Waitsfield, Vermont, USA

Vermont州의 有名한 스키휴양지 중의 하나인 슈가-푸트近
처에 48戸의 共同管理式余暇集合住宅이다.

이들 集合住宅은 森林에 接속되는 広大한 敷地中에 8個로
集群하여 充分히 間隔을 取하여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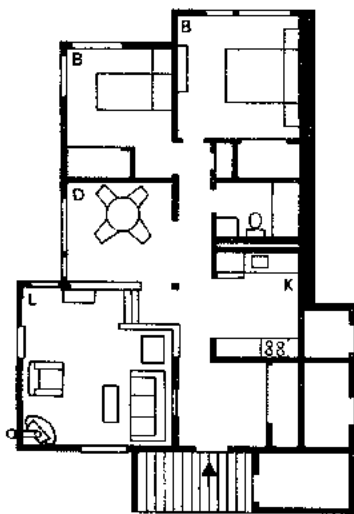
8戸의 아파트는 3層3列로 構成되어 크지는 않지만 余暇
生活로서의 機能을 다 하고 있다. 規模의으로는 54m²의 스티

디오형 유니트로부터 94.5m²의 2寢室型 유니트까지 있으며
圖示한 單位圖는 플랫 2寢室型과 메소네프트 1寢室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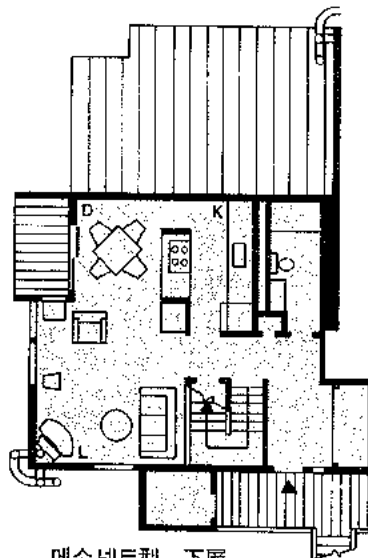
建物は 自然의 特性을 잘 살리면서 周圍의 環境과의 調和를
企及하고 있다. 断面圖로 圖示한 바와 같이 바닥 水準의 變
化나 2層分の 吹抜 等, 屋内環境도 유유한 視覺的 전망을 가
지고 있고 이들은 外界와 自然에 결부되어 別莊的 雰囲気를
만들어 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工期의 短縮은 이 地方의 氣候條件으로 보아 不可欠한 点이
지만, 現地工場에서의 프래하프에 依한 建設이 이를 可能케
한다. 同時에 칸막이라는 콘크리트의 블록조법은 防火防音에
所用되는 同時에 바닥의 輕量콘크리트 스크라블을 지탱하고 있
으며 窓은 2重 유리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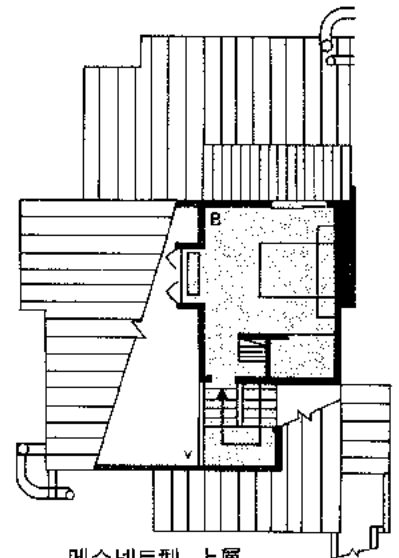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共用의 施設로서, 共同社會를 爲한 建設, 庭球
場, 水氷場 等이 附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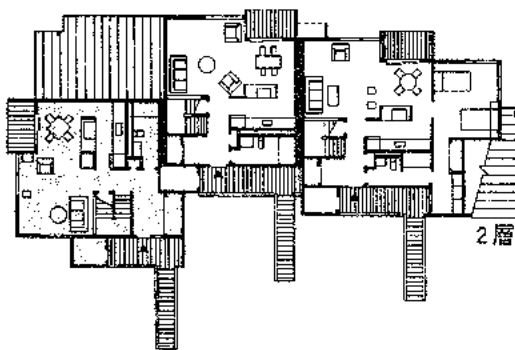
單位圖 1/200 플랫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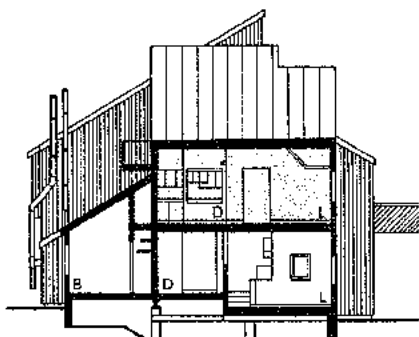
메소네프트型 下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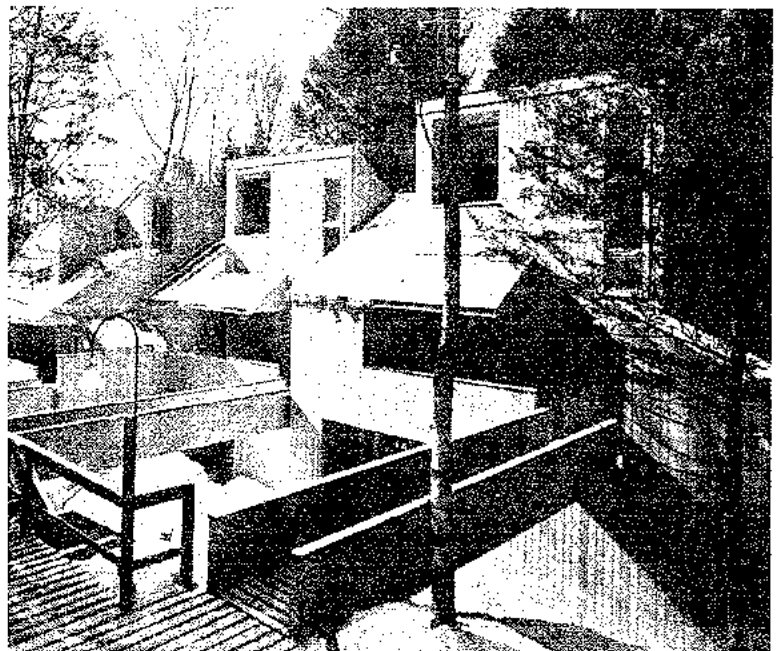
메소네프트型 上層



블록平面圖 1/100



断面圖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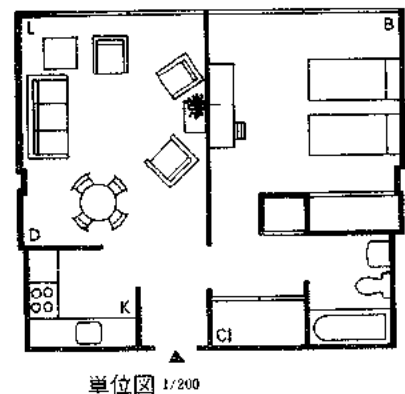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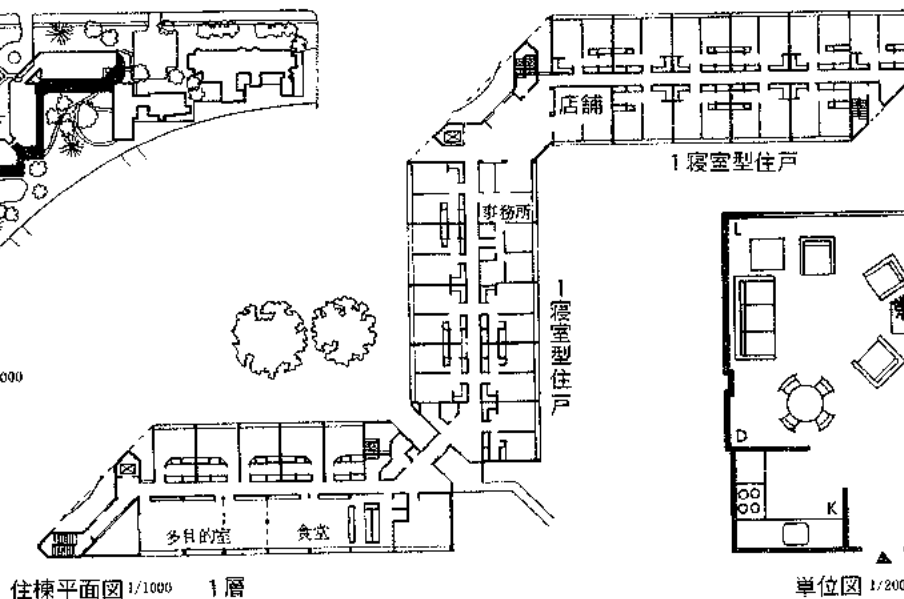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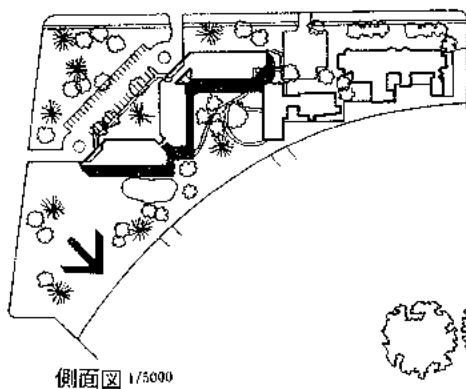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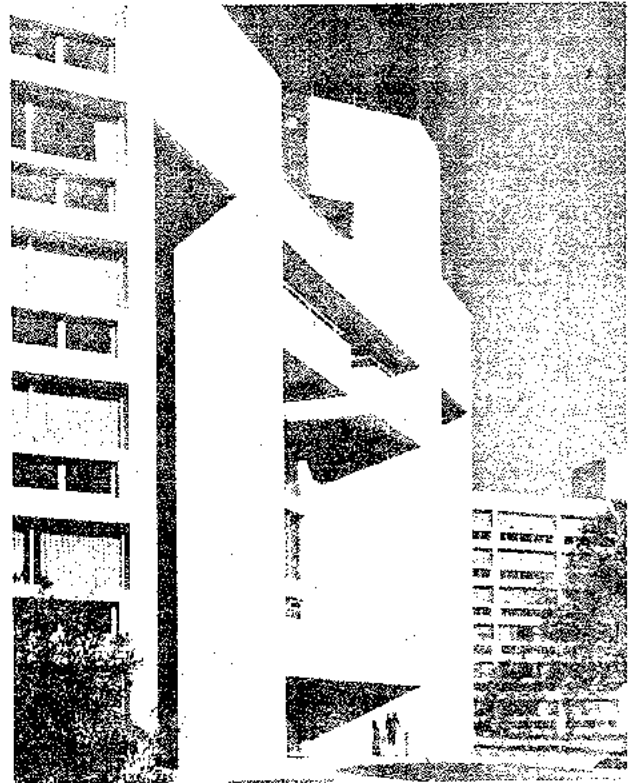


프로리다 크리스찬 홈 集合住宅

設 計 : Freedman/Clements/Rumpel
 開發主体 : The Christian Church
 構造・規模 : RC造 6層, 180戸
 敷 地 : 約 0.14/ha
 所 在 地 : Jacksonville, Florida, USA

美國住宅都市開發省(HUD)이 關與한 計劃의 第1期分으로서, 180戸의 老人用住宅이 完成되었다. 引退하여 收入이 限定되어 있는 中間層을 對象으로 하여, 家庭的 雰囲気과 高級아파트와의 中間的인 印象을 겨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健康狀態의 사람들이 起居하고 있다. 다만 特히 老人病이 甚한 住民을 爲해서는 第2期分이 計劃되어 있다.

6層建物の 住棟은 브레가스트·콘크리트의 外壁에 依해 自若히 彫刻的인 外觀을 나타내지만, 敷地境界에 沿하여 3個의 날개(wing)로 分割되어 있기 때문에 建物の 压迫感은 줄어들어 있다. 또한 1寢室型이나 簡易한 1室型等의 住戸型도 이 날개(wing)마다 区分되어 있다. 多目的室이나 治療室, 食堂, 부엌, 倉庫 等의 共同施設은 主로 1層에 모여 있다. 各層의 에레베이터 홀은 밖을 向해 크게 열려 뛰어난 眺望과 各 유닛(Unit)에 이르는 中廊下에 의 採光 等を 確保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共用空間이 質, 量 共に 豊富한 것은, 이 建物の 特色의 하나이고 各戶의 비좁음을 補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을의 商店街나 劇場, 教會, 公共輸送 機關 等이 모두 걸어서 다닐수 있는 範圍內에 있는 點도 빼놓을 수 없다.



던다스·서본 集合住宅

設 計 : Diamond & Myers (担当 B. Myers)

開 発 主 体 : City of Toronto Non-Profit Housing Corporation

構 造 · 規 模 : 벽돌造, 5 - 7 層, 376戸

敷 地 : 1.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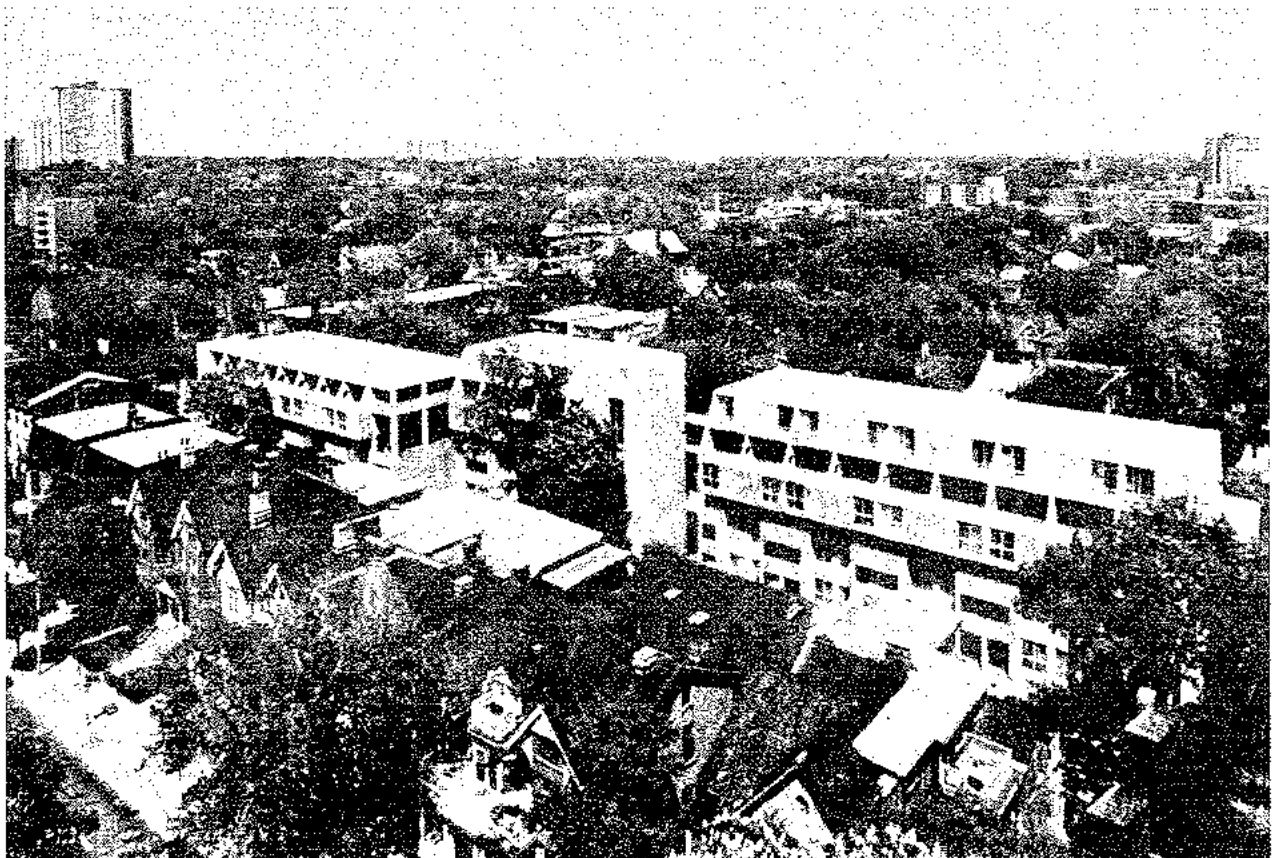
所 在 地 : Toronto Ontario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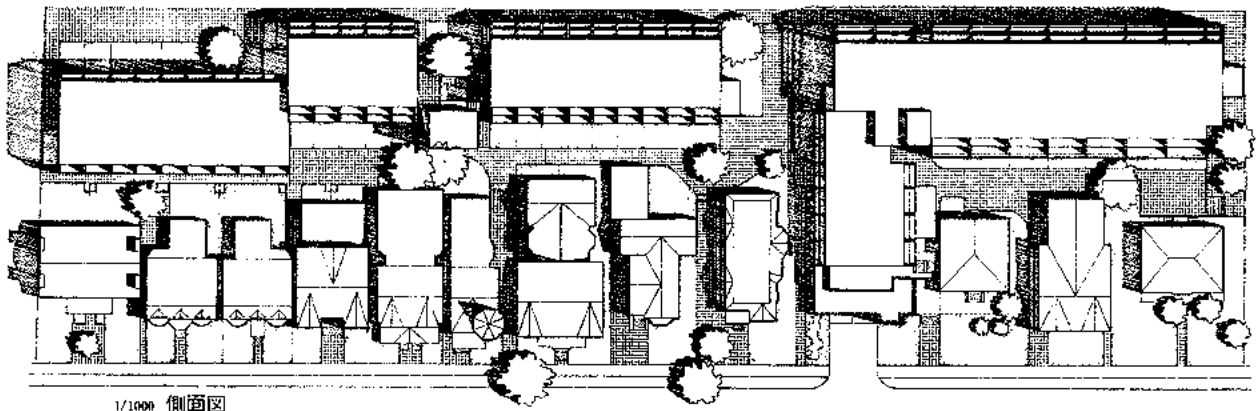
市内 中心部の 東端에 位置하는 이 一劃은, 19世紀中葉의 市街地가 남아 있는 가운데 低所得者層의 住宅地이다. 이곳을 所有하는 開發人은, 当初 24層建物の 住棟에 依한 開發을 計劃하였다. 이것은 地区의 結合에 適合한 것이었으나, 市는 歴史的인 街路景観의 保存을 重視하여 計劃을 却下하였다. 여기에 呼応하여 組織된 地区住民 一團을 작은 講論의 住宅을 配워넣는 方法이 採用되었다. 이에 依하여 高密度化가 達成되는 한편, 街路景観의 貲보임, 隣近의 空間的, 社会的 組織도 良好이 保存케 되었다.

새로운 住棟은 뒷골목에 따라서 리니아에 준비한 前面의 남은 住宅과의 사이를 利用한 半公的인 路地空間에서 어프로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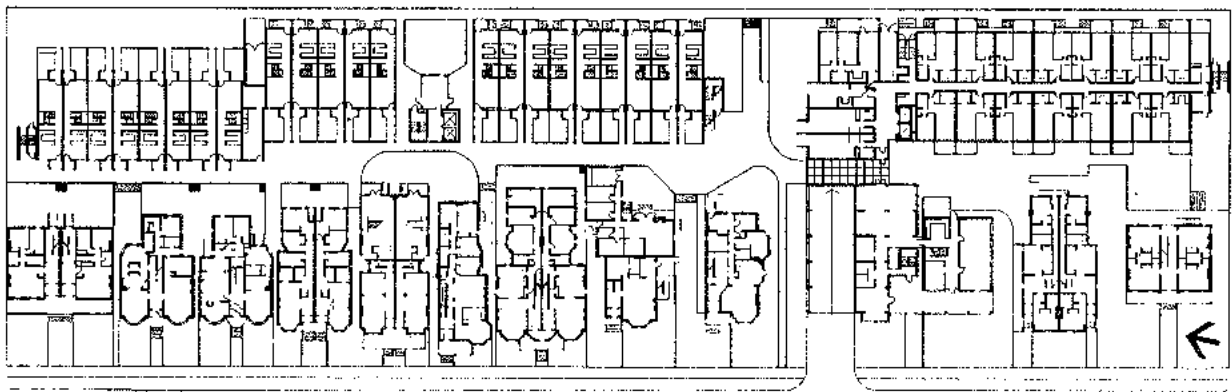
다시 住棟의 上部層에는, 半私的인 오픈 덱크(Open deck)가 連續해서 設置되어 있다. 이들은 옛부터의 앞뜰이나 通庭의 空間을 再構成한 것으로서, 하에라르키를 明確히 하여 新田의 建物の 統一에 寄与하고 있다. 住棟의 壁面은 RC스라브面이나 住戶境壁로 分節되어 세토백된 上部와 서로 通하여 크기를 느끼지 못한다. 保存된 나무 넘어로 보이는 벽돌의 外裝은 既存의 環境에 잘 調和하고 있다. 但 이번에는 디에르等の 伝統的인 모티브의 引用은 行해지지 않았다.

2~5寢室의 一般家族用 住戶(49戸)는 北側住棟의 低層部에 設置되어, 1室型(103戸) 1寢室型(121戸)는 上層階에 設置되어 있다. 低所得者用의 賃貸住戶(103戸)는 南側住棟에 엮어 넣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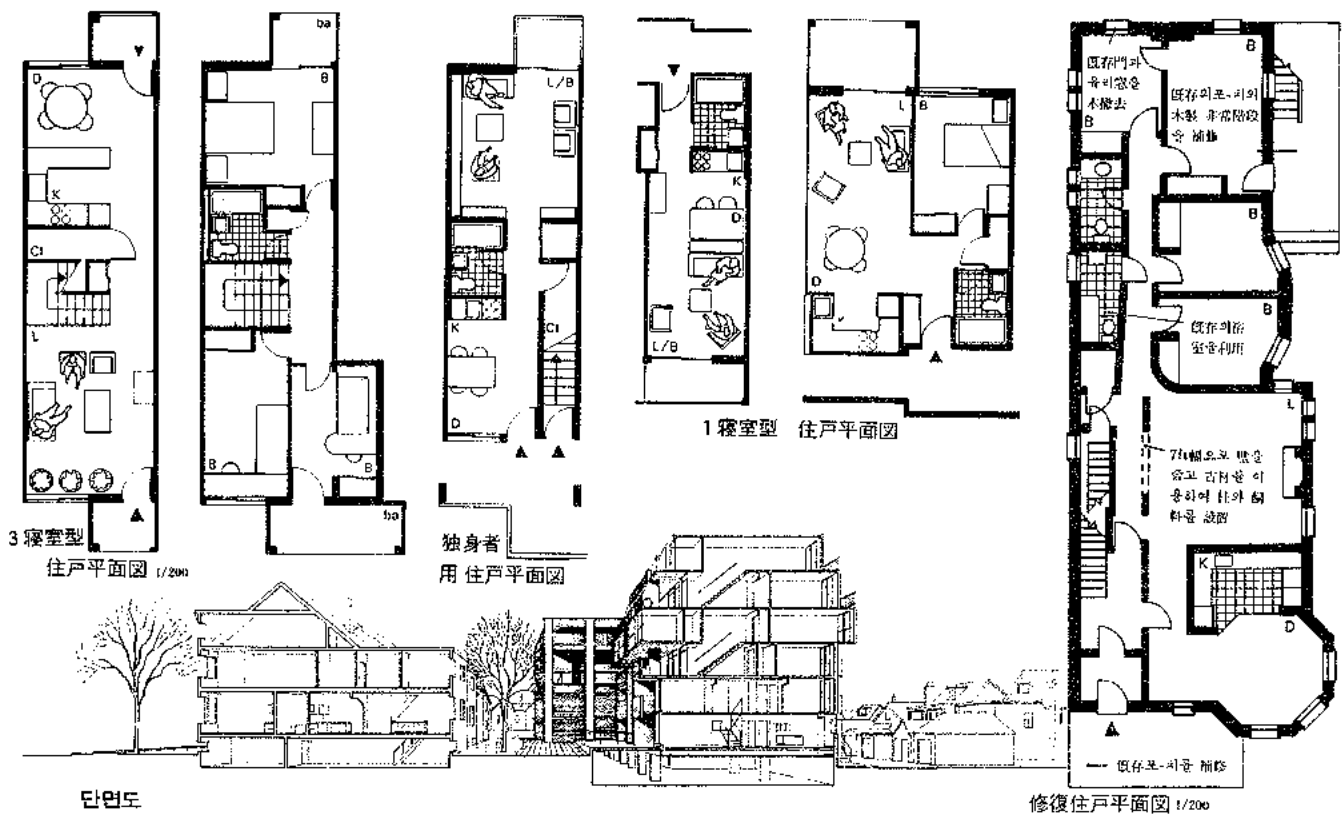




1/1000 側面図



1000 1層平面図



콜드워터 캐년의 實驗住宅

設 計 : Helmut C. Schultz

第2次大戰直后부터 建築部品の生産, 組立에서의 工業化, 体系化가 各国에서 試圖되고, 特히 60年代부터 70年代에 걸쳐서는 數多한 方法이 案出되었다. 最近에는 材料費나 建設費의 上昇, 職人技術 等の 問題에서 体系化가 再認識되고, 特히 個人住宅에의 適用이 盛行되고 있다.

Schultz는 문헌에서 지금까지의 바우하우스의 會員으로 부터 System化를 배워 現在까지 一貫하여 그 研究를 繼續 하고 있다. 그는 TEST System이라고 불리우는 鉄骨造의 모듈과 코치에이션을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通常 4 인치 (10cm) 라고 하는 小 스케일을 單位로 하여 여기에 既製의 <카다로그에서 選取하는> 部材를 適用하고 있다 한다. Open System이고 하나의 System 때문에 프레하프 化된 部材를 反復使用 하여 나간다고 하는 종래의 크로스드 System과는 區別된다.

단, 이 Open System에 類似한 思考方式은 以前부터 存在하여 오고 있으며, 이번 System도 이와 같은 伝統속에 자리를 붙이는 것이다. 그는 이 System을 눈 아래 마을과 太平洋等을 바라볼 急勾配 (傾斜40度) 의 敷地에 새을 自宅에 適用하였다.

RC 杭으로 받쳐지는 鉄骨의 枠組에 Module에 따라 既製의 바닥이나 壁等の 部材가 接合되어진다고 하는 方法은, <既製品의 寄集建築>중에 明快한 System을 介在시키는데 成功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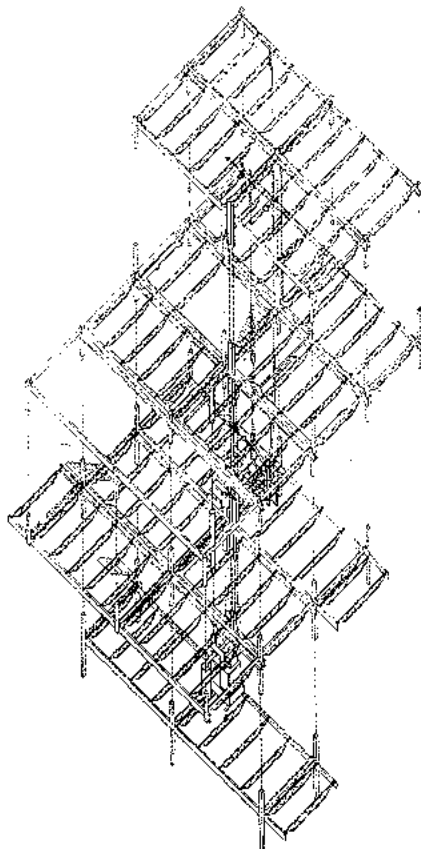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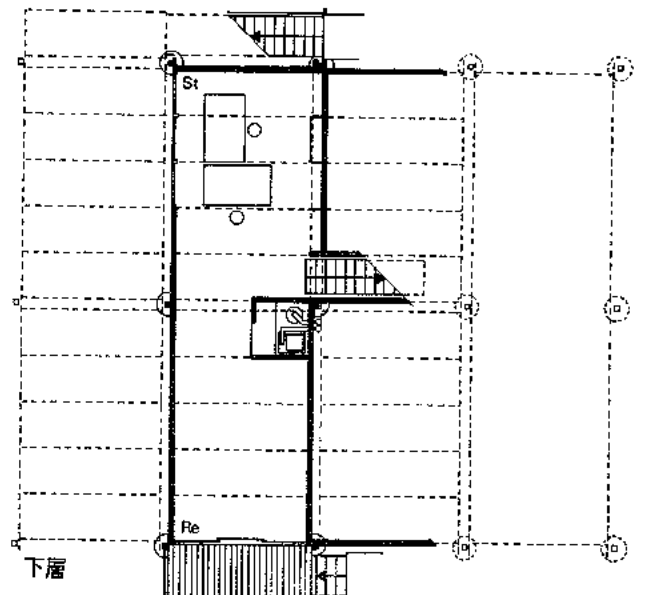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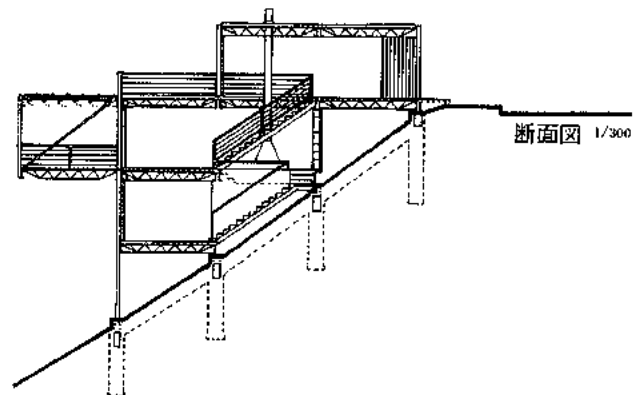
이에 依하여 오픈 시스템 (Open System)의 多樣性和 柔軟性, 바꿔 말하면 여기서는 外觀이나 内裝의 多樣性이나 増築의 可能性이 實現되었다. 이 住宅은 AIA의 賞을 受當하였다.

開發主體 : Helmut C. Schul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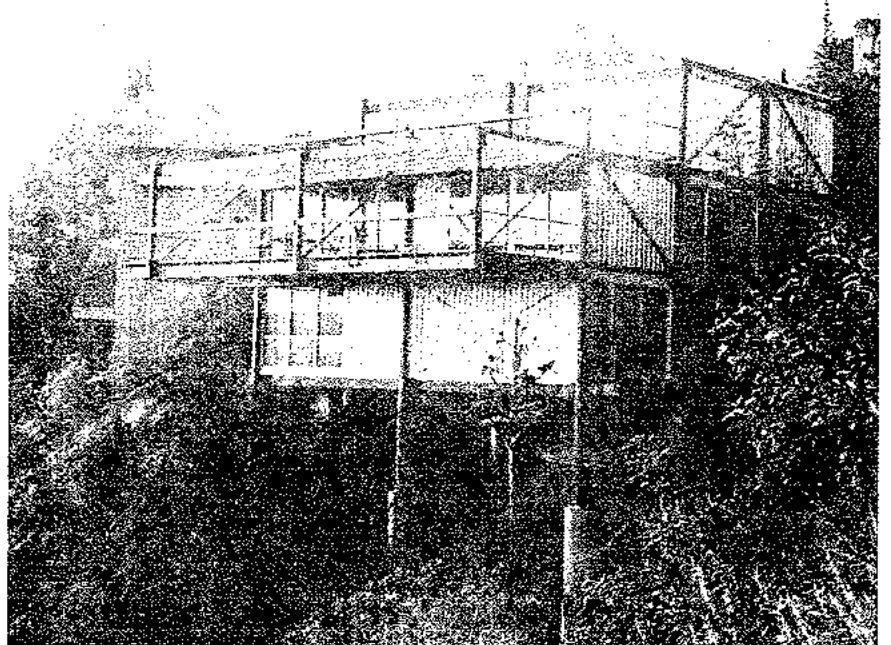
構造・規模 : S造 3-4 層 4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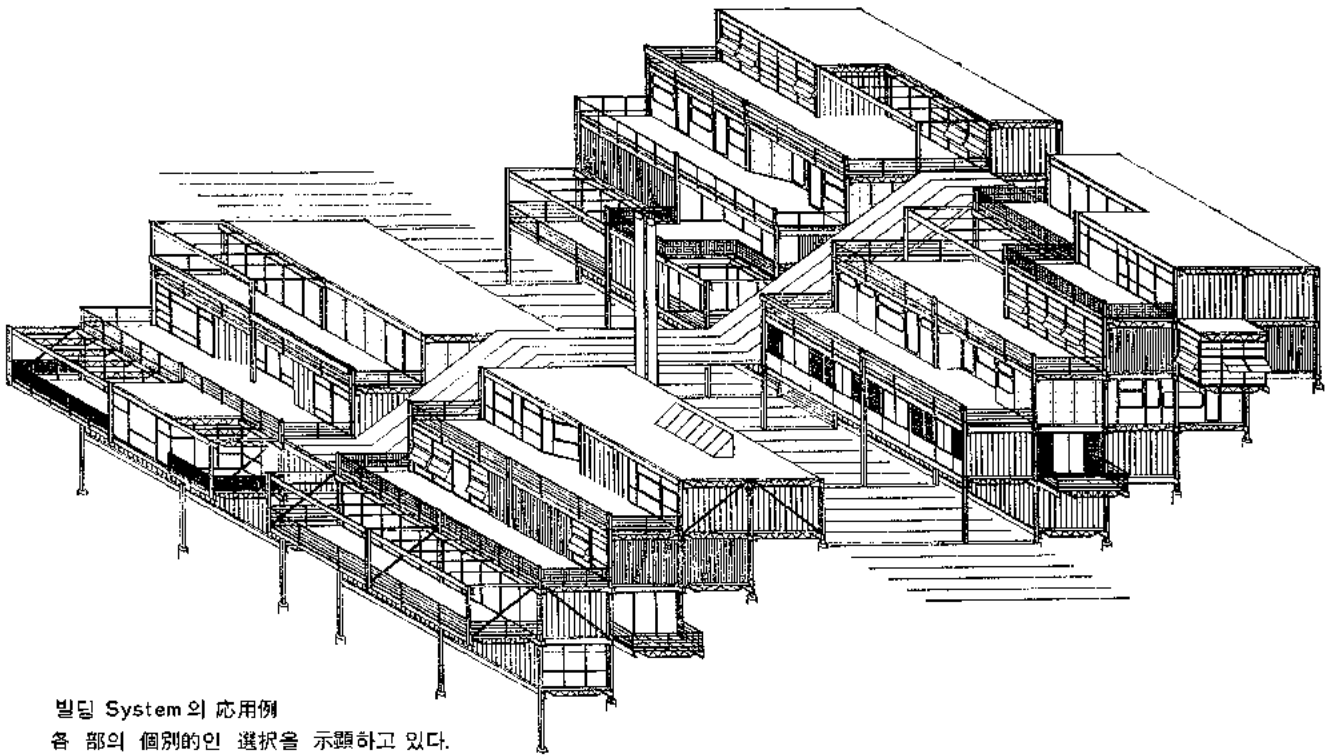
敷 地 : 約 170m²

所 在 地 : Beverly Hills Californi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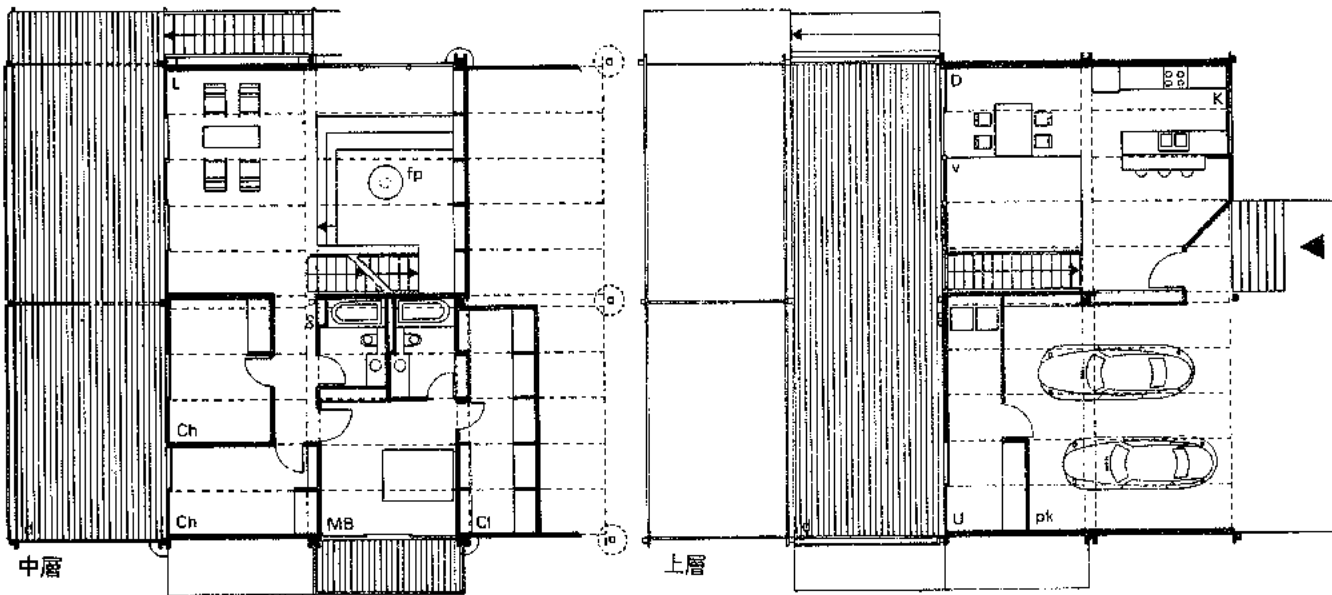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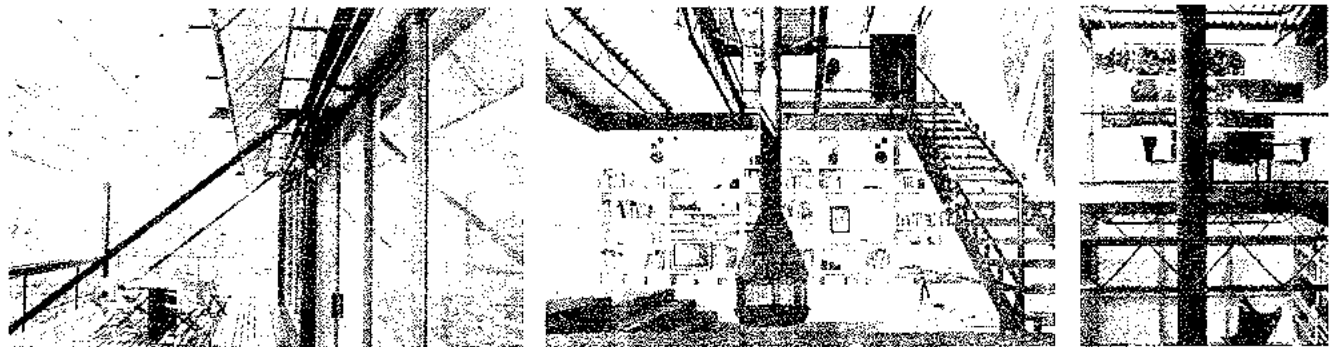


構造 및 設備 System





빌딩 System의 応用例
各 部の 個別的인 選択을 示顯하고 있다.



더 타너리 老人用 集合住宅

設 計 : Anderson Notter Associates

景觀設計 : John G. Crowe

開發主体 : Crowninshield Corporation

構造・規模 : 石造 및 RC造, 6層 284戸

敷 地 : 約 3.4/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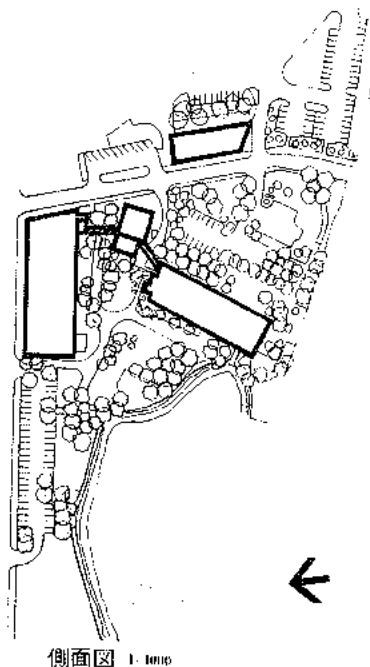
所 在 地 : Peabody Massachusetts, USA

베-쁘디이 낚은 皮革工場이 現代의 工業水準에서 使用치 않게 放置된 것은 1971年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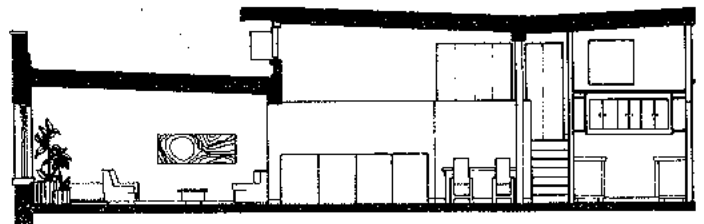
設計者는, 敷地에 分散된 建物群의 再編成과, 낚은 支持構造와 새로운 技術과의 結合에 依하여 이것을 老人用의 集合住宅으로하여 變更할 것을 試行하였다. 이것은 歷史的인 環境의 再利用이라는 概念을 超越하여 새로운 隣近環境과의 応答의 方法이나 造構의 潜在的 象徵的 價値의 發掘을 實現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이 計劃은 Massachu-Setts住宅金融局이 助成한 Boston市 域外에서는 最初의 事業이기도 하다.

建物は 6層建物 石造의 것과 3層建 RC造의 것이 있다. 아무것이나 内部는 一新되었다. 유닛(Unit)는 全部 1寢室型和 2寢室型이다. 낚은 構造의 가운데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2棟의 1대 한 建物は 유리로 被覆된 브린지에 依하여 要所에 있는 共用施設에 連結되어 있다. 유닛(Unit)의 配分은 1/4이 洲의 補助를 받은 低所得者用의 것으로서, 나머지는 部分的으로 市場에 委任된 賃貸유닛(Unit)이다. 또한 全体의 1割이 身障者用으로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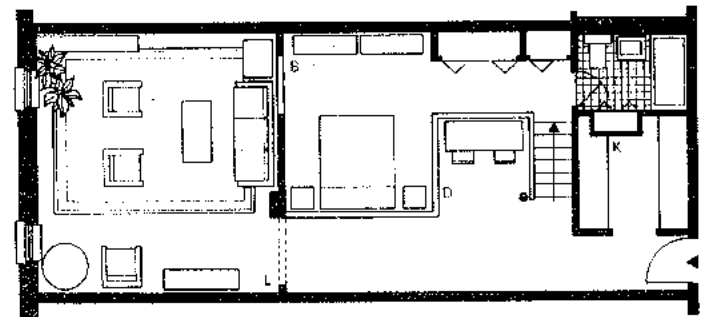
몇몇 旧基礎와 壁, 또는 敷地内的 큰 연못 등은 体養施設로 再整備 되었다. 鞆皮桶은 프랜트박스(Plant Box)로 愛用 되고 있다. 社会施設을 包含한 内部空間도 낚고 重厚한 構造体와 새롭게 挿入된 別種의 System을 갖는 空間이나 材料가 奏効하는 對立法중에서 魅惑의 이고 獨特한 雰囲気을 풍긴것 같다.



側面圖 1:1000



断面圖 1/200



單位圖 1:200



公會堂



優秀建築資材 展示館 開館

本協會에서는 国内에서 產生되는 優秀建築資材를 一般 國民과 建設業界에 紹介하고 優秀建築資材 使用을 積極 勸奨하여 建築物의 質的向上 및 國家施策에 이바지 하기 爲하여 80年度 第2次 優秀建築資材展示館을 開館 하였습니다.

場所：本協會 1層 展示館

期間：1980. 10. 23~1980. 12. 30

※ 出品業体 및 資材名

회 사 명	출 품 자 재 명	회사전화
한국유리공업(주)	판유리, 복층유리	783-3711 783-0311
(주) 홍 풍 산 업	방화샷다, 흠샷다	23-6052
아 남 산 업(주)	자중배선기구류	445-2265
서성메틸타일상사	메틸타일, 프레트 (비철금속 내장재)	74-4252
코 리 아 파 트 사	도어 록크	591-3666
(주) 토 탈 에 너 지	태양에너지 기기류 (자동온도조절발브)	778-0818 0819
협 성 도 어 체크	도어체크, 보조키	833-8426
삼화정밀공업(주)	도어체크, 후로아원 지 보조키	967-5800
강 립 개 발 (주)	자연섬유벽면내장재 (방수, 불연, 방음)	764-4669
고 려 강 철(주)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782-9296
대 원 불 산(주)	석고플라스터, 석고 판넬, 도어체크	73-8241~5
한 국 포 리 탱 크	물탱크	612-0754
동 서 산 업(주)	자중 타일	73-1708
(주) 영 진 보 일 러	기름보일러, 연탄보 일러(자동온수순환기)	445-9464
(주)슈퍼 보 일 러	연탄보일러, 기름보 일러, 다목적보일러	633-4044

회 사 명	출 품 자 재 명	회사전화
삼화질석공업(주)	연탄보일러, 질석, 골재, 부력	777-6559
(주) 한 성	고압벽돌, 코킹, 방 수제 커튼월	57-1890
동 양 상 사 (주)	유리부력, FRC(단열판넬 프리즘유리, 시멘트판넬)	266-2211
(주) 대 통	우레아폼(단열재)	72-5260
은 성 양 행	스테인드그라스	261-4291
대 원 정 공	칼라렌스, 방화문	389-7974
고려새프티기업사	타일시멘트(압착용, 출눈용)	267-2511
백광수지공업(주)	스치러 폼	633-2305
아 신 금 속(주)	도어록크	266-0679
동 신 공 업(주)	싱크대	260-0081
삼광 열기 산업사	연탄온수보일러	445-3051
세 계 설 비 기 연	배수기기	73-0778
경 동 기 재(주)	연탄, 기름 보일러	72-0884
신한중기계발공사	수증기보일러	447-5401
시 원 산 업 (주)	스테인레스 논스립	447-4751

開議處：大韓建築士協會出版事業部

(서울 鍾路區 瑞麟洞89番地)

TEL : 73-9491 · 9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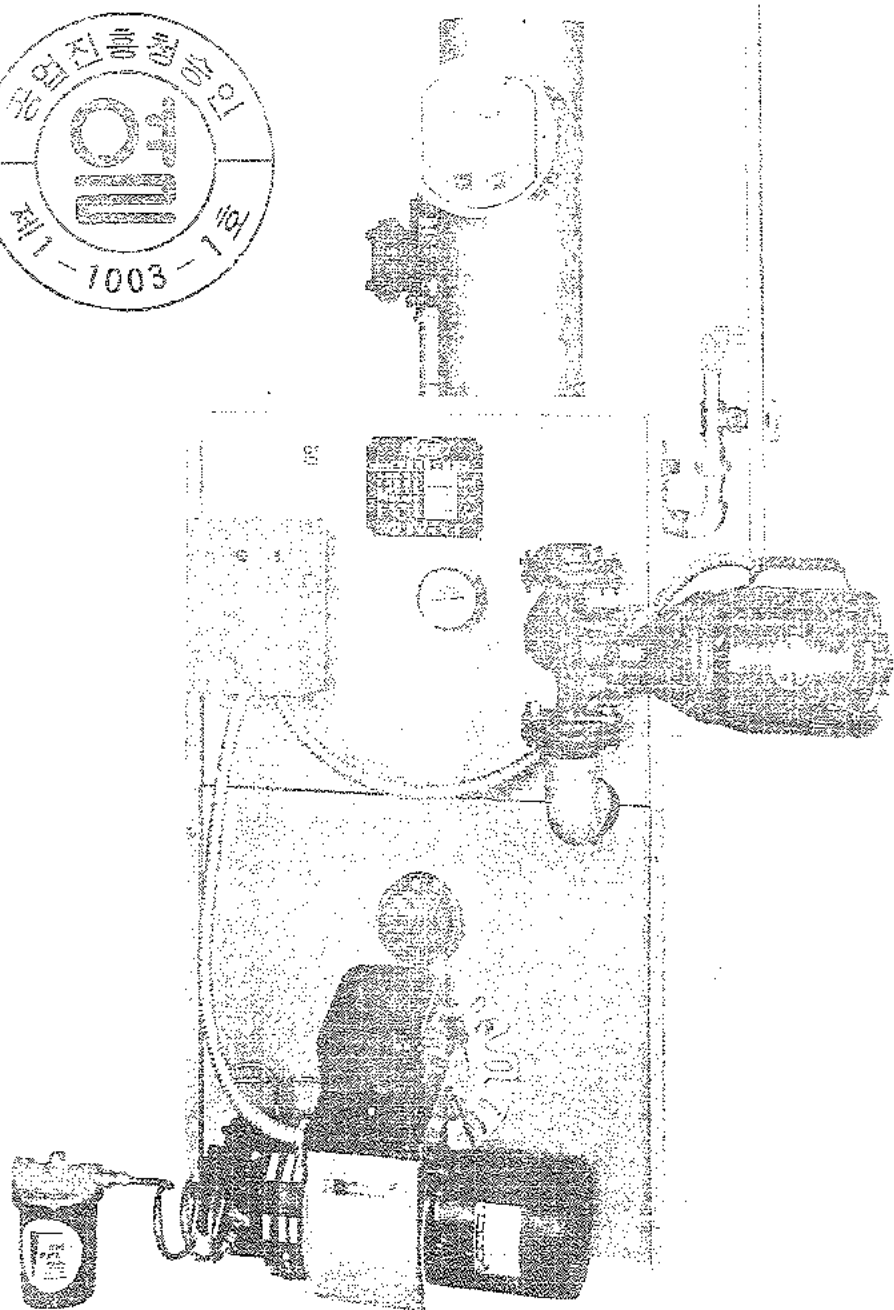
優秀資材使用으로 建築資質 向上시키자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유티카 신
자통 보일러 제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상 사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2동 나얼 109호

TEL: 266-2807, 266-8015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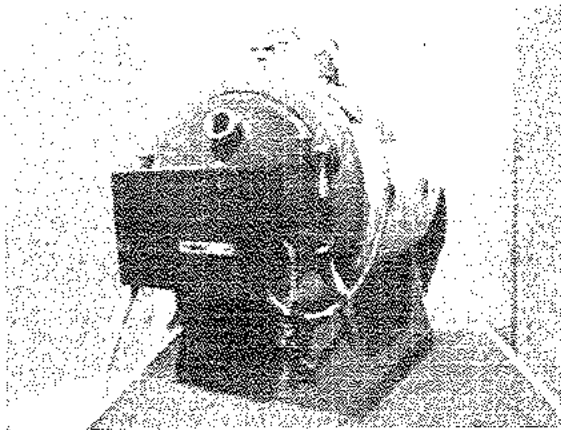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会 商工部優秀賞受賞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 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 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사용해본 뒤 얻은 결론은 —————
연료비 40% 절약입니다.

KRQH-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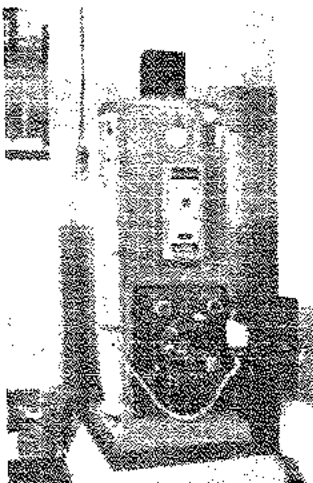
가정용 소형온수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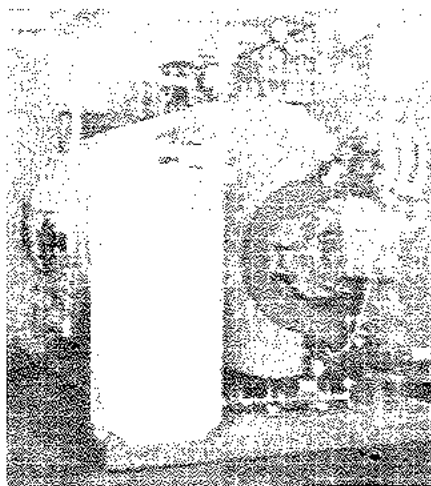
- 강압통풍식에 의하여 완전연소로 혁신적 신개발품입니다.
- 연통시정의 악조건을 해결합니다.
(역풍에 의한 연소불량을 해결합니다.)
- 최소형이므로 설치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 강압통풍식에 의한 spass로 전열면적에 넓어 공간부 전지역에 난방이 가능합니다.
- 개폐식에 의한 최소방범이 시너지 갑니다.
- 완전밀폐로 불필요한 연기누출이 나오지 않음.
- 20평이만에 연탄시용비와 비슷한 비용으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KRZ)

산업용 고압보일러(KRSH)



- 난방용 급탕용 복용 탕 전용입니다.
- 집진서 또는 오일버 머니 고장시 연탄회 및 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인에서 40만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식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도금없이 산업용 급탕용 탕집들이 있습니다.



- 1ton에서 10ton 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열기계의 원리와 기술 역학적 새로운 모델로 긴 수명과 놀라운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안전식 보일러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국내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로켓드 보일러



高麗鋼鐵株式會社

本社・工場: 京畿道 富川市 陶唐洞254-6

電話 (132) 62-5131~4

서울事務所: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1-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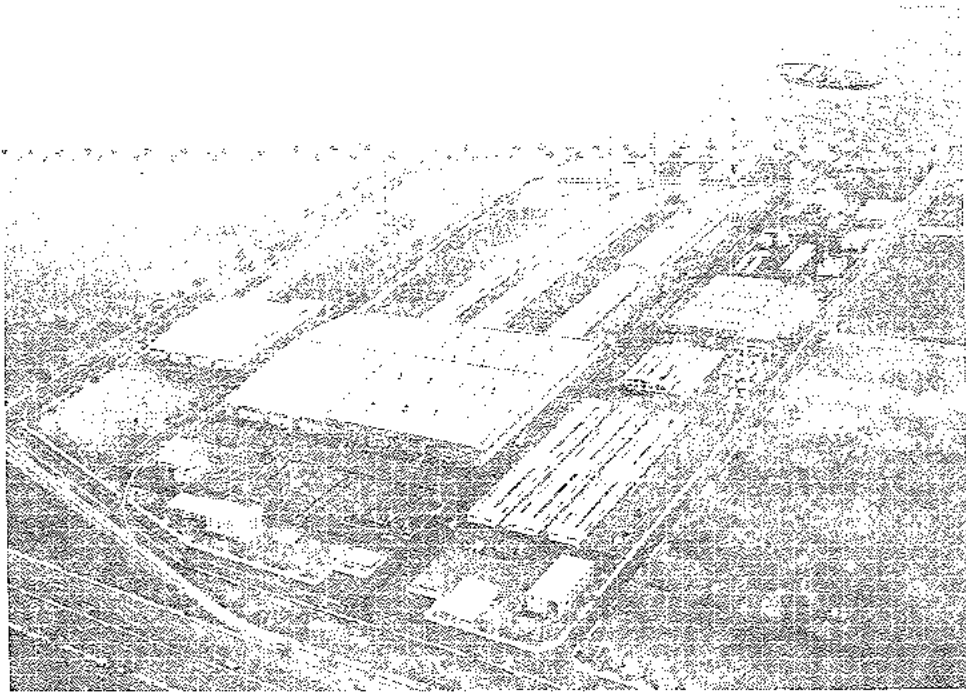
電話 782-7373・7387・8757・9296・9297

FLOAT GLASS

“奉仕하는 企業 韓國유리”는

이제 世界의 韓國유리로 跳躍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속에서 꾸준히 成長하는 韓國유리는 世界 最高 水準의 유리를 生産할 수 있는 FLOAT 工場 建設로 1981년 初부터 FLOAT GLASS를 直接 生産 供給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품 규 격

맑은 유리 Clear Sheet Glass								무늬 유리 Figured Glass							
2mm		3mm		5mm		5mm대형		2.2mm		3mm		4mm		6.8mm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24×36	17	36×72	6	48×72	4	60×72	3	30×50	10	40×72	4	48×72	4	48×72	4
24×30	20	36×60	7	48×60	5	72×72	3	24×48	13	48×60	5	48×60	5	36×72	6
18×36	22	32×60	8	36×72	6	60×96	3	24×36	17	36×72	6	36×72	6		
16×32	28	36×52	8	36×60	7	72×96	2			36×60	7	36×60	7		
12×36	34	24×60	10	32×60	8	72×84	2			36×52	8				
		30×50	10	36×52	8	84×96	2			26×60	9				
		24×48	13	24×60	10	60×120	2								
		24×36	17	30×50	10	72×120	2								
		20×36	20	24×36	17	84×120	1								
				24×30	20										
				18×30	27										

①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20	2134×3048
10	84×120	2134×3048
12	84×120	2134×3048

※ 弊社에서는 群山FLOAT 工場이 稼動될 때까지 당분간 FLOAT 유리를 直接 輸入하여 供給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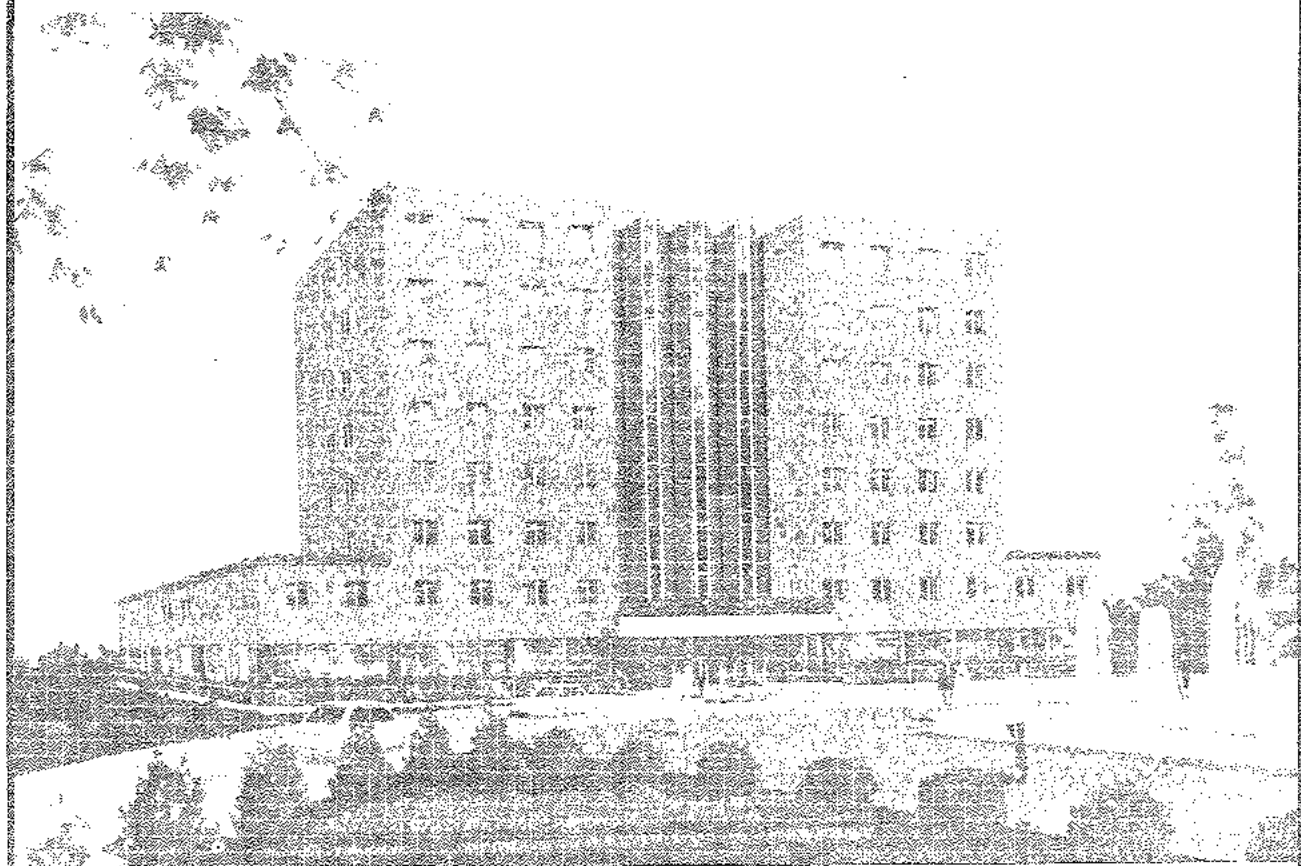
本 社 : 서울特別市 永登洞區 汝矣島洞 1의 154. ☎ 0311, 0911, 3711

仁川工場 : 京畿道 仁川市 東區 萬石洞 2 仁川 ☎ 0111~0119

釜山工場 : 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 4066~4070

群山工場 : 全北 沃溝郡 米面 山北里 群山臨海工団 C트럭 群山 ☎ 0311~5

투시도 조감도



항 상 투시도는 마음들지 않는다고 하시던 건축사 님
이 저희의 작품을 받아 보셨습니다.

두치 좋아 하시며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도 맡기신
다고 하셨습니다.

영 업 종 목 투 시 도
조 감 도
빌 보 드
모 형 제 작

동미건축미술사

TEL. 764-46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 가38-3

“강력한 밀착 백화현상 방지”

쌍곰 타일시멘트

발명특허출원 : 제 3532호

타일 시공은 개량된
혁신적 압착공법의

쌍곰 타일시멘트 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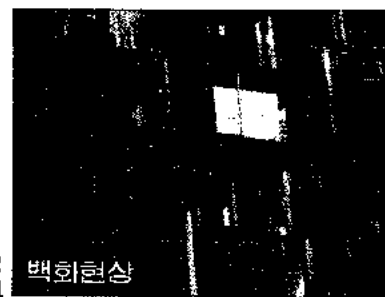
「쌍곰타일시멘트」는 고분자 화학계통의 집요한 연구 결정체로서 각종 함성수지 및 화학물질과 무기질등 복합적 Ready-Mixer제로서 재래식의 모든 공법에 많은 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 된 것입니다.

타일시공법을 개량한 압착공법



제품의 종류

- ◎ 압착용 쌍곰 타일시멘트 B-2
- ◎ 준농용 쌍곰 타일시멘트 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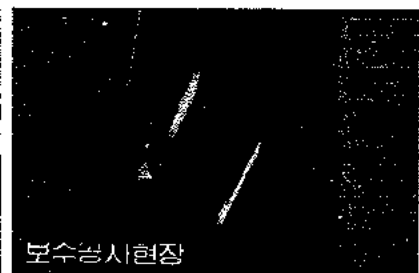


특징

1. 백화현상이 없다.
2.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한다.
3. 완전한 밀착으로 시공후 떨어지지 않는다.
4. 보수성이 좋아 작업에 편리하다.
5. 특수함성수지와 무기질로서 건물에 많은
하중이 가볍고 방수성이 좋다.
6. 자재의 소모가 없어 경제적이다.
7. 골재등의 운반이 필요없다.
8. 공기를 단축시킨다.



타일이 떨어짐



보수공사현장

※ 쌍곰타일시멘트는 상기와 같은 하자는 없습니다.

日本 SAFETY CO. LTD.의 技術提携



고려세프티기업사
Korea Safety Company

서울特別市中区墨井洞 28-9(協星빌딩205号)

전화 : 267-2511, 267-2138

750°C의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완벽한 화재예방——금강 불연 내외장재

화재는 건축물의 가장 커다란 敵——

근본적인 화재예방은 건축자재의 防火기능에 있습니다.

금강 불연 내외장재는

* 750°C의 불속에서도 타지않는 완벽한 防火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합판과 같이 흠이나 못으로 손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창고와 같이 습기찬 곳에서도 나무처럼 썩거나 썩처럼 녹슬지 않습니다.

내외장용 보-드...밤라이트

석면과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10,000톤의 강압력에서 만들어낸 단단한 일급 불연 판재입니다.

내외 장식용 미장재...나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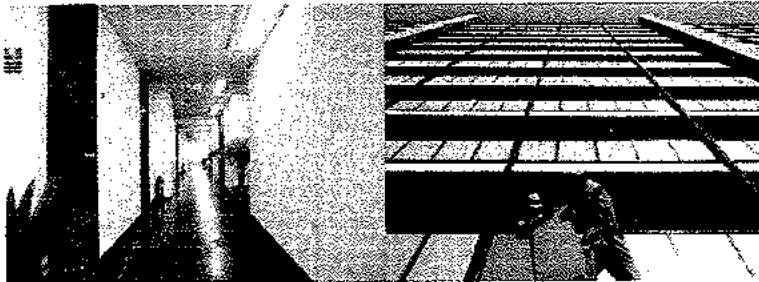
밤라이트를 아름다운 무늬와 색조로 장식한 반영구적인 내외장용 미장재입니다.

방음용 내장재...나무라이트 흡음판

기초판재인 밤라이트 위에 크고 작은 흡음구멍을 과학적으로 배열하여 뛰어난 방음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정용 내장재...아미텍스

백색의 평판면에 무늬를 넣어 천정용 내장재의 필수 기능인 단열, 흡음, 방음, 불연, 경량 효과가 우수합니다.



금강 불연내외장재